발 간 등 록 번 호
53-7240000-000073-14

청렴韓세상

정보공개제도 운영 매뉴얼

(2012 개정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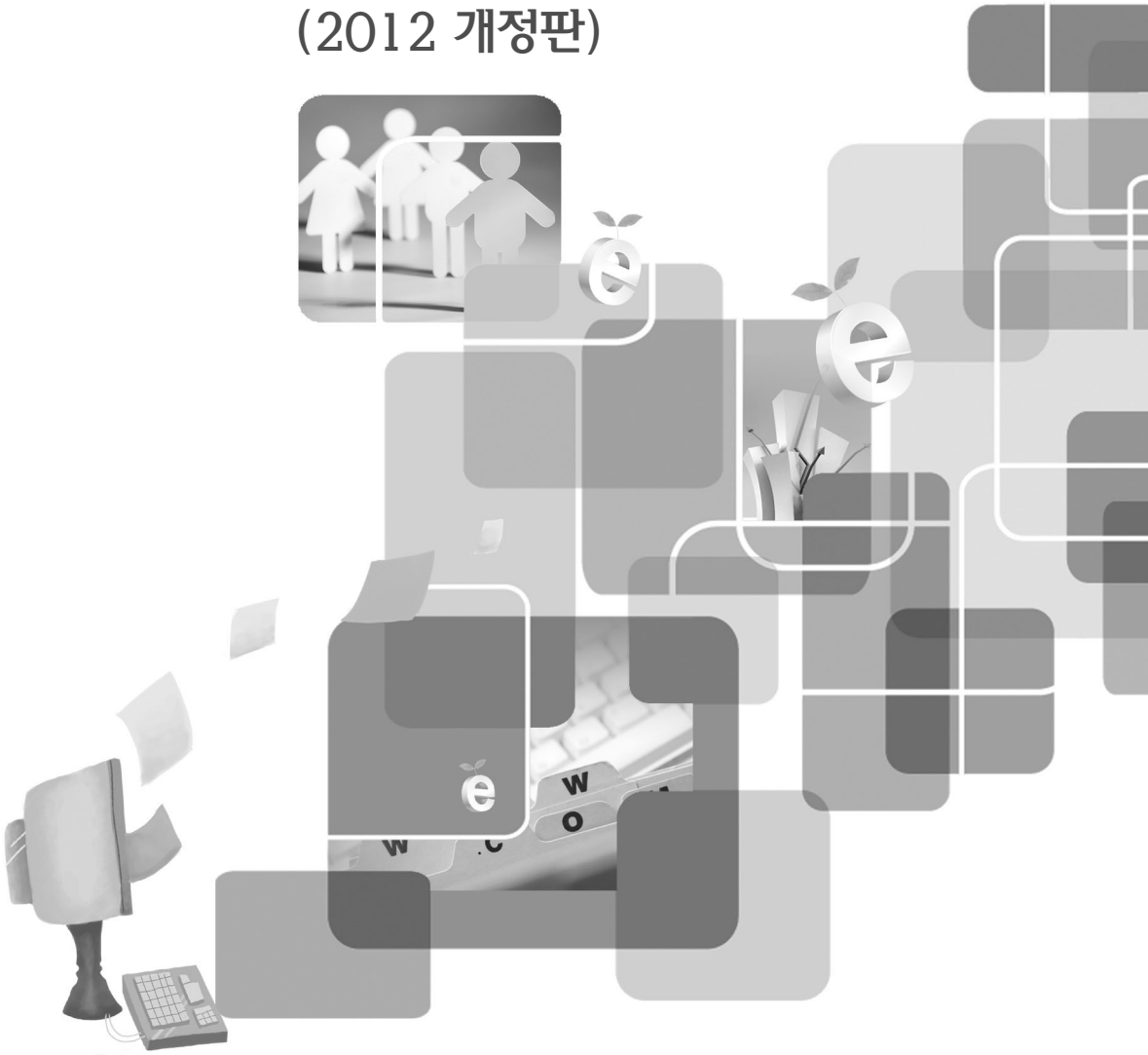

대구광역시교육청
DAEGU METROPOLITAN OFFICE OF EDUCATION

책머리에

▣ 1998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 정보공개제도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은 물론 국민의 국정에 대한 참여 확대와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최근 국민의 권리의식 및 국정참여 욕구가 증가함에 따라 정보공개청구 건수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일선 교육현장에서는 정보공개제도에 대한 지식 및 경험이 부족하여 업무처리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 이 책자는 담당 공무원들의 정보공개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고 업무 수행시 손쉽게 찾아보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작되었습니다.

▣ 이 책자에서 "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영"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시행규칙"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약칭으로 사용하였습니다.

▣ 이 책자는 총 8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장에서는 정보공개제도의 의의, 제2장에서는 공공기관의 의무, 제3장에서는 정보공개제도의 주요내용, 제4장에서는 정보공개 업무 처리, 제5장에서는 비공개대상정보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 제6장에서는 정보공개시스템 관리, 제7장에서는 정보공개 FAQ, 제8장에서는 정보공개법령 및 각종서식을 수록하였습니다. 그리고 각종 사례는 행정안전부 「정보공개 운영 매뉴얼(2011)」에서 발췌하였습니다.

▣ 아무쪼록 이 책자가 정보공개청구와 업무 처리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으로 더욱 보완·발전되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본 매뉴얼은 대구광역시교육청 기록관과 우리교육청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으니 널리 공유·활용하시기 바라며, 궁금한 사항은 대구광역시교육청 총무과 기록관리담당(☎053-757-862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Contents

<목 차>

제1장 정보공개제도의 의의 1
1. 정보공개제도의 개념 2
2. 정보공개제도의 필요성 2
3. 적용범위 3
4. 정보공개제도의 연혁 3
5. 현행 정보공개제도 관련 법령·규정 3

제2장 공공기관의 의무 5
1. 사전 정보공개 활성화 6
2. 정보목록의 작성·공개 10
3. 비공개 대상정보의 세부기준 수립·공개 12
4. 이용자 편의를 위한 홈페이지 구성 13
5. 「정보공개 모니터단」 구성·운영 17
6. 정보공개책임관 지정·운영 17
7. 공공기관의 적극적 정보공개 노력 19

제3장 정보공개제도의 주요내용 21
1. 공개대상 정보의 범위 22
2. 정보공개의 원칙 22
3. 정보의 공개방법 23
4. 정보공개 청구권자 23
5. 정보공개 대상기관 23

제4장 정보공개 업무 처리 27
1. 정보공개업무 처리 절차 28
2. 정보공개의 청구 31

3. 정보공개청구서의 접수 및 이송 33
4. 정보공개여부 결정(처리과) 35
5. 제3자(이해관계인/정보생산기관) 의견청취 37
6. 정보공개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38
7. 정보공개여부 결정의 통지 40
8. 청구인 확인 44
9. 수수료 부과·징수 45
10. 공개 실시 48
11. 정보부존재 처리 51
12. 진정·질의 처리 55
13. 동일·반복청구 등 정보공개 오·남용 55
14. 불복 구제절차 57

제5장 비공개대상정보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 63
1. 항목별 비공개대상 정보 64
2. 비공개대상정보 및 사례 72

제6장 정보공개시스템 관리 95
Ⅰ. 정보공개시스템 개요 96
Ⅱ. 정보공개 청구관리 104
Ⅲ. 정보공개 처리 113

제7장 정보공개 FAQ 127
Ⅰ. 업무처리와 관련한 FAQ 132
Ⅱ. 정보 공개·비공개 결정과 관련한 FAQ 167
Ⅲ. 정보공개시스템과 관련한 FAQ 204

제8장 정보공개법령 215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216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226
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각종서식) 235
4. 대구광역시교육청 정보공개 운영 규정 259

제1장
정보공개제도의 의의

제1장 정보공개제도의 의의

1 정보공개제도의 개념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

국민이 청구하거나,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제공함으로써

↓

국민의 알권리 충족 및 국민의 국정참여를 보장하는 제도

2 정보공개제도의 필요성

‘국민주권주의’의 실질적 보장

- 주권자인 국민의 올바른 정치적 의사형성과 여론형성을 위해서는 국정에 관한 광범위하면서도 정확한 정보 접근권 보장 필요

‘국민의 알권리’ 보장

- 헌법 제21조에 의하여 직접 보장되는 권리인 국민의 알권리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에 대한 접근·수집권의 실질적 보장 필요

정책결정의 정당성 확보와 책임행정의 구현

-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욕구 충족 및 이해관계 조정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정책 추진 과정의 투명한 공개를 통한 국민의 신뢰와 적극적인 협조 획득 가능

공공기관 정보의 균등배분 필요성 증대

- 공공기관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생산했거나 취득한 다양한 정보, 특히 지식정보 사회의 진전에 따라 재산권으로서의 가치가 크거나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정보를 일반 국민들에게 균등하게 제공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의무

- 공직의 부정부패 및 비리방지 효과
  - 업무수행 과정과 결과에 대한 국민들의 감시와 비판을 제도화함으로써 공직사회의 부패를 사전에 차단하고 투명한 업무수행으로 국민의 신뢰 제고

3 적용범위(법 제4조 제1항)

- 정보공개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에 관한 일반법
- 다만, 다른 법률에 정보의 공개에 대한 절차 등에 관련하여 개별 규정되어 있는 경우, 정보공개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해당 법률의 절차를 우선 적용
  - 해당 법률의 입법 취지를 살리고, 법 간의 상호충돌을 막기 위함
  - ※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이나 정보공개법에 의한 절차가 아닌 주민등록법에 따라 처리

4 정보공개제도의 연혁

- 청주시의 행정정보공개조례 제정(1992.1.4)
- 국무총리훈령인「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시행(1994.7.1)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정(1996.12.31 공포, 1998.1.1 시행)
- 국무총리훈령 제정(2003.6.24)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법에 관한 법률 개정(2004.1.29)
  -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2004.7.29 공포, 7.30 시행)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2006.10.4)
  - 비공개 대상정보의 세부기준 수립·공개 의무화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2011.10.17)
  - 정보공개 대상기관 확대, 정보 사전공개 활성화
  - 정보부존재 처리, 정보공개책임관 제도 운영 등

5 현행 정보공개제도 관련 법령·규정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대구광역시교육청 정보공개 운영 규정
- 대구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3조 행정정보공개수수료, 제7조 수수료 감면)
  ※ 참고 : 개인정보 보호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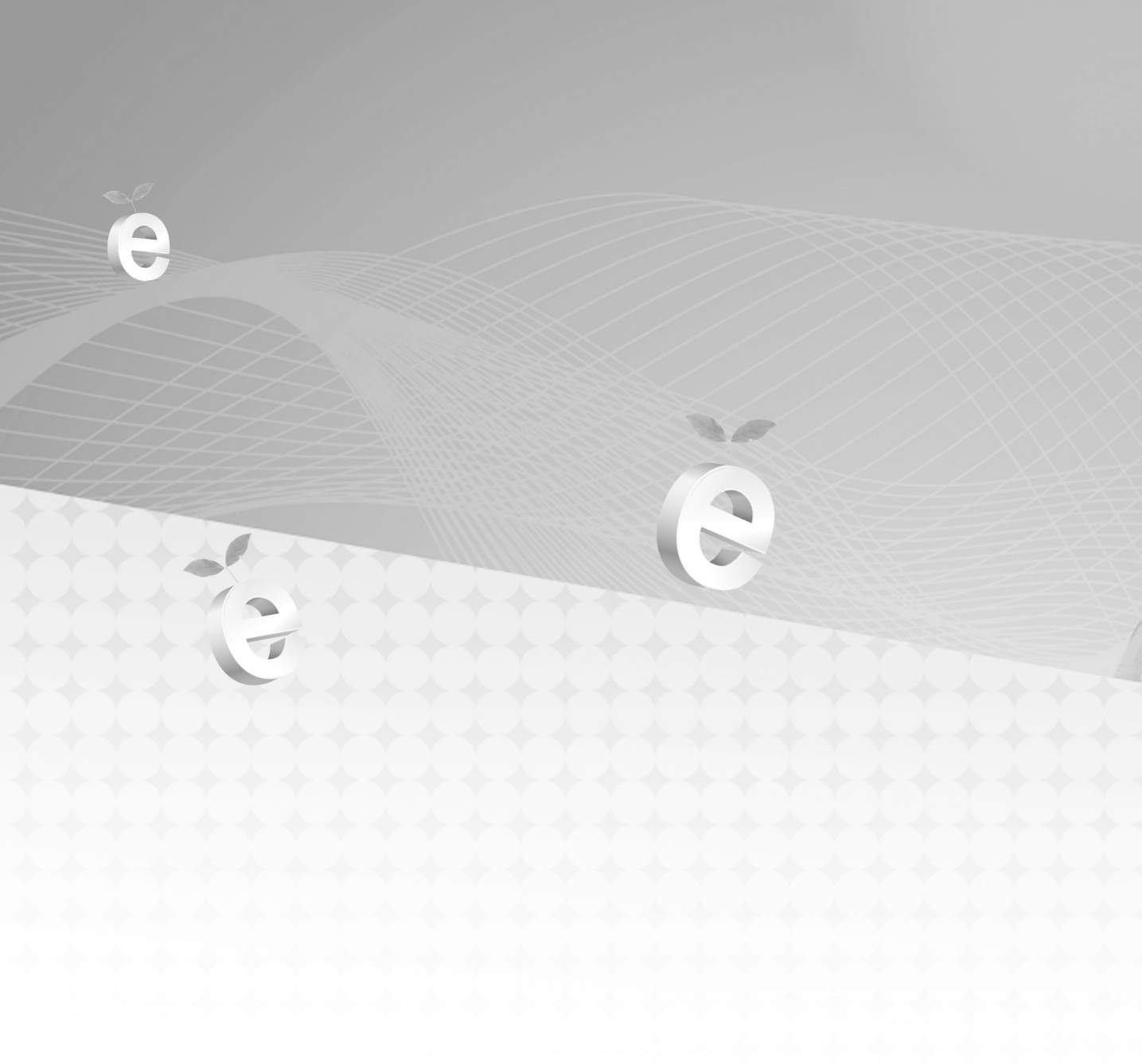

제2장
공공기관의 의무

제2장 공공기관의 의무

1 사전 정보공개 활성화

공공기관은 국민의 국정참여 및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비공개 대상정보를 제외한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 및 대규모 예산투입 사업에 관한 정보 등 필요한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 공개의 주기·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 정보통신망 또는 정부간행물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에게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함 (법 제7조)

행정정보 공표 대상 (법 제7조 영 제4조 제1항 신설)

①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정책정보**

• 행정계획 및 그 실시상황에 관한 정보 등

▶ (기본계획) 중장기 기본계획, 행정계획 등 주요 정책자료
▶ (통계·조사) 행정계획의 근거·참고가 되는 통계자료, 조사연구 결과 등
▶ (법령정보) 법령(조례, 지침포함), 입법예고안, 국회제출 법률안
▶ (기 타) 국가 주요정책 등에 관한 사항

• 식품·위생, 환경, 복지, 개발사업 등 국민의 생명·신체·재산보호 관련 정보

▶ (식품) 농산물 안정성 조사, 위해식품 및 유독물 정보 등 각종 검사결과 등
▶ (보건·위생) 식품위생업소 단속 등 국민의 건강 관련 각종 행정처분 등
▶ (환경) 환경관련 검사 및 측정결과,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및 단속 현황 등
▶ (치안) 방범방재시설 설치내역, 청소년범죄현황 등 치안상황 관련 정보

• 교육·의료·교통·조세·건축·상하수도·전기·통신 등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정보

▶ (의료·사회보장) 노인·아동·장애인 복지시설 현황, 각종 생활보장급여 수급기준 등
▶ (교통) 교통영향분석 평가 결과, 자전거 도로 현황 등
▶ (조세) 국·지방제세 관련 과세시가 표준액 산정내용, 공시지가 등
▶ (주택·건설) 주택보급률 및 미분양 현황, 주민등록인구현황, 건축허가·착공 통계 등
▶ (가스, 상하수도) 단수공고, 도시가스 공급정보, 하수처리현황 등
▶ (전기·통신) 정전공고, 전기공급 및 이용 현황, 통신사업자 현황 등
▶ (교육 문화) 학교시설 및 개방현황, 문화재 및 문화공간 현황 등

② 국책공사(工事) 등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상 공개대상 정보

▶ 분기별 계약발주계획, 계약체결 및 계약변경에 관한 사항 등
-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물품·공사·용역 등에 대한 분기별 발주계획
- 계약목적, 입찰일, 추정가격, 체결방법 등 계약체결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공공사업에 관한 정보

▶ 하천, 토로, 사방, 항만, 간척 등의 공공적 토목공사 및 청사 등 각종 공공시설의 건축공사 관련 사항 등
- 사업계획, 조사결과보고서, 공공사업 채택기준, 사업실적 등
- 공공용지 취득면적 및 손실보상액, 보상기준 등 용지취득에 관한 정보
- 공사 등에 관한 경비계산 기준, 부담금 계산 기준, 준공검사 결과 등

• 기타 계약에 관한 정보

▶ 입찰실시에 관한 사항 등
- 입찰 계약의 내용, 입찰의 장소·일시 등 입찰 실시에 관한 사항
- 입찰 결격사유, 참가 자격요건, 업자선정기준 등

▶ 체결과정·결과 관련 정보 등
- 계약방식, 계약서, 검사조서 등 계약체결 과정 또는 결과정보

③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해 필요한 정보

• 「국가재정법」과 「지방재정법」에서 공표·공시하도록 정한 정보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관한 사항 등
- 예산, 결산, 채권, 기금, 차입금, 국(공)유재산의 현재액 및 통합재정수지
-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 등을 포함한 재정운영상황
- 국가재정운용계획, 국가채무관리계획, 중기지방재정계획 등

• 기관장의 업무추진비 관련 정보

▶ 기관장 업무추진비 예산 및 집행내역 등
▶ 기관장 해외출장비 집행내역, 출장일시와 목적, 일정 등

• 융자 및 보조금 관련 정보

▶ 융자 및 보조금 교부지침, 보조사업 실시 지침,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현황 등
▶ 보조금 교부신청 방법, 보조금 정산 보고서 등 보조금 집행에 관한 정보 등

④ **그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

▶ 기관의 업무 특성에 맞게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
▶ 사무수행과 관련하여 집계된 검사·조사·처분의 건수, 인허가 등의 건수, 위반단속건수 등 행정활동의 실적
▶ 정보공개청구 빈도가 높은(상위 10%) 정보 등
▶ 사회적 이슈가 된 각종 현안사업의 실태조사 결과 등

정보 선정시 유의사항

- 청구빈도수가 높은 정보를 대상으로 선정
-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된 비공개 대상정보는 제외
- 공표 대상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의 원본
- 국민이 실질적으로 관심을 가질 사항을 위주로 선정
- 기관의 핵심 업무와 관련된 양질의 정보 위주로 선정

정보 공개의 주기·시기

- 정보의 생산 주기가 일정한 경우 미리 주기를 정함
  예)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매월 공개
- 정보의 생산 시기가 예측 가능한 경우 미리 시기를 정함
  예)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익월초 공개
- 가능한 생산 주기·시기를 명시하여야 하나, 생산 시점의 예측이 불가능한 경우 정보 생산 시점으로부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공개하도록 정함
  ※ 공표의 주기·시기는 기관의 사정에 맞게 합리적으로 정하되 최신 정보를 신속하게 공표하도록 정해야 함

정보공개 내용

- 업무추진비 : 집행목적, 내역, 일시, 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소속기관장은 물론 주요 간부 등의 집행내역도 포함)
  ※ 자치단체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및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행정안전부령)에 의한 표준공개서식에 따라 공표
- 법률에서 정한 사전정보공개 대상 정보 : 공개 기준에 따라 분야별로 구체화

예 시

▶ 사업평가 결과 → 사업 타당성 평가, 환경영향평가
▶ 대규모 예산 소요사업 → 사업비 10억원이상 사업
▶ 추진 단계별 공개 → 계획 확정, 계획 변경, 진행과정 및 결과 등

정보공개 방법

- 각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전자파일로 공개
- 위·변조 우려가 있는 관인·서명 등을 제외하고는 원본대로 공개하는 것이 원칙
- 전자파일 형태로 공개하기 곤란한 경우 출력물을 자료관, 민원실 등의 정보공개 창구에 비치, 이 경우 비치한 정보목록과 장소를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

정보공개 기준의 사전 고시

- 사전정보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 공개 주기·시기, 공개 방법 등을 사전에 정하여 지침 등에 수록하고 이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고시
- 고시된 내용에 따라 정보 공개 실시
- 공개하기로 미리 고시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국민에게 미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사항은 적극적으로 공개 실시

  ※ 정보의 중요도에 따라 공개 방식을 구분하여 검색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

예 시

▶ 중요도가 높고 테마별로 일련의 흐름에 따라 진행되는 정보
→ 별도 메뉴를 구성하여 체계적으로 공개

▶ 중요도가 높고 개별적인 사안으로서의 성격이 큰 정보
→ 사전 정보공개대상

▶ 중요도가 낮으며 단순·경미·행정 내부 사항
→ 별도로 공개하지 않고 정보목록에만 포함

대구광역시교육청 사전정보 공표목록

- 시교육청 : 대구광역시교육청 기록관(http://arch.dge.go.kr)/행정정보공개/행정정보공표–행정정보공표목록

예 시

대상정보	공개 범위	공개 주기	공개 시기	공개 방법	담당부서
감사사례집	감사사례	연 1회	5월/사례집 발간 후	홈페이지 게재	감사 담당관
공직기강확립 추진계획	추진계획	연 1회	3월/계획 수립 시	홈페이지 게재	
전화친절도 조사	조사결과	연 1회	1월/조사결과 작성 시	홈페이지 게재	

2 정보목록의 작성·공개

• 작성대상 : 원칙적으로 보유 · 관리하는 모든 정보(법 제8조 제1항)
자체 생산 정보는 물론 타기관으로부터 접수된 정보도 포함

정보목록 구성

• 단위업무 명칭 : 정보에 해당되는 단위업무명
※ 단위업무명으로 구분하는 것이 부적절할 경우 문서철 제목도 가능
• 정보의 제목 : 기록물 등록대장상의 제목
• 생산일자 및 등록번호 : 정보를 생산한 날짜 및 등록번호
• 담당부서 및 담당자 : 정보 생산 부서 및 기안자
• 보존기간 : 정보의 보존기간(기록물철 등록부상의 보존기간)
• 공개 여부 : 정보를 생산한 당시 설정한 공개 여부

예 시

생산일자	번 호	단위업무	제 목	담당부서	담당자	보존기간	공개여부
2011. 2. 11.	총무과 - 2165	정보공개 일반	행정정보공개 홈페이지 메뉴 정비 추진	총무과	홍길동	5년	공개

정보목록 탑재 방법

• 시교육청, 교육지원청
– 업무관리시스템에서 정보공개시스템으로 자동연계 등록
• 직속기관, 각급학교
– 업무관리시스템에 로그인한 후 “문서관리–문서함–문서등록대장–추가기능–정보공개목록”에서 엑셀파일 다운로드
– 단위업무 담당자별로 공개여부를 확인한 후 각급기관 홈페이지의 ‘정보공개 메뉴–정보목록’에 매월 정보목록을 익월 5일까지 탑재
※ 문서생산단계에서 문서내용이 비공개 대상임에도 공개로 설정한 경우에는 업무관리시스템에 로그인한 후 “문서관리–문서함–문서등록대장(본인이 생산, 접수한 문서만 클릭)–수정”에서 공개여부를 비공개로 저장

제외 대상

• 목록 자체에 비공개 대상정보(충무계획 등 비밀 정보목록, 이름 ·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 정보내용에 비공개 대상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도 목록을 작성·공개하여야 하나 목록(제목) 자체가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할 경우에는 제외

정보목록에서 제외될 정보의 유형(예시)

▶ 정보의 존재 자체가 비밀 사항인 경우
▶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의 비위 사실 통보
▶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 ○○에 대한 불시 단속 계획
▶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공개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등

공개 방법

• 시교육청 : 대구광역시교육청 기록관(http://arch.dge.go.kr)/행정정보공개/정보목록(정보공개시스템과 연계하여 게시)

예 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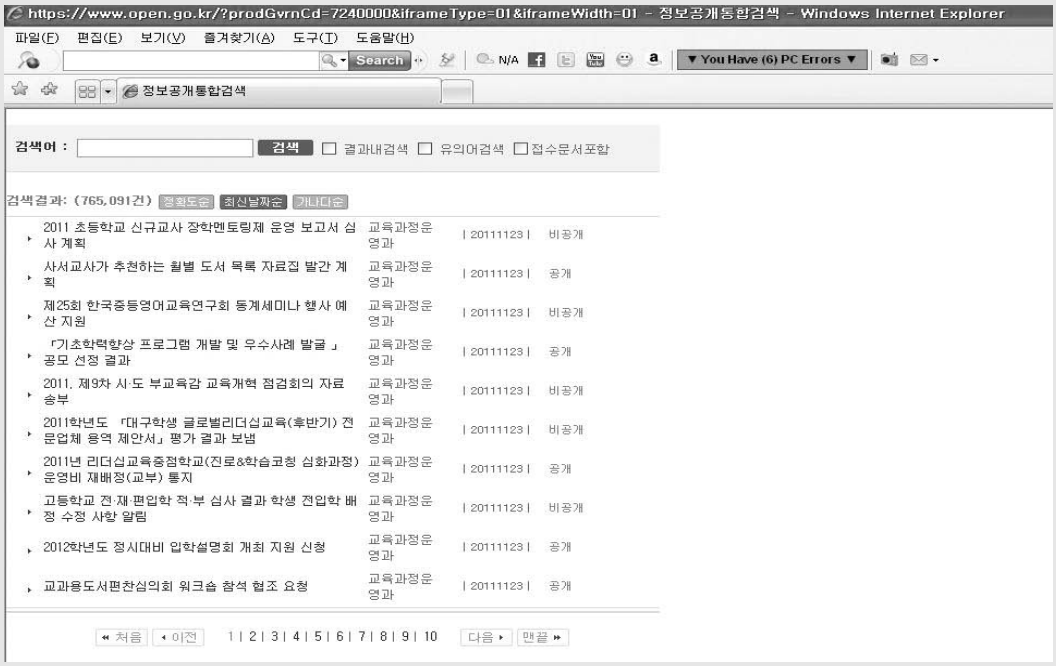

3 비공개 대상정보의 세부기준 수립·공개

법 제9조 제1항 각호의 비공개 대상정보 범위 안에서 당해 공공기관의 업무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 대상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을 수립·공개 (법 제9조 제3항)

작성 단위

- 실·과·팀 및 이와 유사한 단위별로 작성
- 기능이 같은 3차 소속기관 이하 기관은 직근 상급기관에서 작성
  예)우체국, 각급 학교 등
- 직제에 명시된 실·과·팀 소관사항(단위업무)

※ 최소단위가 실국으로 명시되어도 실과 단위로 세분한 소관사항을 대상으로 작성

작성 방법

- **실·과·팀별 비공개 대상정보 작성**
  - 직제규정에 명시된 실·과·팀 소관사항(단위업무) 중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비공개 대상정보를 간략히 기재
  - 다른 법률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등은 관련 법령명 및 조항까지 명시
    예) 중앙 및 지방환경위원회의 조정절차(환경분쟁조정법 제25조)
  - 비공개 대상정보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 매뉴얼을 참고하여 비공개 대상정보 여부 판단
    ※ 각 작성단위는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다른 작성단위와 비교하여 공개 대상정보가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되지 않도록 주의
- **기관단위의 비공개 대상정보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 작성**
  - 기관 정보공개 담당자는 실·과·팀에서 조사한 서식을 취합하여 세부기준 작성
    ※ 필요한 경우, 기관별 세부기준 수립을 위한 실무위원회나 T/F팀 구성·운영
- **정보공개심의회 외부위원 등 자문 실시**
  - 비공개 대상정보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안의 적정성 등 검토
  - 실·과·팀에서 조사한 비공개 정보를 공개로 할 경우 작성한 실·과·팀과 조정
- **정보공개심의회 심의를 통한 세부기준안 확정**
  - 비공개 대상정보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안에 대한 최종적인 검증·확정

세부기준 공개 및 보완

- 비공개대상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을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판·관보·공보·일간신문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
- 최신판례의 인용과 비공개 정보의 보존연한 경과 등 비공개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신속하게 재분류하여 공개
- 직제개정 등으로 소관사항의 변경이 있으면 변경 내용을 보완하여 공개

대구광역시교육청 비공개 대상정보의 세부기준

- 시교육청 : 대구광역시교육청 기록관(http://arch.dge.go.kr)/행정정보공개/정보공개제도 안내-비공개대상정보 및 세부기준

비공개 대상정보 조사 서식(예시)

① 작성 단위	② 소관사항	③ 비공개 대상정보	④ 근거
총무과	1. 당직과 보안 관리	• 보안관련 비밀문서 및 비밀취급인가자 명단 • 암호자재 현황	제2호
	2. 지방공무원 인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 지방공무원 인사위원회 심의서류 및 회의록	제5호

※ 비공개 대상정보 조사 서식 작성요령
① 작성단위 : 실·과·팀
② 소관사항 : 직제규정에 명시된 실·과·팀의 소관사항(단위업무)을 기재
③ 비공개 대상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비공개 대상정보를 간략히 기재
④ 근거 : 법 제9조 제1항 각호 기재

4 이용자 편의를 위한 홈페이지 구성

공공기관은 정보의 적절한 보존과 신속한 검색이 이루어지도록 정보관리 체계를 정비하고,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함(법 제6조 제2항)

홈페이지 구성 기본방향

- **별도의 행정정보공개 메뉴 개설**
  - 각종 자료실, 질의·응답 게시판 등과 별도로 정보공개관련 메뉴 설치
  - 민원·참여 등 관련 메뉴의 하위 메뉴로 설치 지양

- **정보공개 메뉴에 대한 편리한 접근성 보장**
  -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정보공개 메뉴를 배치하여 접속의 편의성 보장
  - 장애인들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위치 및 시각 효과 적극 고려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제20조(정보접근에서의 차별금지)
- **메뉴 구성의 통일성 유지**
  - 기관별로 개별적인 메뉴 구성으로 인한 혼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급적 아래의 권고안에 따라 메뉴를 구성

상위메뉴	하위메뉴	내 용
정보공개	정보공개제도 안내	정보공개 절차, 청구 방법 등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 안내
	사전정보공개	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사전 정보공개 관련 사항
	정보목록	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정보목록
	정보공개청구	정보공개청구, 결정통지 확인

- **정보공개시스템(www.open.go.kr)과의 링크**
  - 각 기관의 홈페이지에서 정보공개 시스템에 링크하여 국민들의 편리한 접근을 보장

메뉴 구성 요소

- 정보공개제도 안내
  - 정보공개청구 방법, 처리 절차, 수수료, 불복절차 등 제도의 전반적인 사항 안내
  - 정보공개법령, 정보공개청구서·이의신청서 등 각종 서식, 지침, 정보공개 편람, 비공개 세부기준 게시
- 사전정보공개
  - 사전공개 대상정보의 범위, 주기·시기, 방법 게시
  - 하위 메뉴를 개설하여 정보를 게시하거나 공개 대상 정보의 목록을 게시하고 목록 선택 시 실제 정보가 게시되어 있는 페이지로 링크
  - 정보검색 및 열람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카테고리화하여 체계적으로 분류
- 정보목록
  - 기관별로 작성한 정보목록 파일을 게시(월 1회 권장)
  - 정보목록 파일은 수시로 업데이트
- 정보공개청구
  - 실제로 정보공개를 청구하고 진행 상황 및 결정통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 시스템(www.open.go.kr)으로 링크하는 메뉴 설치

사전정보공개 정보 게시방법

- 기준의 사전 고시
  - 사전에 공개하여야 할 정보에 대하여 『대상정보-공개범위-공개주기-공개시기-공개방법-담당부서』 공개기준을 게시 (연 1회 이상)
- 정보 게시방법
  - 정보목록과 실제 정보가 게시되어 있는 페이지를 반드시 연계(링크)
  ※ 직접 해당정보와의 연계 곤란시, 해당사이트 또는 해당목록으로 연결

대구광역시교육청 사전정보 공표목록

- 시교육청 : 대구광역시교육청 기록관(http://arch.dge.go.kr)/행정정보공개/행정정보공표-행정정보공표목록

예 시

대상정보	공개 범위	공개 주기	공개 시기	공개 방법	담당부서
감사사례집	감사사례	연 1회	5월/사례집 발간 후	홈페이지 게재	감사 담당관
공직기강확립 추진계획	추진계획	연 1회	3월/계획 수립 시	홈페이지 게재	
전화친절도 조사	조사결과	연 1회	1월/조사결과 작성 시	홈페이지 게재	

홈페이지를 통한 정보공개 시 유의사항

- 최근 국외 해킹조직이 국가기관 홈페이지의 공개정보를 수집하여 해킹의 단초로 활용하고 있어 홈페이지 자료 게재시 자체 보안심의 강화
- 정보공개 부서는 정보 공표시 비밀 등 중요 정보가 인터넷에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

예 시

▶ 대외비 이상 비밀문건(제목 포함) 및 관련 지침
▶ 을지연습, 충무계획 등 비밀과 관련된 내용이 수록된 업무추진계획
▶ 「대외주의」, 「要보안」 등 대외비가 표기된 중요 문서
▶ 개인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 이메일 주소 등)가 노출된 문서
▶ 인터넷 검색사이트의 '저장된 페이지' 내 상기에 해당되는 자료
※ 「저장된 페이지」는 검색엔진에 의해 자동 저장되는 웹페이지로 해당 검색사이트 관리자에게 별도 삭제 요청

- 정보공개 담당부서는 홈페이지를 통한 중요자료의 노출 방지를 위해 중요한 자료나 민감한 내용은 반드시 사전 보안성 검토(보안담당 부서와 협의) 후 홈페이지 게재
- 또한 주기적으로 홈페이지 모니터링 실시, 비밀이나 민감한 자료 및 비공개 대상정보 등이 홈페이지에 게재된 사실을 발견 하였을 경우 업무부서에 통보한 후 즉시 삭제하고 보안담당 부서 통보

※ ○○부 비상계획담당관실에서는 '충무4300 실시계획 작성요령' 및 '전시 수송동원 소요 작성지침' 등의 문서를 인터넷에 게재하여 기관장 경고 조치

- 사전공개된 정보의 게시방법은 기관 자율로 정하되, 일반 국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예시) 업무유형별 게시, 정보공개법 각 호별 게시, 담당부서별 게시 등
- 전문 용어를 사용하여야 할 경우에는 각주를 달아 설명하거나, 메뉴의 한 부분으로 용어 사전을 제공하여 이용 편의성 제고
- 주요 문서에 대해서는 원문을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홈페이지 구성 우수사례 (예시)

▶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정보공개」메뉴 구성 ⇒ **이용자가 쉽게 찾을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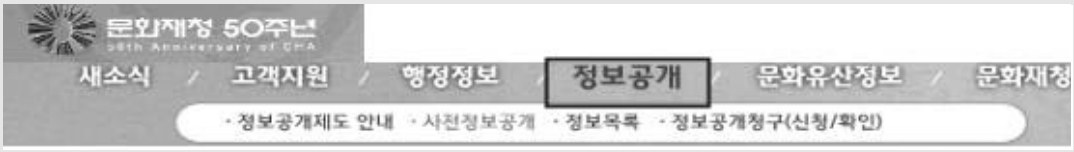

▶ 사전정보공개정보를 「업무별」로 분류 ⇒ **탭 구분으로 분류간 이동 편리**

▶ 원하는 정보 제목 클릭시, 「관련 게시판으로 직접 이동」 ⇒ **검색 편리**

5 「정보공개 모니터단」 구성·운영

기관별 「정보공개 모니터단」 구성·운영

- 각 기관의 사전정보공개 이행사항을 수요자인 국민이 직접 평가
  특히, 기관에서 공개하는 정보가 실제로 국민들이 원하는 정보인지 "사전공개된 정보의 품질(品質)"에 대하여 평가
- (구성) 해당 기관의 정책고객 중 20~50인 내외 선정, 기관 특성에 맞게 시민단체, 주부, 대학생 등 다양하게 구성
- (기능) 기관의 사전 정보공개 운영실태 모니터링 및 제도개선 건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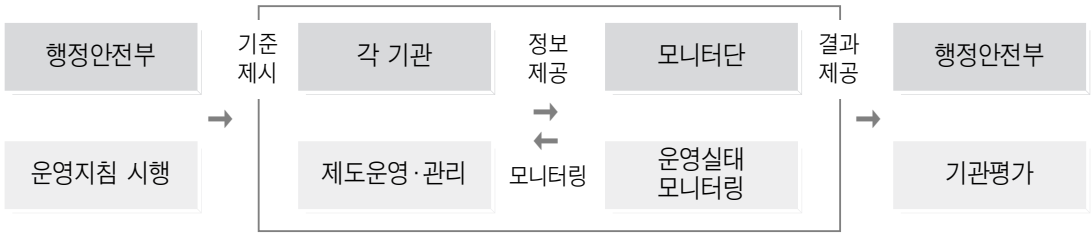

- (운영) 사전정보공개 모니터링 및 제도 개선사항 건의
  - 모니터링 주요사항

▶ (대 상) 공개되어야 할 정보들이 충분히 제공되고 있는지
▶ (내 용) 국민이 관심있는 정책정보가 충실히 제공되고 있는지, 원문을 공개하는지, 정책단계별로 체계적으로 공개하고 있는지
▶ (방 법) 공개정보를 검색하는데 어려움은 없는지

  - 모니터링 방법

▶ PCRM 또는 모바일 설문조사 등을 이용하여 만족도 조사 실시
▶ 만족도 조사는 반기별 최소 1회 이상 실시

6 정보공개책임관 지정·운영

기관별 「정보공개책임관」 운영(영 제11조의2 신설)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시·군·구 포함), 교육청별 '정보공개책임관'을 지정 운영하여 정보공개 업무지원체제 강화
  * 정보공개책임관 : 실·국장 급
- 정보공개 업무를 해당기관 주관 하에 책임있게 처리할 수 있는 여건 조성

역할 및 기능

▶ 정보 공개에 관한 업무의 총괄·조정
- 정보공개 운영계획 수립 및 운영기반 구축
- 정보공개 처리절차 준수 및 사전정보공개 이행실태 확인·점검

▶ 정보공개심의회 관련 사항
- 공개결정이 곤란한 경우, 이의신청 사항 등에 대한 심의 지원

* 원칙적으로 출석회의를 개최해야 함, 부득이 서면회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대상을 최소한으로 한정하고 2회 연속심의 지양

▶ 소속기관 또는 시군구에 대한 정보공개 업무의 지도·지원
- 소속 또는 시군구 담당공무원 지도·교육 등을 주관하여 실시

* 소속 또는 시군구 정보공개 문의는 1차적으로 각 부처 및 시도에서 처리

▶ 정보공개 업무능력 발전을 위한 교육·훈련
- 기관별 규모·특성 등을 고려, 소속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

관 / 련 / 사 / 례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청구내용에 대한 비공개 가능?
(2005누25082 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 부산지법 행정부 2005구합3029)

"재단법인 교정협회와 관련하여 실시한 주요 감사내용의 문건"이라고만 되어 있을 뿐, 감사기간이 특정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주요 감사내용이라고만 표시하여 청구대상 정보의 내용과 범위를 확정할 수 없는 바, 위 정보는 공개대상이 되는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소정의 정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정보의 공개를 구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음
"교정기관내 각 부서에 하달하는 수용자 처우와 관련한 법무부장관 명의의 지시공문 사항 (예 : 훈령, 법규, 처우지침, 관리지침 등)"이라고 적시한 내용은 법무부장관 명의의 모든 문서를 공개하라는 것과 다름없어 지나치게 막연하고 포괄적이라 할 것이며, 사회 일반인의 관점에서 그 대상 정보의 내용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확정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음

공공기관 담당자의 관점에서 정보공개 청구의 특정성은?
(서울행법 2006. 12. 29. 2006구합20716)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은 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의 전문직원이 합리적인 노력으로 그 정보가 기록되어 있는 문서 등을 특정할 수 있는 정도로 청구인이 얻고자 하는 정보의 내용을 제출하여야 함

정보를 특정하지 않아 구체적으로 요청한 경우 위법·부당한지 여부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08-13357, ○○ 경찰서)

정보를 특정하지 않아 피청구인이 정보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요청한 경우 위법·부당하지 않음

7 공공기관의 적극적 정보공개 노력

국민의 공개청구권 존중의무(법 제6조 제1항)

-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권이 존중될 수 있도록 법 해석·운영과 소관 법령 정비
- 공개원칙을 준수하고 국민 권익 위주로 공개절차 운영 등

정보관리체계 정비의무(법 제6조 제2항)

- 정보의 적절한 보존과 신속한 검색체계를 유지하고 정보공개시스템 구축
- 정보공개업무를 주관하는 부서 및 적정한 담당 인력 배치
-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노력

정보공개 처리상황의 기록 · 유지의무(영 제16조)

-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처리상황을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유지

적극적 정보제공 노력(법 제8조, 영 제5조)

-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정보는 정기적으로 공개하도록 적극 노력
- 정부간행물의 발간·판매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에게 제공하고 이용편의를 위한 종합목록의 제공 등 필요한 조치

정보공개제도 운영 준비(법 제8조, 영 제5조)

- 일반국민이 보유정보의 유형, 보유부서 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주요 문서목록과 정보공개편람 등을 작성·비치하고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하여 공개
- 공개절차를 일반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처리절차, 청구서식, 수수료 등의 주요 사항을 편람으로 작성·비치
- 정보공개청구를 위한 장소(접수처), 공개청구에 필요한 서식 및 장비(복사기, 마이크로필름 판독기 등)의 준비
- 청구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정보공개 담당부서를 지정하고 이를 표시

중앙행정기관장의 의무(총리훈령 제442호, 대구광역시 교육훈령 제173호)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의 정보공개청구 처리와 관련하여 지도·감독을 하여야 하며, 정보공개의 확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해 정보공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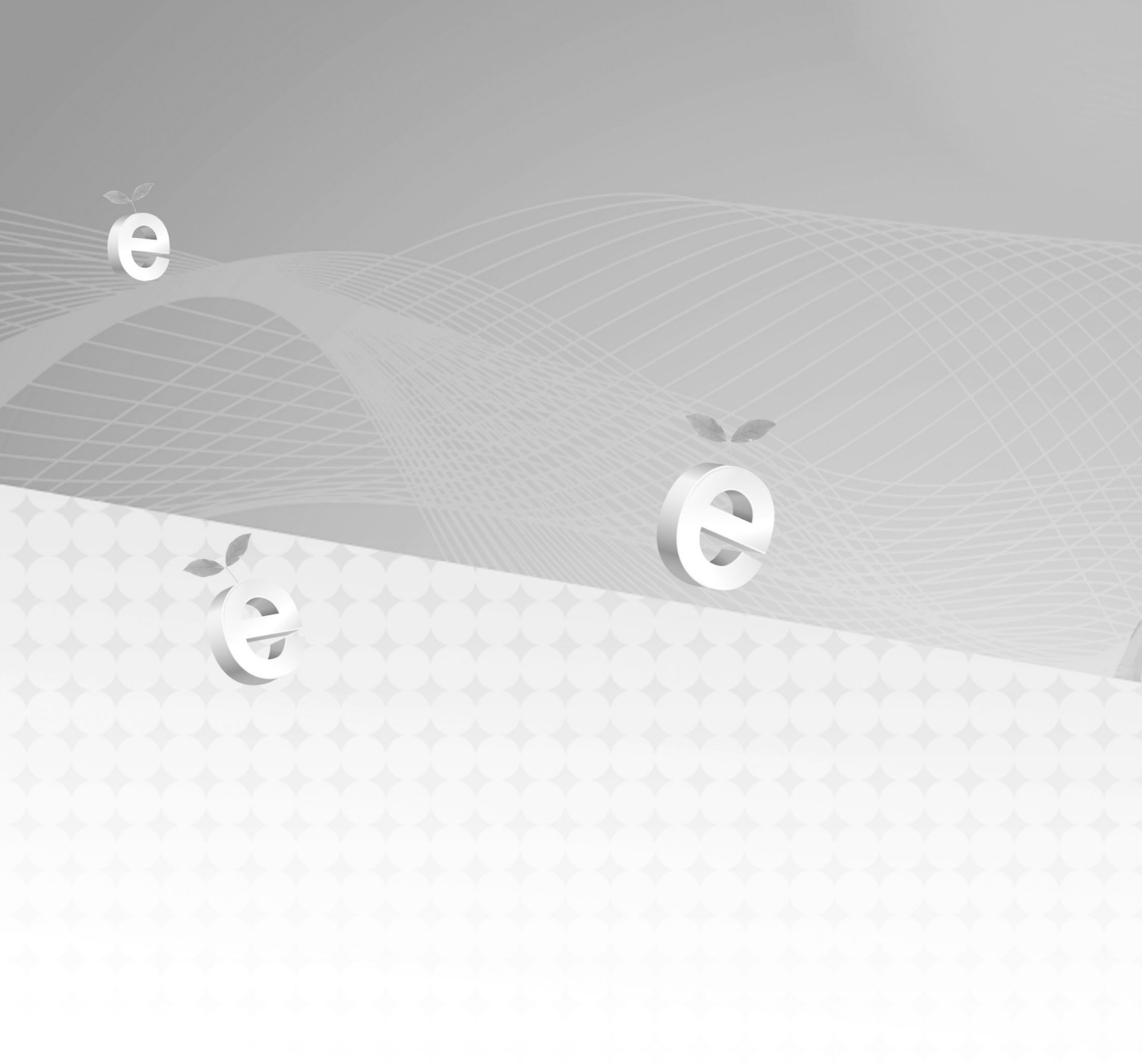

제3장
정보공개제도의 주요내용

제3장 정보공개제도의 주요내용

1 공개대상 정보의 범위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에 기록된 사항(법 제2조 제1호)

▸ 서울행법 2007구합31478

'취득'이란 공공기관이 당해 문서를 수령한 시점 이후의 상태를 말하고 '관리' 또한 공공기관이 작성 또는 취득한 문서가 조직 내의 공용문서로서의 실질을 갖춘 상태. 즉 당해 행정기관의 조직에서 업무상 필요한 것으로 이용·보존되고 있음을 의미

「정보공개 청구 대상」이 아닌 정보

- 업무의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비공식적으로 수집한 통계자료 등
  ※ 통계작성기관이 정보공개법 적용대상인 공공기관에 해당한다면 그 통계기관이 수집 취득 또는 사용한 통계자료는 정보공개법에 따른 정보에 해당됨(법제처 법령해석 08-0224, 08.11.10)
- 결재 또는 공람절차 완료 등 공식적인 형식요건을 갖추지 못한 정보
  ※ 사무관리규정 제3조 제1항 및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서명에 의한 결재가 이루어지지 않은 문서
- 관보·신문·잡지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를 목적으로 발간된 자료 등

2 정보공개의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 대상임(법 제9조 제1항)

- 공공기관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국민의 권리가 존중될 수 있도록 정보공개제도를 운용하여야 함(법 제6조)
- 비공개대상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당해 정보를 공개하여야 함(법 제9조 제2항)

예외적 비공개(법 제9조)

-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가 비공개 대상 정보(법 제9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비공개 할 수 있음(상세 내용 제5장 비공개 대상정보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 참조)

3 정보의 공개방법

「공개」란?
공공기관이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법 제2조 제2호)

공개 방법(영 제14조 제1항, 개정 2011. 10. 17)

- 문서·도면·사진 등 :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 필름·테이프 등 : 시청 또는 인화물·복제물의 교부
- 마이크로필름·슬라이드 등 : 시청·열람 또는 사본·복제물 교부
-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 등 : 파일을 복제하여 전자우편으로 송부, 매체에 저장하여 제공, 열람·시청 또는 사본·출력물의 교부
-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이미 공개된 정보의 경우 그 정보 소재(所在)의 안내

4 정보공개 청구권자

모든 국민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 외국인(법 제5조, 영 제3조)

모든 국민

- 미성년자, 재외국민, 수형인 등 포함
  ※ 공무원인 경우에도 私人의 지위에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청구 가능

법인

- 私法상의 사단법인·재단법인, 公法상의 법인, 정부출연기관 등
- 법인격 없는 단체나 기관 포함 (종중, 동창회 등)

외국인(영 제3조)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예: 외국인 등록증이 있는 경우)
-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 제외 대상 : 외국 거주자(개인, 법인), 국내 불법체류 외국인 등

5 정보공개 대상기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법 제2조, 영 제2조)

국가기관

- 국회, 법원, 행정부,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방자치단체

-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와 부속기관(사업소, 출장소, 소방기관, 교육훈련기관, 보건진료기관, 시험연구기관 등)
- 지방의회 등 합의제 행정기관
- 시·도 교육청·교육위원회 및 지역 교육청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 시장형 공기업 :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등
- 준시장형 공기업 : 한국관광공사, 한국방송광고공사, 한국마사회, 한국광물자원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대한주택보증(주),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 한국감정원,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등
- 기금관리형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등
- 위탁집행형 :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연구재단, 국제방송교류재단, 한국농어촌공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립공원관리공단, 한국소비자원, 한국예탁결재원, 도로교통공단 등
- 기타공공기관 : 한국수출입은행, 한국투자공사, 서울대학교병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국제교류재단,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국방연구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대한적십자사, 국립암센터,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 학교

- 초 · 중 ·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 대학원 등(사립학교 포함)
- 다른 법률에 의해 설치된 학교 : 과학기술대, 경찰대, 3군사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 한국종합예술학교, 한국전통문화학교, 한국농업학교, 기능대학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서울시농수산물공사, 인천시 계양구시설관리공단 등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설립한 출자·출연 등 기관

< 영 제2조 제2호 >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
   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설립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기관
   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액(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직접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독점적 사업권을 부여받은 기관의 경우에는 그 위탁업무나 독점적 사업으로 인한 수입액을 포함한다)이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기관
   다. 지방자치단체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라. 지방자치단체와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마. 가부터 라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단독으로 또는 두개 이상의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설립 기관이 출연한 기관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특수법인

-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 직접판매공제조합, 한국과학기술원, 국립대학병원 등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 각종 사회복지관, 사회복지시설, 청소년복지시설, 어린이집 등

관 / 련 / 사 / 례

'사립대학교'는 공공기관에 해당하는지? (대법원 2006. 8. 24. 2004두2783)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기관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정부 투자기관, 그 밖에 공동체 전체의 이익에 중요한 역할이나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고, 여기에 정보공개의 목적, 교육의 공공성 및 공·사립학교의 동질성, 사립 대학교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 및 보조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보면 …,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2조 제1호가 정보공개의무를 지는 공공기관의 하나로 사립대학교를 들고 있는 것이 모법인 정보공개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사립대학교가 국비의 지원을 받는 범위 내에서만 공공기관의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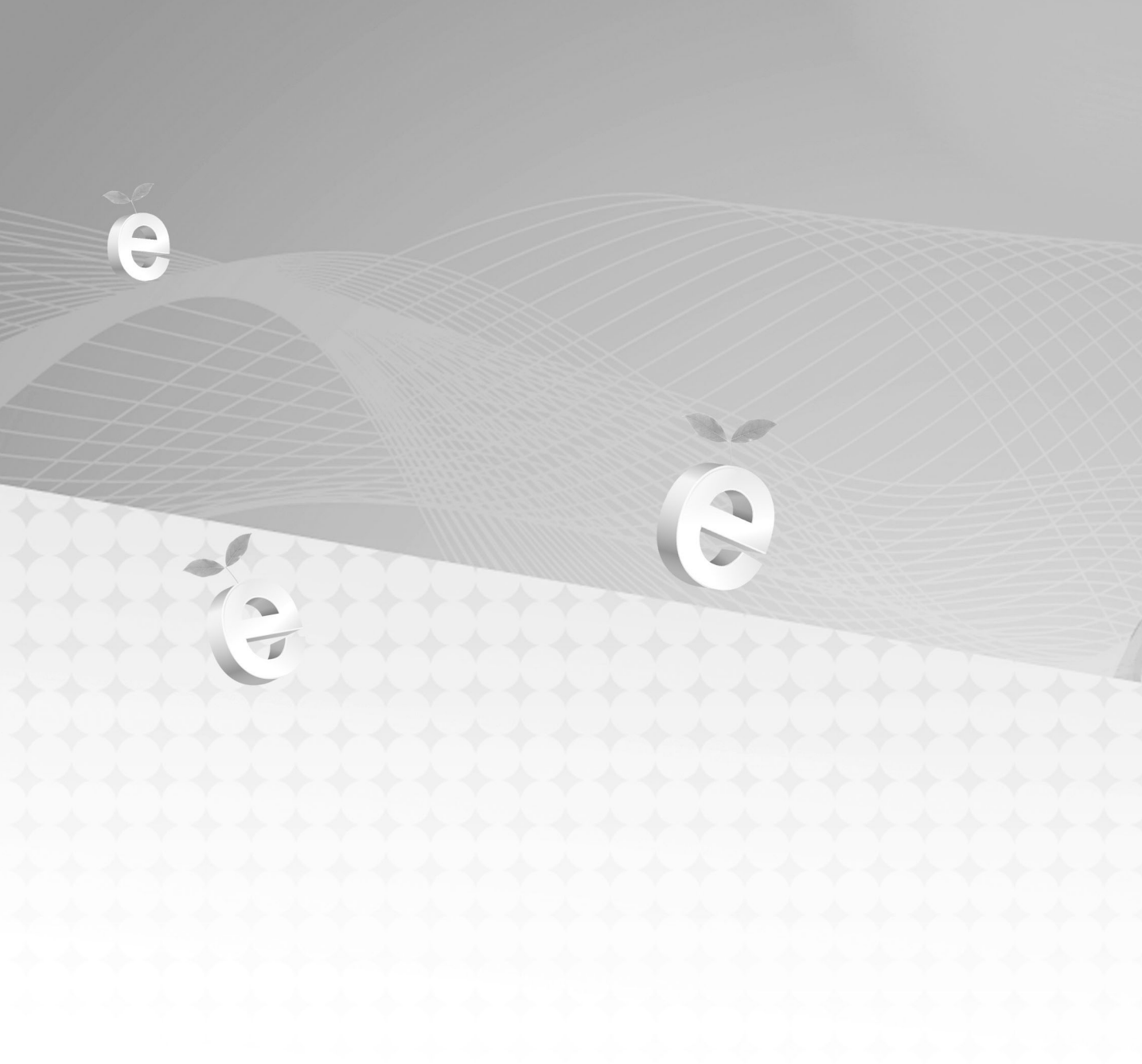

제4장
정보공개 업무 처리

제4장 정보공개 업무 처리

1 정보공개업무 처리 절차

가. 정보공개업무 처리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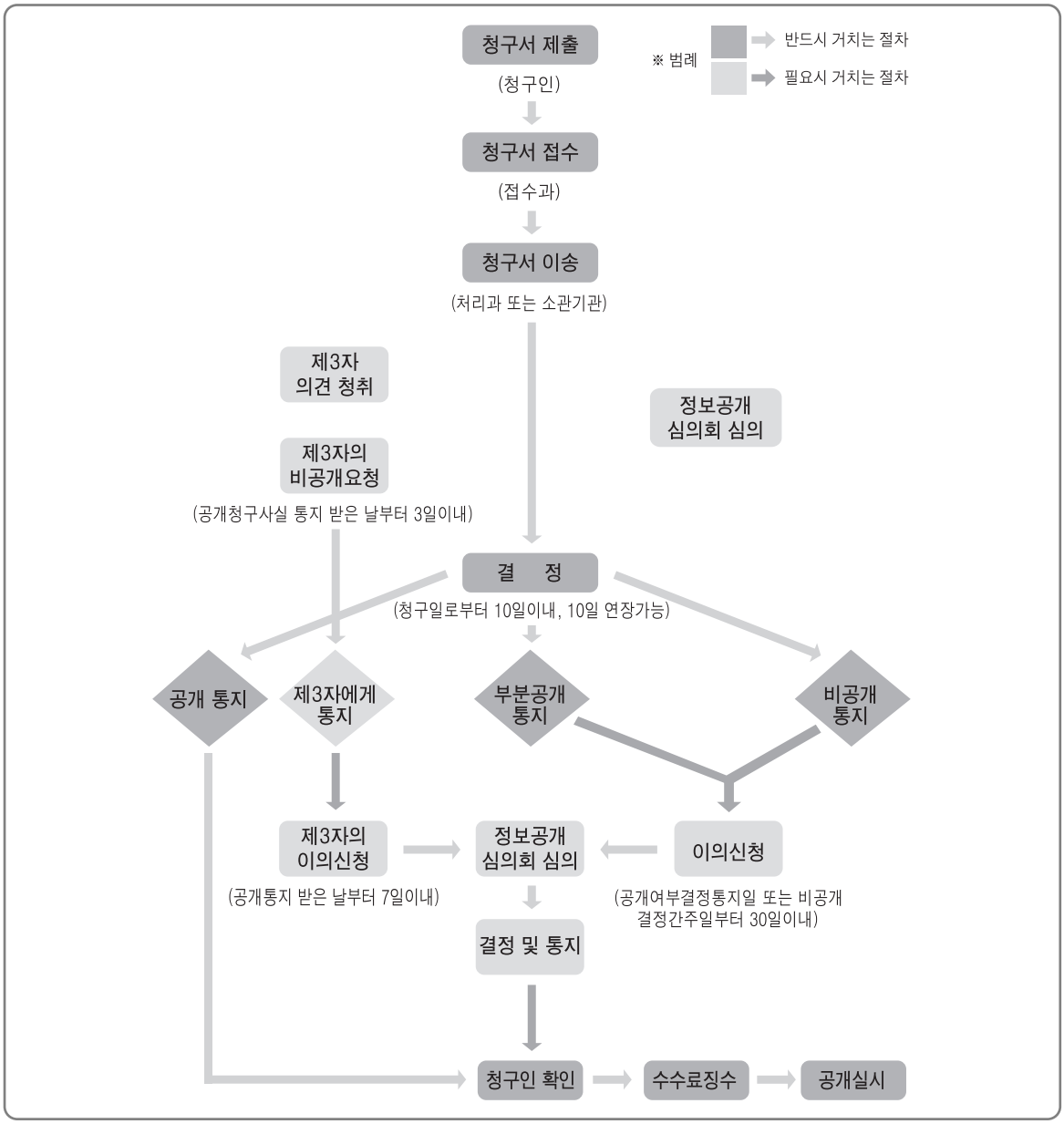

나. 정보공개업무 단계별 주요내용

순	업 무	관련법령	주 요 내 용	서 식
1	**정보공개 청구**	법 제10조, 영 제6조	• 소관기관 및 보유·관리하는 정보 여부 확인 후 청구서 작성 • 청구서 기재사항 – 청구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정보형태, 공개방법 –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 ~ 일체 등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청구는 피하고, 대상정보의 내용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작성 • 구술로 청구시 : 담당공무원 면전에서 진술하고 담당공무원 등은 정보공개 청구 조서를 작성하여 청구인과 함께 기명 날인 • 제출방법 : 직접방문, 우편, 모사전송 이용, 인터넷(전산망)	별지 제1호, 제2호
2	**청구서 접수**	영 제6조 제2항	• 청구내용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 접수증 교부(직접방문의 경우)	별지 제4호
3	**청구서 이송**	법 제11조 제4항	• 처리과 또는 소관기관에 이송	
4	**제3자 의견청취**	법 제11조 제3항, 영 제8조	• 공개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을 때	별지 제6호
5	**정보공개 여부 결정**	법 제11조, 영 제7조	* 청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공개여부 결정 * 부득이한 사유 발생시 **10일의** 범위 내에서 공개여부 결정기간 연장 가능(청구인에게 연장사유 등 통지) * 청구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공공기관이 공개여부를 공개하지 않을 경우 비공개의 결정으로 봄	별지 제3호
6	**정보공개 심의회**	법 제12조, 영 제11조	* 위원장 1인을 포함, **5인내지 7인의** 위원으로 구성 * 위원 중 **2분의 1은** 외부 전문가로 위촉 * 공개여부결정곤란 사항, 이의신청, 정보공개제도운영에 관한 사항 심의	
7	**제3자 비공개요청**	법 제21조	* 공개 청구된 사실을 통지 받은 날부터 **3일 이내** 자신과 관련된 정보 비공개 요청 * 공공기관의 제3자의 비공개요청에 반하여 공개할 경우 사유 명시하여 문서로 통지 * 이의신청은 통지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별지 제5호

순	업 무	관련법령	주 요 내 용	서 식
8	**정보공개 ·비공개 결정통지**	법 제13조, 영 제12조	• "정보(공개 · 부분공개 · 비공개)결정통지서" 통지 • 공개결정시 : 공개일시, 장소, 방법, 수수료 명시 • 비공개 결정시 : 비공개 근거·사유 및 불복방법·절차 명시 • 부분공개 결정시 : 비공개부분 근거 · 사유 및 불복방법· 절차 명시 * 통지한 공개일 후 **10일** 경과할 때까지 공개에 응하지 않을 경우 : 내부종결처리	별지 제7호
9	**제3자의 이의신청**	법 제21조 제2항	• 제3자의 비공개 요청에도 공공기관이 정보공개결정을 하였을 때 제3자는 7일 이내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음	
10	**청구인의 이의신청**	법 제18조 제1항, 영 제18조	•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청구인 – 공공기관으로부터 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	별지 제9호
11	**이의신청 결정 및 통지**	법 제18조 제2항	• 이의신청처리대장에 기록 • 처리기간 :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이내, 단, 부득이한 경우 "7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	별지 제9호 의2, 제10호, 제11호
12	**청구인 확인**	영 제15조	• 청구인 준비사항 : 신분증명서, 공개(부분공개) 결정통지서 수수료 등 • 법정대리인인 경우 : 법정대리인 증명서 추가 • 임의대리인인 경우 : 정보공개위임장, 청구인·수임인 신분 증명서 추가	별지 제8호
13	**수수료 징수**	법 제17조, 영 제17조 제1항	• 수수료와 우편요금으로 구분 • 대구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3조 • 우편요금 : 공개정보의 사본·복제물·인화물 또는 출력물을 우편으로 송부하는 경우로 한정 ※ 공개여부 결정통지서와 같은 기본적인 행정 절차상의 우편요금은 징수하지 않음	
14	**공개실시**	영 제12조 제1항	•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 • 일시를 정확하게 지정하기 곤란한 경우 공개 기간을 적절히 설정	

2 정보공개의 청구

정보공개청구 (청구인)	청구대상 정보를 보유, 관리하고 있는 해당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 제출 • 구술에 의하여도 청구 가능 • 제출방법 : 직접방문, 우편, 팩스, 정보통신망(정보공개청구시스템 open.go.kr) 등 • 기재사항 :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청구정보 내용·공개방법 등 ※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사전정보공표 및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열람

• 불필요한 청구 및 이의신청의 사전 예방을 위하여 정보공개접수 담당 공무원은 기능별·업무별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및 사전정보공표 목록을 청구인에게 열람토록 함

대구광역시교육청 정보공개 청구

• 서면·구술 청구(우편, FAX 포함)
  – 접수처 : 대구광역시교육청 총무과 기록관리담당 ☎053-757-8623
  – 주 소 :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로 76길 11
• 인터넷 청구
  – 접속방법 : 대구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행정마당/기록관(정보공개)/행정정보공개/정보공개청구/인터넷청구 메뉴를 클릭하면 통합정보공개시스템 '열린정부'에 접속됨 (통합정보공개시스템 '열린정부' www.open.go.kr로 바로 접속 가능)
  – 통합정보공개시스템 '열린정부'에서는 정보공개 청구/진행상황/결정통지 등 확인 가능

청구대상에서 제외되는 정보

• 업무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비공식적으로 수집한 통계자료 등
• 결재 또는 공람절차 등 공식적인 형식요건을 갖추지 못한 정보
• 관보·신문·잡지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를 목적으로 발간된 자료 등

청구 정보의 특정범위

• 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의 전문직원이 합리적인 노력으로 그 정보가 기록되어 있는 문서 등을 특정할 수 있는 정도의 내용을 제출하도록 안내하여야 함.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은 사회 일반인의 관점에서 청구대상정보의 내용과 범위를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어 있으면 족함(대법원 2003. 3. 28. 2000두9212)
  ※ 청구 대상정보를 '관련 자료 일체'라고 할 경우 그 내용과 범위가 정보공개청구 대상으로서 특정되지 않음(대법원 2007. 6. 1. 2007두2555)

청구내용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경우 보완요청 공문 예시

- **제목 : 정보공개 청구내용 보완요청**

1. 귀하의 정보공개 청구건(접수번호, 접수일자) 관련입니다.
2. 귀하께서 요청하신 (청구정보내용)은 청구내용과 범위가 포괄적이고 특정되지 않아 대상을 확정하기 어려우니, 청구대상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보완하신 후 다시 청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3. (공공기관명)에서는 구체적인 정보에 대한 청구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정보목록'을 아래와 같이 제공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직 접 방문시 : (해당기관의 정보공개접수처 장소 안내)
   ※ 인터넷 이용시 : (해당기관의 정보공개목록 제공 웹사이트 안내)
4. 위 사항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면 성실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청구서류의 취하·변경 등

- 청구인이 해당 정보공개 청구가 종결되기 전에 그 신청의 내용을 보완하거나 변경 또는 취소하는 경우에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처리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그 민원사무의 성질상 보완·변경 또는 취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청구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처리기간 기산은 변경일로부터 다시 적용하여 처리함

청구인이 청구를 취하할 경우

- 정보공개시스템으로 청구시 본인이 직접 취하하도록 안내
- 방문이나 전화로 정보공개 청구시 서면으로 작성된 취하원 없이 청구인의 구두신청에 의해 취하처리할 경우 향후 처리 절차상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반드시 서면 취하원을 접수받아 처리(취하원 양식은 따로 없으며, 취하여부 확인이 가능하면 됨)

정보 존재의 입증 책임

- 정보 존재의 입증 책임은 일단 청구자에게 있으나 그 입증의 정도는 그러한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증명하면 되고, 정보를 보유·관리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공공기관이 입증하여야 함

3 정보공개청구서의 접수 및 이송

접수 및 이송 (주관부서)	• [정보공개처리대장]에 청구내용 기록, [접수증] 교부 • 정보공개 청구서의 처리부서 지정 • 소관기관 이송

청구서의 소관부서 분류

-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이 불명확하여 공개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 담당공무원 등은 즉시 청구인에게 보완 요구
-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 교부
- 정보공개 접수창구, 인터넷,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접수된 청구서는 지체없이 그 청구정보를 담당하는 처리부서로 분류

▸ 공개청구 내용이 여러 부서에 관련되어 있는 경우

기관의 사정에 따라 정보공개 담당부서 또는 소관 청구정보의 수가 많은 부서에서 처리주체가 되어 신속히 처리하되 청구정보별 소관부서, 담당자 및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

소관기관 이송

- 해당기관에서 보유·관리하지 않는 정보를 청구한 경우로서 정보를 보유·관리하는 기관을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소관기관으로 이송
  ※ 청구를 받기 전에 소관기관을 알려 줄 수 있는 경우(직접 방문에 의한 청구 등)에는 미리 소관 기관을 안내하여 불필요한 이송을 방지
- 청구인에게 이송사실 통지
  – 해당기관명, 이송사유 및 이송일시를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
- 이송으로 인한 처리 지연 방지
  – 이송된 정보공개청구는 최대한 신속히 우선적으로 처리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소관기관으로 이송한 경우 청구인에게 알리는 공문 예시

- **제목 : 정보공개청구 기관이송 안내**

1. 귀하의 정보공개 청구건(접수번호, 접수일자) 관련입니다.
2. 귀하께서 청구하신 (청구정보내용)은 (소관기관명)에서 보유·관리하고 있는 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항에 의거 귀하의 정보공개청구서를 (이송날짜)일자로 소관기관에 이송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위 사항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아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해당기관명) 정보공개 담당자 성명 :
이메일계정 주소 :
전화번호 :

이송 대상기관이 과다한 경우

- 이송 대상기관이 너무 많아 업무 부담이 과중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이송을 생략하고 소관기관을 안내

정보공개청구서 이송요청의 처리방법 (법제처 해석례 10-0251)

민원인이 정보공개를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학교를 알고 있으면서도 해당 학교의 감독 교육청에 그 학교가 보유·관리하고 있는 각각 다른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면서 이를 해당 학교로 이송하여 줄 것을 반복해서 요청하고, 이에 대하여 해당 교육청은 민원인에게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학교로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여 줄 것을 여러 차례 안내하였음에도 다시 민원인이 해당 학교가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공개청구서를 해당 교육청에 제출하면서 이를 해당 학교로 이송하여 줄 것을 요청하면, 이러한 민원인의 요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공개청구가 아니므로 해당 교육청은 같은 법 제11조 제4항에 따라 그 청구를 해당 학교로 이송하지 않아도 됩니다.

정보공개청구의 민원이첩 처리(영 제6조 제3항)

- 대상 : 정보취득 목적이 아닌 진정·건의 형식으로 청구하는 사항
- 처리방법 : 정보공개청구로 취급하지 않고 일반민원으로 취급하여 민원사무로 처리하여 회신

관련 해석례 (법제처 10-0055, '10. 4. 12)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것은 행정기관에 대하여 정보공개라는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므로 민원사무처리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그 밖에 행정기관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사항'에 해당되며, 정보공개법에 따라 행정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것에 대하여는 민원사무처리법도 적용됨. 만약 공개를 청구한 내용이 정보공개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정보에 해당한다면 정보공개법이 민원사무처리법보다 우선하여 적용될 것이지만, 공개를 청구한 내용이 정보공개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정보공개법이 적용될 여지가 없게 되므로 민원사무처리법만 적용

정보공개 청구건을 일반민원으로 분류하였을 경우 보내는 공문 예시

- **제목 : 정보공개청구 민원이첩 안내**

1. 귀하의 정보공개 청구건(접수번호, 접수일자) 관련입니다.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정보공개청구는 동법 제2조 제1호의 '정보'에 대해 '공개'를 청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귀하의 청구는 (청구내용 요약)으로서 정보취득 목적이 아닌 (진정·질의·건의) 성격의 민원으로 판단되어, 동법 시행령 제6조 제3항에 따라 이를 민원으로 처리하였습니다.
3. 귀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_____ 입니다.
4. 위 사항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면 성실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반복 청구의 처리

- 반복 청구의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 제5항에 의하여 종결 처리
  -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 청구한 경우
  -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이거나 진정·질의 형식으로 청구한 사항에 대하여 민원으로 결과 통지를 받은 후 반복 청구한 경우

동일한 내용의 정보공개 요청이 반복 청구되어 내부적으로 종결 처리될 경우 보내는 공문 예시

- **제목 : 정보공개청구 종결처리 안내**

1. 귀하의 정보공개 청구건(접수번호, 접수일자) 관련입니다.
2. 귀하의 청구는 기존 정보공개 처리건(접수번호, 접수일자)과 동일한 내용의 청구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종결처리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위 사항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면 성실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4 정보공개여부 결정(처리과)

-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임
- 다만, 제9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비공개 가능(법 제9조 제1항)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방법

- 공공기관은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얻게 되는 '국민의 알권리'와 '대상정보의 보호법익'을 비교형량하여 공개여부를 결정
  ※ 국민의 국가기관에 대한 정보공개청구권 역시 국가의 안전보장, 타인의 명예와 인격, 사생활의 비밀 등의 국가·사회적 법익이나 타인의 기본권과 상호 충돌될 수 있으므로 그 행사는 이들이 상호 조화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정당성을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비공개사유를 해석·적용함에 있어서도 이러한 법익 균형성이 고려되어야 할 것임 (대전지방법원 2002구합2873)
- 공개청구된 정보가 개별 법령에서 비공개로 규정되어 있는지를 살펴본 후 정보공개법령상의 비공개 대상정보인지를 판단
- 판단이 곤란하거나 이의신청의 경우 등에는 정보공개심의회 심의를 통해 결정

※ 공개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에게 연락하여 '청구목적' 또는 '청구취지'를 물어보는 사례가 있으나, 원칙적으로 공개여부 결정시에 '청구목적'은 고려대상이 아님. 다만, 비공개 정보를 예외적으로 공개하기 위한 경우(법 제9조 제6호 다목 등)에만 제한적으로 '청구목적'의 확인이 필요함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유형

- 전부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결정으로 구분
- 공개청구한 정보가 비공개 대상정보와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써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비공개 대상정보를 제외하고 부분공개 할 수 있는지 적극적으로 검토

공개여부 결정기간

-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여 통지
- 부득이한 경우 10일 이내의 범위 내에서 결정기간 연장 가능
- 결정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연장사실과 연장사유를 지체없이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 (정보공개시스템 신청의 경우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한 통보 가능)
  ※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 정보공개로 청구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비공개결정으로 간주

기간연장이 가능한 부득이한 사유(영 제7조)

- 일시에 많은 정보공개가 청구되거나 공개청구된 내용이 복잡한 경우
- 정보생산 공공기관 또는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된 정보가 공개부분과 비공개부분을 포함하고 있고, 정해진 기간 내에 부분공개 가능여부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
- 천재지변이나 일시적으로 업무량이 폭주한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공개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경우 보내는 통지문 예시

- **내용 : 대상문서명**

1. 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1조 제2항
2. 연장사유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해당 정보 관련 제3자의 의견 청취가 필요한 사항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공개여부 심의를 위한 정보공개심의회 일정 조율이 필요한 사항
   - 공개 청구된 내용이 복잡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공개여부의 결정이 곤란한 사항 등

결정기간의 기산점

- 직접 방문 청구시 : 청구를 제출한 날
- 우편 또는 팩스 청구시 : 청구서가 기관에 도착한 날
- 인터넷 청구시 : 청구서가 시스템 상에 입력된 날
  (단, 근무시간 이후의 청구는 익일 근무시간부터 기산)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제6조 제2항을 준용하여 초일은 산입하고 공휴일은 산입하지 않음(법정공휴일이 아닌 토요일은 기간에 산입)

5 제3자(이해관계인/정보생산기관) 의견청취

제3자 통지 (처리과)	**제3자 통지여부 결정** • 청구된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으며 공개(부분공개 포함) 대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지체없이 통지 **제3자에 대한 통지내용** • 정보공개청구 접수일자, 번호, 청구인의 성명, 공개대상정보의 구체적 내용, 의견 제출 방법 및 기한 등 **제3자의 의견청취** • 공공기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음

제3자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사실 통지(법 제11조 제3항)

- 청구된 정보가 비공개 대상일 경우에는 제3자에게 통지할 실익은 없음
-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에 대해 청구인이 불복(이의신청 등)을 제기한 경우에는 제3자에게 즉시 문서로 통지(시행규칙【별지 제4호의3서식】)

제3자의 의견청취

- 제3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말 것을 공공기관에 요청할 수 있음
- 의견제출은 문서로 하여야 함(시행규칙【별지 제5호서식】 또는 【별지 제6호서식】)
  ※ 구술에 의한 의견 제출은 담당자의 면전에서 하고 서명 또는 날인

공개대상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와 관련 있는 제3자에게 정보공개청구 사실을 알리고 의견청취를 할 경우 보내는 공문 예시

- **제목 : 정보공개관련 제3자 의견요청**

1. 본 기관으로 붙임과 같이 귀하와 관련된 정보공개 청구가 접수되었습니다.
2. 이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과 동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공개 여부에 대한 귀하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의견이 있으신 경우 통지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붙임의 '제3자 의견서'에 귀하의 의견을 기재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만약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실 경우에는 의견이 없으신 것으로 간주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위 사항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면 성실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붙 임 : 제3자 의견서(비공개요청서) 1부.
※ 시행규칙【별지 제5호서식】

제3자의 의견과 공개여부 결정

- 공공기관은 제3자 의견에 기속되는 것은 아니며 제3자의 의견만을 근거로 비공개하여서는 안 됨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는 경우

- 공공기관은 공개결정 이유와 공개실시일을 명시하여 지체없이 제3자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함
- 공개결정일과 공개 실시일 사이에 최소한 30일의 간격을 두어야 함
- 제3자는 7일 이내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음

정보생산 공공기관의 의견청취(영 제9조)

- 다른 기관에서 생산한 정보에 대하여 공개청구가 있을 경우 정보생산 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 공개여부의 결정은 정보생산기관의 의견을 존중하여 당해 공공기관이 독자적으로 판단해야 함

6 정보공개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정보공개심의회 구성

- 위원의 수 : 위원장 포함 5~7인
- 외부위원 : 심의회의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1/2은 당해 기관의 업무 또는 정보공개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전문가로 위촉
  ※ 법 제9조 제1항 제2호(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 및 제4호(재판·수사·검찰·행형 등) 해당사항을 주된 업무로 수행하는 국가기관은 외부전문가를 최소한 1인 이상 위촉
- 위원장 : 위원의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기관장이 지명 또는 위촉

심의회 설치 의무기관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시장형 및 준시장형)
- 업무 성격, 업무량 등을 감안하여 본부 또는 소속기관에 복수로 설치할 수 있음

심의회 설치가 의무화되지 않은 기관

- 각급학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준정부기관(기금관리형 및 위탁집행형)과 기타공공기관, 지방공사·공단,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특별법에 의한 특수법인, 사회복지법인 등 시행령 제2조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
-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 여부 및 이의신청에 대해 결정

위원의 임기

- 당연직 위원 : 해당 직위에의 재직기간
- 위촉직 위원 : 2년(1차에 한하여 연임 가능)

외부전문가 위촉시 배제 대상(예시)

▶ 당해 기관 및 소속·산하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전직 직원이라도 가급적 배제)
▶ 다른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원, 해당 교육청의 교육위원
▶ 직접적인 업무 감독, 관할 등의 관계에 있는 기관(유관 기관, 협회 등)의 임직원

심의회의 심의 대상

-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 정보공개 처분(비공개 결정)에 대한 청구인의 이의신청 처리
- 정보공개 처분(공개 결정)에 대한 제3자의 이의신청 처리
- 그 밖에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심의회의 심의 예외대상

-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에 대하여 같은 내용으로 2회 이상 반복하여 제기된 이의신청
- 청구인이 법 제18조 제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
- 제3자가 법 제21조 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
- 이미 심의회를 거친 사항에 대한 이의신청
- 청구인의 청구내용 그대로 공개하는 경우
- 공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정보공개심의회 결과 조치

- 심의회의 결정 사항을 존중하여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공개·비공개 결정을 문서로 통지
- 처분권자는 공공기관의 장이므로 심의회 명의가 아니라 공공기관장 명의로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함(※ 대법원 2001추 95 참조)
-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하는 때에는 결정 이유, 불복 방법, 불복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함(영 제18조 제3항)
- 제3자의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개하는 경우 제3자에게도 결정 내용, 일시 등을 문서로 통지

심의회의 결정 사항과 달리 조치할 수 있는지 여부

- 정보공개에 관한 처분권자는 공공기관의 장이며 법에서 심의회 결정 사항의 기속력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공공기관의 장이 심의회 결정 사항과 달리 조치할 수 있다고 볼 수도 있으나,
- 정보공개심의회는 단순한 자문기구의 성격이 아니라 정보공개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해 각 공공기관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한 것이며, 공정한 심의를 위해서 외부전문가를 과반수 위촉하도록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심의회의 결정 사항과 달리 조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7 정보공개여부 결정의 통지

공개여부 결정/통지 (처리과)	[정보(공개 · 비공개 · 부분공개)결정통지서]를 지체없이 통지 통지 내용 • 공개 결정 : 공개일시, 장소, 방법 및 수수료 • 부분공개 결정 : 비공개 부분의 근거·이유, 불복 방법·절차 • 비공개 결정 : 비공개 근거·이유, 불복방법·절차

공개 결정

- 공개일시, 공개장소, 공개방법, 수수료 등을 명시하여 문서로 통지

부분공개 · 비공개 결정

- 비공개 부분의 근거, 비공개 이유, 불복 방법·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통지
- 비공개 처분의 근거가 되는 정보공개법 및 개별법령의 조항 조문을 구체적 기재
  ※ 법 제9조 제1항 해당되는 호까지 기재
- 정보가 어떤 사유로 인해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
  ※ 단순히 각호의 법조문을 명시하는 방법보다 정보의 어떤 부분이 어떠한 법익 또는 기본권과 충돌되어 제9조 제1항 몇 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청구자에게 입증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기재
- 정보공개 관련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과 불복 절차를 안내

정보공개여부 결정통지문 예시

공개 결정시

공개대상정보를 당해 기관에서 보유·관리하고 있는 경우 보내는 통지문

1. 본 기관에서 직무상 관리·보유하고 있는 자료 중 귀하께서 요청하신 정보와 일치한 자료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개문서명]

공개대상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으나 이미 사전공개·공표된 경우로서 정보소재 안내로 갈음하는 통지문

1. 본 기관에서 직무상 관리·보유하고 있는 자료 중 귀하께서 요청하신 정보와 일치한 자료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개문서명]
2. 다만, 상기 문서(또는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에 따라 사전 공개된 자료로서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아래 (공공기관명) 홈페이지 (URL : 접근경로)에서 누구나 열람·출력 할 수 있으므로 정보소재 안내로 대신합니다.
   – 정보소재 : (홈페이지 내 위치, 열람방법 등 상세 기재)

청구내용과 일치하는 자료는 없으나, 유사한 자료로 갈음하는 경우 보내는 통지문

[공개문서명]

1. 귀하께서 요청하신 정보와 일치하는 자료는 없으나, 청구정보의 (핵심내용)이 수록되어 있는 상기 자료를 공개합니다.

부분공개 결정시

1. 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해당 각호 기재)
2. 사유 : 상기 문서(또는 정보) 중 (비공개정보 내용)은 공개될 경우, (구체적인 사유)의 우려가 있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호에 의해 비공개하며, 이에 해당 부분을 제외한 정보를 공개하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공개 결정시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로 규정된 사항에 대한 비공개결정 통지문(제9조 제1항 제1호)

1. 내용 : 대상문서명
2. 결정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제1호
3. 결정사유 :
   상기 문서(또는 정보)는
   - 「국세기본법」제81조의13에서 비공개로 정하고 있는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로서 타인에게 누설 또는 제공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에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을 규정한 각 개별법령을 우선 적용하여 공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한 비공개결정 통지문(제9조 제1항 제2호)

1. 내용 : 대상문서명
2. 결정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제2호
3. 결정사유 :
   상기 문서(또는 정보)는
   - 을지훈련과 관련된 기본계획으로서 공개될 경우, (악용사례 또는 염려되는 상황)으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어 공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 공공안전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한 비공개결정 통지문(제9조 제1항 제3호)

1. 내용 : 대상문서명
2. 결정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제3호
3. 결정사유 :
   상기 문서(또는 정보)는
   - 수사관계 조회사항
   - 방재·방범에 방해가 되는 정보
   - 연구성과 등에 관한 문서
   - 범죄행위, 위법행위, 부정행위 등의 통보자, 참고인(또는 피의자)명단
   - 인감업무·주민등록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변조, 범죄목적으로 사용될 우려가 있는 정보 등

   (으)로서 공개될 경우, (악용사례 또는 염려되는 상황)으로 국가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어 공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에 대한 비공개결정 통지문(제9조 제1항 제4호)

1. 내용 : 대상문서명
2. 결정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제4호
3. 결정사유

상기 문서(또는 정보)는

- 행정소송·헌법소원 등 재판과 관련된 소장 및 소송 진행상황 등에 관한 정보
- 진행 중인 재판과 직접·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서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

(으)로서 공개될 경우, (악용사례 또는 염려되는 상황)으로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어 공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인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에 대한 비공개결정 통지문(제9조 제1항 제5호)

1. 내용 : 대상문서명
2. 결정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제5호
3. 결정사유

상기 문서(또는 정보)는

- 감사 등의 결과 및 결과 등에 따른 조치요구사항
- 국가고시·자격시험의 위원별 채점결과 및 출제위원 명단
- 개별인허가 신청·심사·결정에 관한 사항
- 위원회 등 각종 회의 관련 자료
- 임면·복무·급여 등의 인사에 관한 개인정보

(으)로서 공개될 경우, (악용사례 또는 염려되는 상황)으로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공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에 대한 비공개결정 통지문(제9조 제1항 제6호)

1. 내용 : 대상문서명
2. 결정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제6호
3. 결정사유

상기 문서(또는 정보)는

-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 식별형 정보
- 학력·학교성적·상벌사항, 성격 등 교육 및 훈련정보
- 특정 공무원의 집 주소·전화번호·학력 등 공적 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
- 채용후보자 명부, 징계심의·결정통지, 퇴직사실 확인 등 인사관리과정에서 생산·취득한 공무원의 개인에 관한 사항

(으)로서 공개될 경우, (악용사례 또는 염려되는 상황)으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공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에 대한 비공개결정 통지문(제9조 제1항 제7호)

1. 내용 : 대상문서명
2. 결정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제7호
3. 결정사유
   상기 문서(또는 정보)는
   - 생산기술상의 노하우, 설비투자 및 마케팅계획 등 경영·영업상의 정보
   - 경영방침·자금·인사 등 사업활동을 하는데 있어서의 내부관리에 속하는 사항
   - 계약체결과정·결과 관련 문서
   - 각종 용역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 국가보조금 지원을 받는 민간단체 또는 정부가 허가한 비영리 사단법인 관련 사항 중 그 단체의 내부관리에 관한 정보 등

   (으)로서 공개될 경우, (악용사례 또는 염려되는 상황)으로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어 공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 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정보에 관한 사항에 대한 비공개결정 통지문(제9조 제1항 제8호)

1. 내용 : 대상문서명
2. 결정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제8호
3. 결정사유
   상기 문서(또는 정보)는
   - 용지매수계약서
   - 설계단가표
   - 물품가격 인상에 관한 정보

   (으)로서 공개될 경우, (악용사례 또는 염려되는 상황)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어 공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청구인 확인

- 본인 확인의 시점
  - 청구인 본인 또는 정당한 대리인임의 확인은 정보공개 시점에서 실시

※ 청구시점에서부터 본인 확인을 실시할 필요는 없음

본인 확인의 필요성 판단

- 불특정 다수인에게 널리 공개할 수 있는 정보는 본인확인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으나, 특정인에게 국한하여 공개할 수 있는 정보인 경우에는 반드시 본인확인 실시

본인 확인 방법(영 제15조 제2항)

- 본인의 경우 : 주민등록증 기타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외국인인 경우 : 여권·외국인등록증 기타 본인 확인 가능한 신분증명서
- 외국의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외국단체등록증 기타 해당 법인 또는 단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 법정대리인에게 공개하는 경우 :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기타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임의대리인에게 공개하는 경우 : 위임장(별지 제8호서식), 청구인 및 수임인의 주민등록증 기타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하는 경우의 본인 확인(영 제15조 제3항)

- 전자서명 등을 통해 신원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시스템을 구비하여야 함
- 시스템 미비시 청구인 또는 대리인을 방문하도록 하여 본인 확인
  ※ 정보공개시스템에서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또는 '공공아이핀'으로 본인 확인
- 다만, 정보공개시스템 상에 아이디, 비밀번호가 도용되는 사례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정보의 성격에 따라 본인 확인 정도를 달리 정해야 함

9 수수료 부과·징수

-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 안에서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 청구인이 부담(법 제17조)**
- **수수료와 우편요금으로 구분(영 제17조 제1항)**

※ 우편요금은 공개되는 정보의 사본·복제물·인화물 또는 출력물을 우편으로 송부하는 경우로 한정되며 공개여부 결정통지서와 같은 기본적인 행정 절차상의 우편요금 등은 징수하지 않음

수수료금액

- 국가기관 등 : 정보공개법 시행규칙 「별표」(수수료)에 의하여 산정
- 자치단체 : 조례로 제정

※ 대구광역시교육청은 「대구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3조에 의함

전자적 형태로 공개시의 수수료(영 제17조 제2항)

- 전자파일로 공개하는 경우 업무부담이 경미한 때에는 수수료 경감 가능

▸ 업무부담이 경미한 경우

- 파일 용량이 크지 않아 전송·복사 등이 쉽게 이루어지는 경우
- 공개 대상정보가 여러 개의 파일로 나누어져 있지 않는 경우
- 별도로 편집할 필요가 없이 그대로 공개가 가능한 경우
- 그 밖에 추가적인 업무 부담을 유발하는 사유가 없는 경우

비용을 감면할 수 있는 경우(영 제17조 제3항)

- 비영리의 학술·공익 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 비영리의 학술·공익단체, 법인이 청구한 경우 항상 감면하는 것은 아니며 사용목적이 부합되어야 함
- 교수, 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감면비율 : 해당 공공기관의 장이 자율적으로 정함
  ※ 감면대상은 수수료에 한함(우편요금은 제외)
  ※ 대구광역시교육청 수수료 감면 비율 : 50%(대구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7조)

수수료 징수 방법 및 시기(영 제17조 제6항)

- 정보공개 수수료의 전자적 납부를 우선적 수단으로, 수입인·증지를 보조적 수단으로 납부, 부득이한 경우 현금 납부
  ※ 정보공개 수수료의 전자납부 우선
-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전자지급수단으로 납부 가능
- 국가기관은 수입인지, 지방자치단체는 수입증지
- 부득이한 경우 현금 납부 가능

정보공개시에는 우선 수수료를 징수한 후에 해당 정보 공개

- 우송공개의 경우에는 해당 수수료와 우편요금(우표)을 먼저 징수한 후에 공개
- 수수료를 징수한 때에는 정보공개 결정통지서(즉시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공개인 경우 정보공개청구서)에 수입 인지·증지를 붙이고 소인 후 기관에서 보관

수수료 산정 방법

- 하나의 정보공개청구서에 다수의 내용을 청구한 경우 수수료 산정 시, 개별 건 별로 수수료를 합산하는 대신 공개 결정된 전체 정보를 대상으로 수수료 산정

▸ 수수료 감면 소명자료

- 학술·연구 등의 계획서, 단체·법인 대표자의 확인서, 대학교 총장·학교장의 확인서 등 공공기관이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는 연구, 행정감시, 공공복리의 유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인지 판단할 수 있는 내용으로 반드시 제출받아야함

행정정보공개수수료(제3조 관련)

(「대구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3조 관련)

공개 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			
	원본의 열람·시청	원본의 사본(출력물)·복제물·인화물	전자파일의 열람·시청	전자파일의 사본(출력물)·복제물
문서·대장 등	○ 열람 -1건(10매 기준)1회 : 200원 • 10매초과시 5매마다 100원	○ 사본(1매 기준) -A3이상 300원 • 1매 초과마다 100원 -B4이하 250원 • 1매 초과마다 50원	○ 열람 -1건(10매 기준) 1회 : 200원 • 10매 초과시 5매마다 100원	○ 사본(종이출력물) -A3이상 300원 • 1매 초과마다 100원 -B4이하 250원 • 1매 초과마다 50원 ○ 복제 -1건(10매 기준)1회 : 200원 -10매초과시 5매마다 1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도면·카드 등	○ 열람 -1매 : 200원 • 1매 초과마다 100원	○ 사본(1매기준) -A3이상 300원 • 1매 초과마다 100원 -B4 이하 250원 • 1매 초과마다 50원	○ 열람 -1매 : 200원 • 1매 초과마다 100원	○ 사본(종이출력물) -A3이상 300원 • 1매 초과마다 100원 -B4이하 250원 • 1매 초과마다 50원 ○ 복제 -1건(10매기준)1회 : 200원 -10매초과시 5매마다 1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	○ 청취 -1건이 1개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 복제 -1건이 1개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마다 5,000원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시청·청취 -1편 : 1,500원 • 30분 초과시 10분마다 500원	○ 복제 -1건(700MB 기준)마다 5,000원 -700MB 초과시 350MB마다 2,5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	○ 시청 -1편이 1롤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 복제 -1편이 1롤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마다 5,000원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영화필름	○ 시청 -1편이 1캔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		
슬라이드	○ 시청 -1컷마다 200원	○ 복제 - 1컷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시청 -1컷마다 200원	
마이크로필름	○ 열람 -1건(10컷 기준) 1회 : 500원 • 10컷 초과시 1컷마다 100원	○ 사본(출력물 : 1매 기준) - A3 이상 300원 • 1매 초과마다 200원 - B4이하 250원 • 1매초과마다 150원 ○ 복제 - 1롤마다 1,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
사진·사진필름	○ 열람 -1매 : 200원 • 1매 초과마다 50원	○ 인화(필름) -1컷마다 500원 • 1매 초과마다 3"×5" 200원 5"×7" 300원 8"×10" 400원 ○복제(필름) -1컷마다 6,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열람 -1매 : 200원 • 1매 초과마다 50원	○ 사본(종이출력물) - 1컷 250원 • 1매 초과마다 3"×5" 50원 5"×7" 100원 8"×10" 150원 ○ 복제 - 1건(1MB 기준)1회: 200원 - 1MB초과시 0.5MB마다 1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우편을 통해 공개하는 경우 전자파일의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 산정

10 공개 실시

공개실시 (처리과)	**청구인 준비사항** • 수수료,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공개결정 통지서 ※ 법정대리인의 경우 : 법정대리인 증명서류 추가 ※ 임의대리인 : [정보공개위임장], 청구인, 수임인 신분증명서 추가 **공개의 방법** • 원본의 열람, 시청 및 사본, 복제물, 인화물의 교부, 전자우편(청구인의 동의시 일부가공 공개 가능) **수수료 납입**

공개 일시의 결정(영 제12조 제1항)

-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청구인이 요청할 경우는 달리 정할 수 있음)
- 일시를 정확하게 지정하기 곤란한 경우 공개 기간을 적절히 설정

정보의 양이 과다할 경우(법 제13조 제2항)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2월 이내에 사본 · 복제물을 나누어 교부
- 공개대상 정보의 양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우선 열람토록 한 후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사본 교부(영 제12조 제2항)

정보공개법 제7조 제1항에 의해 이미 공개된 정보는 그 정보 소재 안내(영 제14조 제1항 제5호)

공개 일시 경과 시의 종결처리(영 제12조 제3항)

- 결정통지시 지정한 공개일 후 10일이 경과할 때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청구인이 정보공개에 응하지 않을 경우 내부적으로 종결처리

공개된 정보에 대해 법정 공개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청구인이 응하지 않아 내부적으로 종결 처리될 경우 보내는 공문 예시

1. 제목 : 공개기간 도과로 인한 종결처리
2. 귀하의 정보공개 청구건(접수번호, 접수일자) 관련입니다.
3. 본 기관은 청구하신 정보에 대해 (날짜) 정보공개 결정 및 공개일시 등을 귀하께 통지하였으나, 공개일 후 10일이 경과할 때까지 이에 응하지 않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의거 내부적으로 종결 처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4. 위 사항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면 성실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공개 방법의 결정

-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원칙적으로 청구인이 요청한 방식대로 공개
  ※ 특별한 사정이란?
  정상적인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정보의 성질이 훼손될 우려가 명백한 경우
- 공공기관에서 정보공개방법의 선택에 관한 재량권은 없으나 부득이 한 경우 청구인과 협의하여 청구인의 허락하에 공개방법 변경 가능

열람에 의한 공개

- 열람장소를 확보한 후 청구인에게 정보를 제공
- 특별히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메모와 촬영 허용
- 부분공개 대상인 경우 비공개 사항을 열람하지 않도록 유의

사본·복제물 교부에 의한 공개

- 복사물, 출력물, 인화물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제공
- 공공기관은 사본·복제물 제작을 위한 기본적인 설비를 구비
- 열람의 방법으로 공개할 수 있는 정보는 사본·복제물 교부방식으로도 공개할 수 있어야 함

전자파일 형태의 공개(법 제15조)

- 저장매체(디스켓, CD롬 등)에 저장하여 제공하거나 전자우편 등 정보통신망(정보공개 시스템)을 통해 공개
- 전자적 형태(한글, 엑셀 파일 등)로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당해 정보의 성질상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구인의 요청에 응하여야 함(법 제15조 제1항)
- 전자파일 형태가 아닌 정보라도 정상적인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정보의 성질이 훼손될 우려가 없는 한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전자파일 형태로 변환하여 공개(법 제15조 제2항)
- 공문서에 포함된 관인·서명은 위·변조의 우려가 있는 경우 문서 파일에서 제외하고 공개
  ※ 청구인이 관인·서명이 포함된 형태로 공개할 것을 요청할 경우 서면으로 공개

▸ 정보를 가공하여 공개할 수 있는 경우

여러 종류의 정보가 복합되어 있거나 여러 부서로부터 취합하여 공개하는 경우 등 정보를 있는 그대로 공개하는 것이 오히려 큰 업무부담을 유발하는 경우로써 청구인이 정보의 가공에 동의한다면 부분적인 정보의 가공공개 가능

- CSD 파일로 변환되어 제공된 정보를 청구인이 엑셀 형식 등으로 개인 메일을 통해 받고자 하는 경우, 관인 서명 등 위변조의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공 가능

출력물의 진본성 확인

- 공개정보의 정보공개시스템상 처리 등 사무환경 변화로 원본을 그대로 출력하여 제공하기 때문에 간인이나 '원본대조필'과 같은 표시를 따로 날인할 필요성과 의무는 없음
  ※ 대구지방교정청행정심판위원회(사건번호 2006-26호)는 "공공기관이 청구인에게 정보 공개시 원본의 사본·출력물에 '원본대조필'을 날인할 의무와 법적 근거가 없다"고 재결함
- 공무원이 공개하는 정보를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허위로 정보를 공개한다면 국가공무원법 제78조(징계사유)와 지방공무원법 제69조 및 형법 제227조 허위공문서 작성으로 처벌을 받게 되며 개인이 공개한 문서를 위·변조할 경우에는 형법 제225조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됨
- 단, 청구인이 소송자료 등 중요한 용도로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간인 또는 '원본대조필'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조치 가능

즉시공개(법 제16조)

- 법령 등에 의해 공개를 목적으로 작성된 정보
- 일반국민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작성된 각종 홍보자료
- 공개하기로 결정된 정보로서 공개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 정보
-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

※ 공개여부를 별도로 판단할 필요가 없고 청구인에게 바로 정보를 교부할 수 있는 경우

즉시공개 처리 방법

- 별도 정보공개 결정통지서를 작성 교부하지 않고 청구인에게 정보를 즉시 제공
- 청구인에게 정보 수령증에 서명하도록 한 후 이를 청구서와 함께 편철하여 보관
- 정보공개처리대장 기재하고, 정보공개 수수료 수납은 일반적인 청구와 동일하게 처리

부분공개(법 제14조)

비공개정보와 공개정보가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비공개 대상정보를 제외하고 공개

분리가능성 판단기준

- 공개정보와 비공개 대상정보를 분리할 수 있는지 여부는 정보공개의 이익과 행정의 부담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정하여야 함

부분공개시 조치

- 부분공개결정을 하는 때에는 비공개하는 부분에 대하여 비공개이유·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통보

부분공개에 있어서 의미 없는 잔존정보의 공개거부(법 제14조, 법 제9조 제1항)

- 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는 그 일부에 비공개 정보가 포함되었다는 것을 이유로 하여 전체를 비공개할 수 없음. 원칙적으로 공개가능 한 부분은 공개하여야 함. 즉, 청구대상이 된 정보의 일부가 비공개정보에 해당하고 나머지 공개할 수 있는 정보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최대한 공개를 실현하기 위하여 공개 정보와 비공개 정보를 구별하여 공개하여야 함
- 전자적 기록의 경우 비공개 정보와 공개 정보의 구분 자체가 기술적으로 곤란할 수 있기 때문에 비공개 정보와 공개 정보를 분리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부분공개 의무가 제한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함. 전자적 기록의 경우에는 종이에 기록된 경우와 달리 삭제된 개개의 부분과 분량을 청구자가 알 수 없는 형태로 삭제가 될 수 있음
- 전자적 기록으로 공개되고 부분 공개가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삭제된 개개 부분과 분량에 대해서 청구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할 것임. 비공개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그 자체로서 무의미한 문자, 숫자만으로 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함

11 정보부존재 처리

'정보부존재'로 판단할 수 있는 경우

공공기관이 청구된 정보를 생산하지 않은 경우

- 청구 받은 정보를 직무상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에는 생산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음

  ※ '상당한 개연성'의 유무에 관해서는 당해 기관이 판례 등을 참고하여 청구받은 정보와 기관직무 등을 종합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판단

※ '상당한 개연성' 인정 판례
▶ 수능 수험생의 원점수 등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 (서울행법 2008)
▶ 교도소직원회운영지침의 폐지로 곧바로 관련문서를 보관하지 않다고 단정할 수 없음(대법 2004)
▶ 대리 서명하는 집배원들의 숫자와 비율은 서울체신청장이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 (2010.중앙심판위)
▶ 약물환자 치료교육 및 수용기간 등은 수용중인 약물환자의 일반현황에 관한 것으로 법무부하는 일의 성격으로 볼 때, 정보를 가지고 있다 할 수 있음(2004.중앙심판위)
▶ 청구인은 공공기관이 구체적으로 어떤 정보를 보유하는지에 관해 알지 못하고 이를 확인 조사할 수 없으므로 당해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음을 직접증거에 의해 증명필요는 없고 상당한 개연성을 증명하면 됨 (서울행법2006.9)

※ '상당한 개연성' 불인정 판례
▶ 장르별 제작원가의 세부내역을 한국방송공사가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서울행법 2007)
▶ 표준건축비 산출을 위한 설계도서 정보를 작성하여 보유·관리해야 하는 의무 규정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에 비추어 정보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없음(2011. 중앙심판위)

기록물관리법에 따라 보존연한이 경과하여 폐기한 경우

- 보존연한이 경과하였다 하여도 폐기하지 않고 실제 보유·관리 하는 경우에는 정보부존재로 판단할 수 없음

▶ 청구인은 청구한 정보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에 이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으나, 공공기관은 청구 받은 정보가 한 때 보유·관리하였으나 후에 폐기하여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음(대법원 2003두12707)

정보의 생성, 취합, 가공을 해야 하는 경우

- 정보공개는 현상태 정보를 공개하는 것으로 새롭게 정보를 생산하거나 가공, 취합하여 제공할 의무는 없음
- '가공'의 범위에 관해서는 판례 등을 참고하여 정보의 보유관리 형태, 기관의 업무상황 등을 고려하되 적극적으로 판단
  ※ (전산자료) 개개의 정보자료를 이용하여 시간적, 경제적 부담없이 전산기기로 필요한 정보를 쉽게 생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보유로 판단

※ 전산자료 가공의 범위에 관한 판례
▶ 업종별, 직업별 체납규모 등의 일부 세무조사 관련 정보는 간단한 전산처리를 통하여 쉽게 분리시켜 따로 관리할 수 있는 정보라 할 수 없으므로 정보공개 청구량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 (2000.11.중앙심판위)
▶ 대입수능 원점수정보 공개청구에서 정보의 기초자료는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고 있고 당해 기관에서 통상 사용되는 컴퓨터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기술적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기초자료를 검색하여 편집할 수 있고 해당 컴퓨터시스템 운용에 별다른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한다면 새로운 정보의 생산 또는 가공에 해당되지 않음(대법 2010)

– 다만,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원본 그대로 공개하는 것이 오히려 큰 업무부담을 유발하는 경우에 청구인도 정보를 가공하여 공개하는 것에 동의한다면 그 범위내에서 가공 공개

※ (종이문서) 00대학교에 07년~10년도 입학원서를 낸 사람의 인적사항 통계(성별, 지역별, 나이별 등)를 요청한 경우, 청구인이 요청한 형태의 통계자료는 없으며, 가공하여야만 제공이 가능한 경우, 원데이터인 입학원서는 존재하므로 입학원서자체를 부분공개(개인정보 등을 제외)

• 청구정보가 기관의 부서별로 나누어져 있는 경우에는 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로 볼 수 있음

– 청구인은 공공기관을 상대로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청구하는 것이고, 부서별로 정보가 나누어져 있는 것은 기관의 내부적 업무분장에 불과하므로 '취합'의 개념이 아님

– 부서별로 특정 정보의 관리형태가 다를 경우 이를 청구인 요구에 맞춰 제공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있는 그대로 취합·제공

정보를 특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청구한 경우

• 민원사무처리법 제13조에 따라 보완이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청구한 정보를 특정하도록 보완 요청하고, 보완 여부에 따라 처리

※ 청구받은 정보의 '특정성'에 관한 판례

▶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은 사회 일반인의 관점에서 청구대상정보의 내용과 범위를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어 있으면 족함(대판 2000두9212)

▶ 대한주택공사의 건설원가 및 관련자료일체를 청구한 사례에서 '관련자료 일체'가 정보의 내용이 너무 포괄적이거나 막연하여 사회일반인의 관점에서 그 내용과 범위를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음(대법 2007)

▶ 'oo협회와 관련하여 실시한 주요 감사내용의 문건'이라고만 되어 있을 뿐, 감사기간이 특정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주요 감사내용이라고만 표시하여 청구대상 정보의 내용과 범위를 확정할 수 없는바 위 정보는 공개대상이 되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소정의 정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정보의 공개를 구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음(2005누 25082)

'정보부존재' 처리 방법

기관이 보유관리하지 않는 정보를 청구한 경우

• 영 제6조 제4항에 따라 '정보부존재' 통지

※ 서식 :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2서식]

- 정보공개시스템상 정보부존재 사유를 기재하여 통지
  - 청구정보가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은 정보
  - 보존기간 경과에 따라 폐기된 정보
  - 업무상 과도한 부담 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가공이 필요한 정보
  - (청구인에게 보완 요청하였으나) 청구정보가 특정되지 않은 정보

공개 또는 비공개 결정할 수 있는 정보와 정보부존재를 함께 청구한 경우

- 공개 또는 비공개 결정통지서 상에 '정보부존재'의 사유를 공개, 비공개 내용과 명확히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설명
  - 정보 부존재는 공개·부분공개·비공개 결정이 아닌 '정보부존재'의 사실을 통보

  ※ 예 : 귀하가 청구하신 정보 중 ○○사업계획서는 공개하며, 사업계획서는 기록물관리법에 따라 보존연한의 경과로 폐기하여 정보부존재임을 알려 드립니다.

'정보부존재' 처리 기간

청구일부터 7일 이내

- 정보공개청구의 경우 10일이내 정보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나, 정보부존재 등의 경우에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동법에 따라 7일 이내 처리
- 다만, 공개·비공개 결정과 정보부존재가 함께 청구된 경우에는 정보공개 또는 비공개 결정 통지서에 '정보부존재' 사유를 기재하고 정보공개법에 따라 10일 이내 처리

공개 청구된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을 경우 정보의 부존재를 민원으로 안내하는 경우 보내는 통지문 예시

제목 : 정보 부존재 안내

1. 귀하의 정보공개 청구건(접수번호, 접수일자) 관련입니다.
2. 귀하가 청구하신 정보는 본 기관이 보유 · 관리하는 정보가 아니며 다음의 사유(선택)로 인하여 부존재 함을 알려드립니다.
   ① 당해 기관에서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고 있지 않은 정보
   ② (법령명)에서 명시한 보존기간(작성 : 날짜, 보존기간 : ○년)이 경과하여 현재 폐기된 정보
   ③ (날짜)경에 발간 예정인 정보 등
   ④ 가공, 취합하여야 하는 정보
3. 위 사항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면 성실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붙임 : 정보부존재통지서 1부. 끝.

※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2서식】

12 진정·질의 처리

진정·질의·제안 등에 대하여는 '민원사무'로 분류 처리

- 문서로 통지하되,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
  - 정보공개시스템으로 청구된 경우에는 시스템상 통지로 갈음

  ※ 처리기간 : 질의 · 상담 · 고충민원 7일 이내, 법령해석 14일 이내

  ※ 예 : "귀하께서 제출하신 ○○ 관련 내용은 해당 정보공개법 제2조 제1호에 의한 청구가 아닌 ○○문제의 해결을 요구하시는 민원사항으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 (...질의에 대한 답변내용...)로 답변드립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민원사무 및 처리규정

《 민원사무의 종류 》

제2조(정의) ②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민원사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사무를 말한다. 1.~3.(생략)

4. 법령·제도·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한 질의 또는 상담형식을 통한 설명이나 해석의 요구
5. 정부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에 관한 건의
6.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의 해결 요구(이하 "고충민원")
7. 그 밖에 행정기관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사항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상 민원처리 제규정 》

제12조(처리기간의 설정·공표), 제13조(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 제14조(서류의 보완 등), 제15조(민원서류의 반려 등), 제17조(처리기간의 연장 등), 제18조(복합민원의 처리), 제19조(질의 및 행정개선 건의의 처리), 제20조(고충민원의 처리), 제21조(반복 및 중복 민원의 처리) 등

13 동일·반복청구 등 정보공개 오·남용

정보공개법상 정보공개 오·남용에 대한 기준이 없고 공개대상 정보의 양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기 때문에 정보공개 청구의 빈도가 많거나 공개대상 정보의 양이 많다는 이유만으로는 정보공개 오·남용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임. 그렇다고 하더라도 정보를 특정하지 않는 등 방대한 양을 정보공개 청구하여 공공기관의 업무처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청구인의 정보공개 청구권 남용은 법의 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에 맞지 아니함 (※ 민법 제2조 제2항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정보공개 청구량이 과다한 경우

- 1회 청구서에 기재한 정보공개 청구의 내용(목록)이 통상 청구건수와 청구량의 범위를 벗어난 과도한 수준으로 처리시일이 장기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속하고 원활한 정보공개를 위하여 청구인과의 협의를 통해 청구량의 조정이 최선의 방안임

  ※ 오·남용에 대한 법원의 판단정보공개법의 목적, 규정 내용 및 취지에 비추어 보면, 정보공개청구의 목적에 특별한 제한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오로지 피고를 괴롭힐 목적으로 정보공개를 구하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공개의 청구가 신의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대법원 2004두2783, 2006. 8. 24)

공개대상정보의 양이 과다한 경우

- 청구내용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공개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교부할 수 있음(법 제13조 제2항)

반복 청구의 처리(영 제6조 제5항)

- 2회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한 정보의 반복적 청구시, 내부 종결
  - 정당한 사유 없는 반복 청구의 경우 정보공개 결정의 통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재청구하거나, 영 제6조 제3항에 따라 민원사무로 처리한 통지를 받고서 같은 내용을 재청구한 경우 종결처리 가능
  - 정당한 사유란 '행정기관의 착오', '법령의 변동',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한 상황의 변경' 등과 같이 청구인 사정이나 임의적 요구가 아닌 불가항력적 사유를 말함
  - 종전 청구(민원)의 내용을 복사한 경우와 같이 그 문구가 동일한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동일한 내용으로 공개할 수 밖에 없는 경우

법제처 법령해석 예시 (11-0134)

동일한 내용의 민원이란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그 취지나 목적이 같으면 동일한 내용의 민원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임. 일정한 민원이 동일한 내용의 민원인지는 단순한 문구로 판단할 사안이 아니고, 해당 민원의 처리기관에서 민원의 성격, 종전 민원과의 내용상 유사성, 관련성 및 종전 답변의 내용과 동일한 답변을 할 수 밖에 없는 경우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사안이라고 할 것이며,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1항에서 동일한 내용의 민원에 관한 서류에 복사한 경우를 포함한다는 규정은 그 문언상 기존 민원에 관한 서류를 복사한 경우에는 동일한 내용의 민원에 포함된다는 의미이지, 복사한 경우만이 동일한 내용의 민원이라는 의미는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동일한 내용의 민원'이 종전 민원의 내용을 복사한 경우와 같이 종전 민원과 그 문구가 동일한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임.

특정하지 않은 과다한 양의 정보공개 청구시 처리

- 원칙적으로 청구인이 청구한 정보량이 과다할지라도 청구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함
- 단, 청구인이 일반국민의 관점에서 보아 원하는 정보의 제목(목록)을 파악하지 못해 청구내용을 특정하지 못한 상태로 과다한 양의 청구를 할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정확한 정보목록(법 제8조에 따라 작성하여 홈페이지 게재나 기관 비치)을 안내하여 불필요한 청구와 공개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유도

수수료의 사전 안내와 선납

- 청구인이 정보공개 청구한 청구량에 대한 수수료를 사전 예측이 가능하도록 초기 시점에서 안내하여 청구인 스스로 청구량을 조정할 수 있도록 유도
- 공개하는 정보량이 간단하고 업무 부담이 경미한 경우에는 정보공개 결정통지시에 수수료를 고지하고 수수료 납부 후 즉시 공개가 가능하도록 조치
- 청구량이 많을 경우에는 정보공개 결정통지서에 예상 수수료를 산출한 금액을 통지(사전고지)하고 청구인의 취하와 미수령에 대비하여 청구인의 수수료 납부를 확인한 후 사본교부 및 열람 등 정보공개 처리절차 진행

14 불복 구제절차

불복사유

-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공공기관의 부분공개 결정
- 정보공개 청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공공기관이 공개 여부를 통지하지 않은 경우
- 공공기관이 청구내용과 다른 정보를 공개한 경우

처리절차

이의 신청	→	처분청에 신청	→	처분청의 재결
행정심판	→	처분청 또는 재결청에 신청	→	재결청의 재결
행정소송	→	관할행정법원에 소의 제기	→	행정법원의 판결 또는 결정

불복제기절차

-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제기’ 등 순서에 상관없이 제기할 수 있음

행정심판 → 행정소송
이의신청 → 행정소송
이의신청 → 행정심판 → 행정소송

이의신청

이의신청 (청구인)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불복(법 제18조)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신청
이의신청 (제3자)	비공개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의 공개결정에 불복(법 제21조)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신청

이의신청 제기

-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청구인 (법 제18조 제1항)
  - 공공기관으로부터 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
- 비공개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의 당해 제3자 (법 제21조 제2항)
  - 공개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이의신청 방법

- 이의신청 방법 : 문서(법 제18조)
  - 정보공개시스템 이용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 제3자는 문서로 이의신청
- 기재사항
  - 신청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법인·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와 연락처
  -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정보공개여부 결정의 내용
  -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 정보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

이의신청 처리

- 정보공개심의회 심의를 통해 공개여부 결정(영 제11조 제2항)
- 처리기간 :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단, 부득이한 경우 “7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법 제21조 제2항)

  ※ 연장하는 경우 연장사유, 연장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청구인에게 통지

※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 각하 또는 기각 결정시에는 행정심판(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결과통지와 함께 통지(법 제18조 제3항)
- 이의신청 처리대장 정리(기록)

※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이의신청 결정 종류

- 각하 : 이의신청 요건이 결여되어 부적법한 것인 경우에 본안심리를 거절하는 결정
- 기각 : 본안심리 결과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하여 원처분을 시인하는 결정
- 인용 : 본안심리 결과 이의신청이 이유 있고, 원처분이나 부작위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하여 청구인의 청구 취지를 받아들이는 결정

본안심리 결과 이의신청의 제기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어 기각할 경우 보내는 통지문 예시

1. 결정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
2. 결정사유

귀하의 이의신청에 대해 (날짜) 정보공개심의회 심의결과 (구체적 기각 사유)로 이의신청이 기각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이의신청 공개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경우 보내는 통지문 예시

1. 결정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2. 결정사유

귀하의 이의신청은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해당 정보 관련 제3자의 의견청취가 필요한 사항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공개여부 심의를 위한 정보공개심의회 일정 조율이 필요한 사항
- 이의신청내용이 복잡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공개여부 결정이 곤란한 사항 등

(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법정 처리기간을 초과하게 되었으니 이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의신청의 제기 요건이 결여되어 본안 심리를 거절하는 경우 보내는 통지문 예시

1. 결정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
2. 결정사유
   귀하의 이의신청은
   - 공개결정에 대한 사항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서 명시한 이의신청기간(비공개결정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이 지난 사항
   (으)로서 이의신청 제기 요건이 결여되어 각하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심판, 행정소송

행정심판 (청구인·제3자)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불복(법 제19조)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구
행정소송 (청구인 ·제3자)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불복(법 제20조)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기

행정심판 청구

- 청구인·제3자가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때(법 제19조 및 법 제21조)에 행정청의 직근 상급행정기관 소속 행정심판위원회로 판단을 구함
-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 청구 가능(법 제19조 제2항)
- 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 각급 학교에 대한 재결청은 대구광역시교육청이며, 대구광역시교육청에 대한 재결청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임
- 행정심판 청구 시기는 비공개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비공개 결정이 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
  ※ 청구서를 받은 처분청은 10일 이내에 위원회에 송부

행정소송 제기

- 청구인·제3자가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때(법 제20조 및 법 제21조)에 사법적 판단을 구함

- 이의신청 또는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 제기 가능
-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사자를 참여시키지 아니하고 제출된 공개 청구 정보를 비공개로 열람·심사할 수 있음(법 제20조 제2항)
- 행정소송 제기 시기는 비공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비공개 결정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 제기 가능

  ※ 피고의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 중앙행정기관장이 피고일 경우 대법원 소재지 행정법원, 서울은 서울행정법원, 기타지역은 지방법원 행정합의부

집행정지

정보공개의 집행을 통해 제3자의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인정될 때 당사자의 신청 또는 행정심판위원회 또는 법원의 직권으로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는 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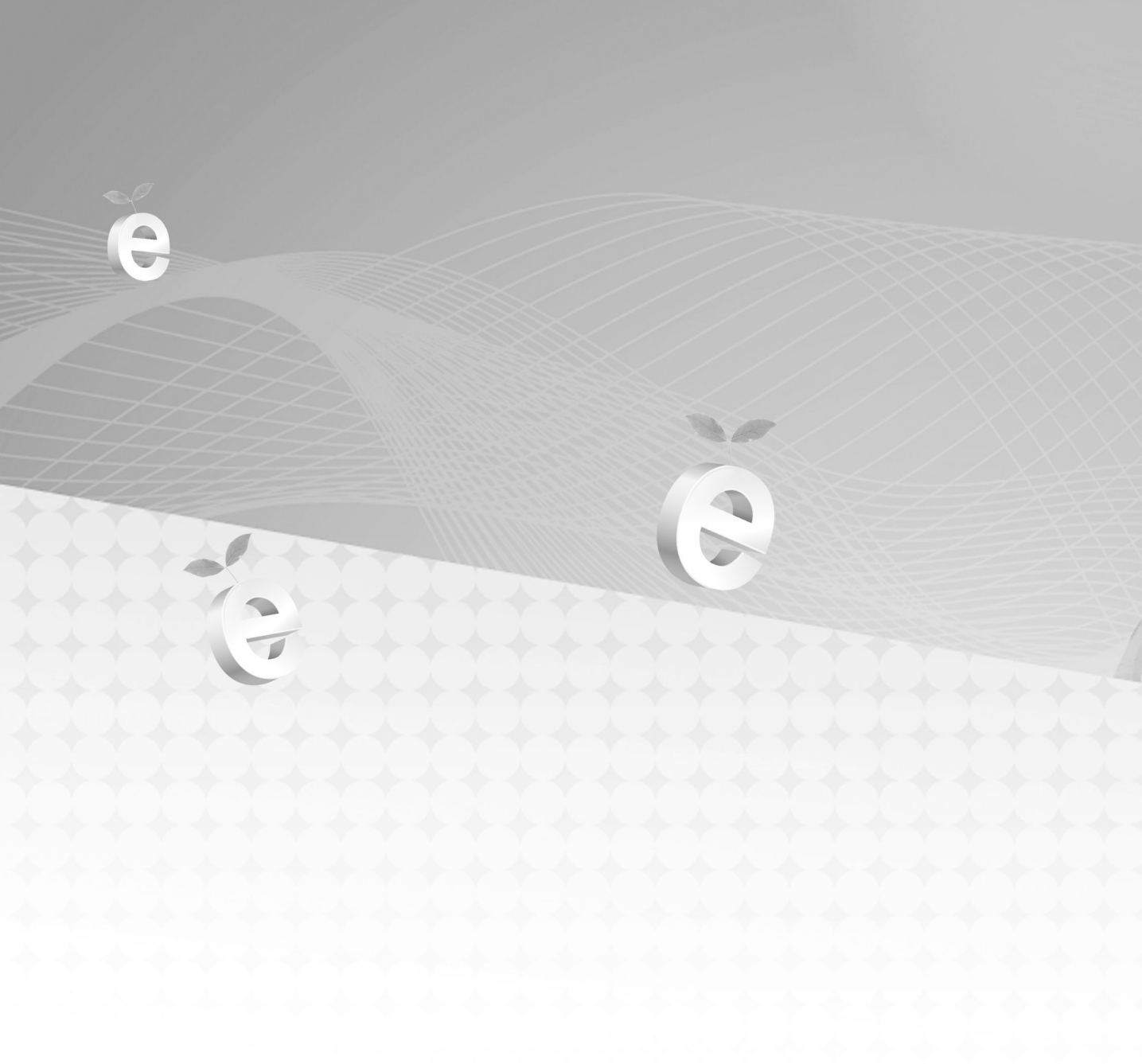

제5장
비공개대상정보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

제5장 비공개대상정보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

1 항목별 비공개대상 정보

가. 법령상 비공개대상 정보(법 제9조 제1항 각호)

❶ 법령상의 비밀·비공개 정보 (제1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❷ 안보·국방·통일·외교 관련 정보 (제2호)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❸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및 공공안전 관련 정보 (제3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❹ 재판·수사 등 관련 정보 (제4호)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❺ 감사·감독·계약 등 관련 정보, 의사결정 과정이나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정보 (제5호)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❻ 개인정보 (제6호)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❼ 경영·영업비밀 정보 (제7호)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❽ 투기·매점매석 등 관련 정보 (제8호)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나. 대구광역시교육청 비공개대상 정보 세부기준

※ 대구광역시교육청 정보공개 운영 규정에 의함

법령상 비공개대상 정보	우리교육청 비공개대상 정보 세부기준	비고
법 제9조 제1항 제1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1. 공직자 재산등록사항 및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와 관련하여 취득한 금융거래자료(공직자윤리법 제10조 및 14조의3) 2. 공판 개정 전 소송에 관한 서류(형사소송법 제47조) 3. 부패행위신고자 등에 관한 인적사항 및 부패행위신고자 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정보(부패방지법 제33조) **4. 민원사무 처리와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로서 민원사항의 내용과 민원인의 신상정보(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 74페이지의 '업무 처리자의 직무상 비밀엄수 의무를 규정한 것은 아닌지 여부' 참조하여 적용** 5. 학교생활기록 등의 학생정보. 다만, 부모 등 보호자에게는 예외로 함(교육기본법 제23조의3) 6.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 자료(통계법 제33조) 7. 성폭력 피해자의 개인 인적사항, 사진, 사생활에 관한 비밀 등(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8. 행정심판위원회 회의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이 기재된 문서, 심리 중에 있는 심판청구사건의 의결에 참여할 위원 명단(행정심판법 시행령 제23조의2) 9. 기타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법 제9조 제1항 제2호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1. 을지연습과 관련된 기본계획, 자체사건계획, 상황보고서, 강평회 보고서 등의 문서, 충무계획과 관련한 각종 정보, 민방위교육훈련 실시결과 보고서와 같은 민방위교육 관련 정보 2. 비밀취급인가자 명단, 암호자재현황 등 보안업무규정에 의해 비밀로 분류된 정보와 보안업무추진계획, 안전지출 및 파기계획 등 대외비로 분류된 정보 3. 대통령·국무총리 등 국무위원이 참석하는 주요행사 계획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대통령 등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행사목적을 부당하게 침해할 수 있는 정보 4. 국가안보·국방·통일·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비공개 요청을 받은 정보 5. 정보통신망 구성도, IP정보, PC 비밀번호 관리대장, PC 및 단말기 취급자 관리대장, 정보시스템 보안 기본 지침,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침입 차단 시스템 관련 정보, 웹 서비스 관련 정보 등 각종 정보통신 보안 관련 정보 및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대책과 전략 등 공개될 경우 해킹·사이버테러 등 국가행정정보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6. 기타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법령상 비공개대상 정보	우리교육청 비공개대상 정보 세부기준	비고
법 제9조 제1항 제3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1. 건축물 등의 경비 위탁 내용 2. 위험시설, 장비의 설계도·구조 등에 관한 사항 3. 위법 ·부정행위 및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행위 등의 신고자, 조사결과 통보자, 피의자, 참고인 명단 4. 화약, 독극물 등의 제조 ·운반, 관리에 관한 정보로서 공공의 안전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5. 전염병 예방, 식품, 위생, 환경 등의 관련 정보로서 공공의 안전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6.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보호와 중요한 연관이 있는 방범행정, 방재행정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7. 기타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법 제9조 제1항 제4호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1. 행정소송 ·헌법소원 등 재판과 관련된 소장, 답변서, 소송 진행 상황 등에 관한 정보 2. 진행 중인 재판과 직접 ·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 3. 범죄의 목표가 될 수 있는 청사시설 등의 설계도 ·구조 ·경비에 관한 정보 4. 인감, 주민등록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위 ·변조, 범죄 목적 사용의 우려가 있는 정보 5. 수사협조 의뢰 관련 정보 6. 수사관계 조회 사항 등 수사에 관한 정보 7. 공무원 등의 범죄사건 ·내사사건 처리 관련 정보 8.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관한 사항으로서 피의자가 관련 내용을 알게 될 경우 법정에서 자신의 범죄를 부인하기 위한 방어 자료로 활용 또는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는 정보	
법 제9조 제1항 제5호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1. 불시 감사·검사·조사·단속·직무감찰·등의 대상·시기·방법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증거 인멸 등 감사 등의 목적이나 실효성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정보 2. 감사 등의 결과 및 그 결과에 따른 조치요구사항 및 조치결과 3. 감사와 관련하여 취득한 행정상의 기밀에 관한 정보 4. 문답서·확인서 등 조사활동 중 생산된 문서, 공무원 비리조사 관련 조사결과 문서 등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을 현저히 저해할 수 있는 정보	

법령상 비공개대상 정보	우리교육청 비공개대상 정보 세부기준	비고
법 제9조 제1항 제5호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공무원 및 교원의 임용시험, 검정고시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험문제은행 관리, 시험출제 관리, 시험위원 위촉, 시험관리관 선정, 시험시행에 관한 내부계획, 채점 및 합격자 결정과정 등 당해 시험의 적정한 실시 또는 판정,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6. 각종 경시대회 및 각종 학력평가 등의 문제지, 답안지, 출제위원, 채점위원, 심사위원 및 채점 관련 자료 7. 기타 시험의 적정한 실시 또는 판정,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8. 각종 인허가대상자 선정관련 정보 및 심사위원명단 9. 학교법인의 설립허가·정관변경인가·기본재산처분허가 등 학교법인 관련 인허가 및 학교시설 건축·축조 승인 등 개별인허가 신청, 심사, 결정에 관한 문서로서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 및 규제업무의 적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10. 사양서, 설계서, 부동산 감정평가, 계산 단가 등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정보로서 입찰 또는 견적의 실시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우려가 있고 계약사무의 적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예정가격 관련 정보 11. 입찰예정자의 경영내용, 업무내용 또는 평가결과를 기재한 사항,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입찰참가신청서, 첨부서류 등의 개인 및 법인 정보로서 공정한 입찰을 현저히 저해할 수 있는 정보 12. 예·결산, 회계 관련 문서로서 예산사무의 적정한 운영, 감사원의 적정한 업무수행, 또는 적정한 입찰운영 등에 현저한 지장이 초래될 수 있는 정보 13. 세입·세출 조정에 관한 문서로서 예산 사무의 적정한 운영에 현저한 지장을 미칠 수 있는 정보 14. 결산검사과정의 질문·확인서 및 답변서 등의 문서로서 결산사무의 적정한 운영 및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초래될 수 있는 결산 관련 문서	

법령상 비공개대상 정보	우리교육청 비공개대상 정보 세부기준	비고
법 제9조 제1항 제5호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15. 자금의 운용에 관한 문서로서 공개될 경우 시장 또는 자금운용에 대하여 예견하는 것이 가능하여 적정한 가격의 형성을 저해하는 등 자금운용사무의 적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초래될 수 있는 회계 관련 정보 16. 동종의 보조사업이 차년도 이후에 계속 시행되는 경우, 현재 행하고 있는 보조금교부에 관한 정보가 공개됨으로써 보조금교부의 우선순위 등의 실제가 판명되어 장래 보조금 심사사무 등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고, 보조사업의 계산내역이 판명되어 장래의 계약사무의 적정한 실시에 현저한 지장이 생길 수 있는 정보 17. 연구의 자유나 지적소유권을 저해하는 사항, 연구의 중간단계에 있는 사항 중 국민에게 오해를 줄 수 있는 정보 18. 공무원 및 교원의 임용시험, 인사교류, 인사평정, 교육훈련, 급여, 연금 등의 내부검토·협의·결정 등이 공개될 경우 내부 인사기밀이 노출되거나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인사의 공정성을 현저히 저해할 수 있는 정보 19. 임면, 복무, 급여, 연수 등의 인사에 관한 개인정보, 근무성적 평가에 관한 정보로서 인사운용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20. 성과상여금 심사·등급·지급 관련 서류, 다면평가 관련 서류, 인사위원회의 승진 심사내용 21. 전보내신자 명부, 승진후보자 명부, 자격연수대상자 명부, 전문직 전형 합격자 명부 등 각종 인사 관련 서류의 순위 명부 22. 내부에서 심의 중인 안건, 의견교환 기록 등 국민의 오해 및 혼란을 초래하거나 행정내부의 자유로운 의견교환에 방해를 줄 수 있는 행정내부의 심의 · 협의 · 조사 등의 자료 23. 업무의 기획, 검토를 위해 수립되는 정보 등 공공기관 내부의 심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24. 각종 정책 추진과 관련하여 유관기관, 단체 등과의 협의사항 등 공개될 경우 국민들에게 혼선을 야기하거나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법령상 비공개대상 정보	우리교육청 비공개대상 정보 세부기준	비고
법 제9조 제1항 제5호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25. 조사 또는 시험연구결과, 각종 개발계획 또는 검토 안 등으로서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정보 26. 조직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조직 개편, 직제관리 등 내부검토·협의·결정 등 공개될 경우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조직관리의 공정성을 현저히 저해할 수 있는 정보 27. 학교용지 취득 등의 교섭방침, 교섭상황 또는 예정지에 관한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현저히 교섭의 난황·지연, 경비의 불합리한 증대 가능성이 있는 정보 28. 공무원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연구·검토한 사항으로서 기관의 공식적인 의사로 볼 수 없는 정보 29. 의사결정 완료 후라도 공개될 경우 장래 동종의 의사형성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 30. 법령에서 규정하는 각종 심의회, 위원회 등과 기타 각종 회의 관련 자료로서 회의의 공정하고 중립적인 운영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 가. 징계위원회 및 인사위원회의 회의 내용 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회의 내용 다. 심사 중에 있는 안건의 의결에 참여할 위원의 명단 라. 참석자의 심리적 부담으로 인하여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교환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마. 공개하는 것에 의해 외부의 부당한 압력으로 업무의 공정성을 현저히 저해할 수 있는 정보 바. 공개하는 것에 의해 공정하고 중립적인 심의에 현저한 지장을 미칠 수 있는 정보 사. 공개하는 것에 의해 특정인에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을 현저히 줄 수 있는 정보 31. 각급학교 학생배정 및 입학전형 관련 자료 32. 교육정보화기기 보급 및 정보화시스템·장비 도입에 관한 내부검토 자료 33. 법령 또는 고시의 입안과 관련한 타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의·조정에 관한 문서로서 공개로 인하여 당해 입안사무 및 장래의 동종사무의 적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34. 단체교섭요구안 분석검토 자료 등 공무원·교원 단체 또는 노동조합과의 교섭에 관한 정보로서 관련단체·조합과 대등한 입장에서의 교섭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법령상 비공개대상 정보	우리교육청 비공개대상 정보 세부기준	비고
법 제9조 제1항 제6호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1.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2.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하는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3.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5.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1. 개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특정 개인 식별이 가능한 개인정보 2. 신체, 가족관계, 초상, 소득, 학력이나 직업 등 경력, 활동사항, 사상·양심·종교에 관한 정보, 건강상담표나 검사기록을 포함한 병원진료기록 등의 개인 건강상태에 관한 정보, 재산상황, 개인에 관한 평가기록 등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 3. 진정·탄원·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민원인의 인적사항, 민원 내용 및 처리결과의 공개만으로도 당해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개인정보 4. 정보공개청구자의 개인정보 5.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업무수행 시 취득한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과 관련된 개인정보 6. 개인의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정보로서 계좌번호, 이름, 인감 등이 공개될 경우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정보 7. 감사와 관련하여 직무상 취득한 개인 정보로서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정보 8. 특정 공무원의 집 주소·집 전화번호·학력·주민등록번호·사회경력 등 공적업무수행과 관련이 없는 개인정보 9. 인사교류신청, 채용후보자 명부, 교육훈련관리, 징계심의·의결·결정통지, 신원조사, 퇴직사실 확인 등 인사관리과정에서 생산·취득한 공무원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공무원의 명예·신용·경제적 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정보 10. 재산등록의무자의 재산신고, 대부, 기여금, 보상금, 공무원증 발급 등 각종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공무원 개인의 인적사항 또는 재산상황 등의 개인정보 11. 시험원서·답안지 등에 포함되어 있는 수험생의 성적·학력·주소 등 개인정보 12. 지출증빙서류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 식별형 정보로서 개인의 비밀 또는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정보 13. 업무추진비 관련 서류의 사인인 참석자 내지 금품수령자 인적사항 14. 학교운영위원의 개인정보	

법령상 비공개대상 정보	우리교육청 비공개대상 정보 세부기준	비고
법 제9조 제1항 제6호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1.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2.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하는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3.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5.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15. 학생상담록, 선도위원회 회의록의 개인정보 16.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의 학생 및 교직원 개인정보 17. 학교발전기금 납부자의 개인정보 18. 기간제교사 등의 채용 관련 서류 중 개인정보 19. 원어민 보조교사 채용 및 관리과정에서 생산·취득한 원어민의 개인정보 20. 채권압류에 관한 사항 중 개인정보 21. 맞춤형 복지 관련 자료 중 개인정보 22. 국·공유재산 매각 및 취득에 관한 자료 중 개인정보 23. 전·편입학 배정학생의 개인정보 24. 각종 위원회 위원의 개인정보 25. 각종 인허가 신청서의 개인정보 26. 공익요원 관련 자료 중 개인정보 27. 출입기자의 개인정보 28.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정보화지원 등 학생지원 관련 자료 중 개인정보 29. 학생부진아 관련 자료 중 개인정보 30. 각종 회의록 및 회의 관련 자료로서 그 내용이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정보 31. 기타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정보	
법 제9조 제1항 제7호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1.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2.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1. 국가보조금 지원을 받는 민간단체 또는 정부가 허가한 비영리 사단법인 관련 영업정보·자금·인사 등 내부관리에 관한 정보 2. 법인 등의 사업계획, 생산기술 및 영업상의 정보 3. 법인 등의 경영방침·신용·경리·인사 등 사업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의 내부관리에 속하는 사항 등 4. 법인 등과 각종 계약체결에 관한 문서로서 공개할 경우 당해 업체의 기존기술·신공법·시공실적·내부관리, 설계·시공의 노하우 등이 공개되어 설계·시공자에게 불리한 경우 5. 각종 인허가 신청, 심사, 결정에 관한 자료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6. BTL사업 및 각종 용역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개인·법인·단체 등)에 대한 기술평가결과 등 특정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법령상 비공개대상 정보	우리교육청 비공개대상 정보 세부기준	비고
법 제9조 제1항 제7호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1.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2.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7. 법인 등의 금융거래 내용에 관한 자료로서 계좌번호, 이름, 상호, 인감 등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8. 감사와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로서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9. 부정당업체 처분 관련 서류. 다만, 처분 현황은 예외로 함 10. 개별학원의 행정처분 현황 및 수강생 수 11. 법인 등의 소유 학교부지 및 물건 등의 보상관련 감정평가 내역 12. 비영리(공익포함)법인 재산의 취득·처분 등 관련 정보 13. 기타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경쟁·사업 운영상 또는 기타 사회적인 지위가 손상되는 정보	
법 제9조 제1항 제8호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1. 공유재산 매각공고 이전의 관련 정보 2.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 자료 3. 교육기관 및 학교의 신설·이설을 위한 검토·계획 등 승인·의결 전의 관련 정보 4. 교육기관 및 학교 부지 선정 관련 정보 5. 교육기관 및 학교 부지매수계약서 6. 각종 시설 관련 설비 설치계획 7. 기타 정보를 얻은 자와 얻자 못한 자와의 사이에 불공평이 발생하고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2 비공개대상정보 및 사례

가. 법령상의 비밀·비공개 정보(법 제9조 제1항 제1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비공개 이유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을 규정한 각 개별법령을 우선 적용하여 정보공개법과의 상호 충돌을 회피. 즉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다른 법률 등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으로써 법률 간의 마찰을 피하기 위한 것임(대법원 2006. 1. 13. 2004두12629)

비공개 유형

다른 법률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명문의 규정으로 공개가 금지되어 있는 사항
  - 중앙 및 지방 환경위원회의 조정 절차(환경분쟁조정법 제25조)
  - 국정원의 조직 · 소재지 및 정원(국가정보원법 제6조), 국정원의 예산내역(제12조)
  - 컴퓨터 파일에 기록된 전자무역 문서 및 데이터베이스에 입력된 무역정보 중 일정한 정보를 제외한 것(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 국회에서의 비공개 회의내용(국회법 제118조 제4항)비공개로 진행된 국회의 회의 내용은 공표되어서는 안됨. 다만, 본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결정으로 국회법 제118조 제1항 단서상의 비공개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표할 수 있음
  -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생활실태 등에 관한 사항(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2조 제6항)
- 타 사용목적이 금지되어 있는 사항
  -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자료(통계법 제13조)
- 개별법에 의하여 비밀유지의무가 부과된 사항
  -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 목적으로 취득한 자료 등을 타인에게 누설 금지(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 통신제한 조치의 허가과정·여부·내용 등의 비밀유지(통신비밀보호법 제11조)
  -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 직무발명의 내용에 관한 비밀(발명진흥법 제19조)
  - 외국환거래와 관련한 정보(외국환 거래법 제22조)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법률에 의한 명령은 내부지침 · 예규 · 훈령 · 지시 등 “비법규 사항”을 제외함

※ 법제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례(법제처 해석례)관세법 시행령 제64조(11-0344),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제17조(11-0348), 형사소송법 제198조 제2항(11-0350), 공무원징계령 제20조(11-0341), 형법 제126조(11-0349)

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판단할 수 있는 기준

- '다른 법률'에 구체적으로 위임을 받았는지 여부
  - 관세법 시행령 제64조는 관세법 제52조에 의해 (법제처 법령해석 11-0344),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제17조(법제처 법령해석 11-0348)는 지방자치법 제167조, 제171조 등에 포괄적으로 위임을 받은 명령에 불과
-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무원 징계령 제20조의 징계위원회 회의는 정보공개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정보'로 볼 수 없음(법제처 법령해석 11-0341)
- 업무 처리자의 직무상 비밀엄수 의무를 규정한 것은 아닌지 여부
  - 민원사무처리법 제26조(법제처 법령해석 11-0014), 형사소송법 제198조 제2항(법제처 법령해석 11-0350)은 업무 처리자의 직무상 비밀엄수의무를 포괄적으로 규정한 것임
- '비밀 또는 비공개'의 범위가 구체적인지 여부
  - 형사소송법 제198조 제2항(법제처 법령해석 11-0350)은 개괄적으로 수사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비밀로 규정하고 있을 뿐 어떤 정보가 비공개 대상인지 구체적이지 않음

관 / 련 / 사 / 례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26조에 따라 근무성적평정의 결과 비공개처분 (대법원 2006. 10. 26. 2006두11910) ⇒ 잘못된 것

교육공무원법 제13조, 제14조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교육공무원승진규정은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법률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명령이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26조에서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를 공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위 교육공무원승진규정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26조를 근거로 원고의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한 피고의 처분은 잘못된 것임

검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대통령훈령) 제7조 제3항에 의거 대외비로 분류·보관하고 있는 자료의 제1호에 의한 비공개 가능여부
(전주지법 2000. 2. 15. 99구147, 서울행정법원 2006구합23098도 같은 취지) ⇒ 공개

대통령훈령으로서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기준을 정한 행정규칙에 불과한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7조 제3항에 의거 대외비로 분류하여 보관하고 있는 자료들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학교폭력사건의 가해·피해 당사자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록의 공개를 요청하는 경우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를 근거로 회의록을 비공개 할 수 있는 지 여부(법제처 법령해석 09 - 0222, 09. 8. 21.) ⇒ 비공개

위 사항은 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자치위원회의 공정하고 소신 있는 심의, 분쟁조정 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외부의 압력이나 불필요한 분쟁 발생의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임

행정심판위원회 회의록의 공개여부
(창원지방법원 2003구합1736) ⇒ 비공개

행정심판위원회 회의록의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비공개하여야 한다는 명문의 법령규정이 있기 때문에 비공개하여야 함
행정심판법 제26조의2(발언 내용 등의 비공개) 위원회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 기타 공개할 경우 위원회의 심리·의결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은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다.
행정심판법 시행령 제23조의2(비공개정보) 법 제26조의2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의 회의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이 기재된 문서
2. 심리중에 있는 심판청구사건의 의결에 참여할 위원의 명단
3. 기타 공개할 경우 위원회의 심리·의결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사항

과세정보의 공개여부
(○○고등법원 2002누19086/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03 - 04988) ⇒ 비공개

청구인이 정보공개 요청한 청구외 ○○연맹이 청구외 국세청장에게 제출한 '과세전적부 심사청구와 관련된 자료'와 국세청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국세청장의 '과세전적부 심사결정서'는 위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과세정보라 할 것이고, 위 국세기본법의 규정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라 할 것임

나. 안보·국방·통일·외교 관련 정보(법 제9조 제1항 제2호)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비공개 이유

공개 시 국가나 사회전체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즉 정보공개로 발생할 수 있는 국가안전보장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침해를 방지하고자 함(대법원 2006. 1. 13 2004두12629)

비공개 유형

- 대북한관련 정보수집·분석자료, 전군 주요지휘관회의 회의록(국가안전보장, 국방)
- 남북회담 협상대상 수립, 통일관계 장관회의 회의록(통일)
- 비밀외교협정 관계문서, 주재국의 정치정세와 대외정책 조사보고서(외교)
- 에너지 및 지하자원의 확보를 위한 국제협력전략 수립(통상)
- 조세정책의 기획·입안서류, 재정자금 수불 및 집행계획(재정)
- 전시대비 화폐수급계획, 증권시장관련 정책(금융)
- 을지훈련과 관련된 기본계획, 자체사건계획, 상황보고서, 강평회보고서 등의 문서, 충무계획과 관련한 각종 문서, 민방위 교육훈련 실시 결과 보고서와 같은 민방위교육관련 문서, 그리고 예비군에 관한 각종 문건(군사훈련·국가재난훈련)
-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대책과 전략 등 공개될 경우 해킹·사이버 테러 등 국가행정정보의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국가안보·국방·통일·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비공개 요청을 받은 정보

위험물의 저장위치

- 위험물이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보호에 중대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물건이므로 그러한 물건의 저장위치를 공개한다는 것은 그로 인해 결국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보호가 위험에 직면할 수 있게 될 개연성을 제공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함

다.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및 공공안전 관련 정보(법 제9조 제1항 제3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비공개 이유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비공개 유형

수사관계 조회사항

- 수사에 관한 정보는 제4호에도 해당되지만 많은 경우에 이는 동시에 제3호 해당사항도 있음

건축물 등의 경비위탁내용

- 건축물의 경비에 관한 업무는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보호와 밀접한 연관이 있음

방재, 방범에 방해가 되는 정보

-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보호와 중요한 연관이 있는 방범행정, 방재행정에 장애가 되는 정보는 그로 인해 결국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보호에 중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음

연구성과 등에 관한 문서

- 국가의 연구기관 등이 행한 연구성과는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공개로 인해 사회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국민에게 오해를 주는 것을 피하기 위해 최종적인 공표까지 충분한 전문적 검토를 요하는 중간연구성과 등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하는 것이 가능(제4호, 제5호, 제7호 가능성도 검토 요함)

범죄행위, 위법행위, 부정행위 등의 통보자, 참고인(또는 피의자) 명단

- 범죄행위, 위법행위, 부정행위 등의 고발자 등의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게 되면 그 고발자 및 고발자 가족 등이 생명·신체 등에 위협을 받을 가능성이 있음

인감업무·주민등록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위·변조, 범죄목적 사용 등으로 인하여 공공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라. 재판 · 수사 등 관련 정보(법 제9조 제1항 제4호)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비공개 이유

공개될 경우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방지, 범죄의 일방예방 및 특별예방, 원활한 수사 및 교정행정의 원활성을 보호하기 위함 (대법원 2006. 1. 13. 2004두12629)

※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를 비공개로 하는 이유
- 재판을 위한 증거서류가 제3자에게 공개되는 것을 꺼려 제출되지 아니하는 일이 없어야 함
- 판결 전에 재판기록이 공개되어 제3자가 그 당부를 논할 경우 재판의 독립에 문제가 발생

※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라고 하는 형사사건정보와 형의 집행, 교정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인 형사사후정보가 그 대상이 됨

비공개 유형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

- 행정소송·헌법소원 등 재판과 관련된 소장, 답변서, 소송 진행상황 등에 관한 정보
- 진행 중인 재판과 직접·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써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

- 범죄의 예방
  - 무기·화약·마약·독극물·방사성물질 등의 제조·운반·관리체제에 관한 정보
  - 범죄목표가 되는 시설 등의 설계도·구조·경비에 관한 정보
- 수사
  - 공무원 등의 범죄사건 관련 진정·내사사건 처리 관련 사항
-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관한 사항
  - 피의자가 관련 내용을 알게 될 경우 법정에서 자신의 범죄를 부인하기 위한 방어 자료로 활용 또는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는 사항

관 / 련 / 사 / 례

① 범죄의 예방, 수사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정보
(서울행법 1999. 2. 25. 98구3692) ⇒ 비공개
② 정보원이나 정보수집 기법과 관련된 정보
(전주지법 2000. 2. 15. 99구147) ⇒ 비공개

'범죄의 예방, 수사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정보'란 당해 정보가 공개될 경우 정보원, 정보수집기법 등 정보수집 경로와 방법이 노출되어 장차 범죄관련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해지거나, 그 불법행위의 방식이 정보누출을 피하여 지능화되고 은밀해지게 되어, 향후 범죄의 예방 및 수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장애를 줄 위험성이 있고, 그 정도가 현저한 경우에 한함

교장 외 6명에 대한 각 2001년 출장명령부 및 근무상황부, 2001년 학교일지 성과급 공개여부(대전지방법원 2005구합1536) ⇒ 공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에서 비공개대상으로 규정한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는…, 이를 진행 중인 재판의 내용과 관련된 모든 정보로 확대 해석하여서는 아니 된다 할 것임에 따라, "교장 외 6명에 대한 각 2001년 출장명령부 및 근무상황부"의 공개 요청건에 대하여…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한 정보라는 이유로 비공개결정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함. '2001년 학교일지'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 소정의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음.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대하여 이미 관련 행정재판의 증거 자료로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비공개결정 처분을 한 것은 위법

마. 감사 · 감독 · 계약 · 의사결정 관련 정보 등(법 제9조 제1항 제5호)

감사 · 감독 · 검사 · 시험 · 규제 · 입찰계약 · 기술개발 · 인사관리 ·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비공개 이유

공공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다양한 업무의 집행과정에서 작성 또는 취득한 정보가 공개되면서 당해 업무에 많은 영향을 미치거나 공정하고 효율적인 업무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비공개 유형

감사 · 감독 · 검사 관련 정보

- 당해 검사 등의 목적이나 실효성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사항(검사 등의 범위·방법·시기·장소 등)
- 감사 등의 결과 및 결과 등에 따른 조치 요구사항
- 처분 또는 개선조치에 관한 사항 등
  - 불시감사의 대상·시기·방법, 감사원감사위원회 및 징계위원회의 회의록 또는 징계의결 내용(감사)
  - 직무감찰 등의 대상기관 선정·시기 등에 관한 사항, 퇴폐 유흥음식점의 단속계획, 식품접객업소 단속계획(감독)
  - 물품 또는 식품의 검사범위·방법·시기 등 관련문서(검사)

※권한행사의 기본방침 및 결과의 기본사항에 관한 정보는 공개

시험 관련 정보

- 시험의 적정한 실시 또는 판정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 국가고시, 자격시험의 위원별 채점결과 등
- 국가고시, 자격시험 출제위원 명단
- 국가고시 면접위원 명단

※직원의 임용에 관한 시험의 수험절차에 관한 정보는 공개

인허가 등의 규제 관련 정보

- 개별 인·허가 신청, 심사, 결정에 관한 사항
  - 특정 개인 식별이 가능한 문서, 법인 등의 사업계획, 생산기술 등의 사항으로서 개인 및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침해 또는 불이익 정보는 비공개
  - 무기, 화약, 마약 등의 취급, 관련시설에 관한 정보로서 공공의 안전과 질서유지에 지장을 주는 정보는 비공개
  - 지방자치단체, 특수법인 등에 대한 인·허가 문서로서 공공사업 또는 계약업무의 정당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

※개별 인허가 신청서, 법령 등의 규정에 따른 첨부서류 및 심사·결정에 관한 문서는 인허가 종료 후 공개가능

입찰 관련 정보

- 입찰예정자의 경영내용, 업무내용 또는 평가결과를 기재한 사항 등 개인 및 법인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한 정보(입찰참가 신청서, 첨부서류, 유자격자 명부 등)
- 입찰 또는 견적실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우려가 있는 정보(예,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등)
- 설계·시공자에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설계·시공상의 노하우, 건축물의 설계도 등)

예·결산, 회계 관련 문서

- 예·결산, 회계 관련 문서는 원칙적으로 공개하여야 하지만, 이로 인해 예산사무의 적정한 운영, 감사원의 적정한 업무 수행 또는 적정한 입찰 운영 등에 지장이 초래될 수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 가능함

기술개발 관련 정보

- 연구의 자유나 지적소유권을 저해하는 사항, 연구의 중간단계에 있는 사항 중 국민에게 오해를 줄 우려가 있는 정보

※국가의 연구기관, 기타 행정기관에서의 연구과제, 연구계획 및 연구성과는 원칙적으로 공개

인사 관련 정보

- 직원 등의 임면, 복무, 급여, 연수 등의 인사에 관한 개인정보, 직원의 근무성적평가에 관한 정보,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내용

※간부직원의 명부 및 인사이동상황, 합의제 행정기관의 위원명부, 각종 상담원의 명단, 서훈·포상 수상자명단 등은 공개

- 임면, 급여 등 인사운용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사항 또는 임의로 제공된 정보로서 장래 정보제공자의 협력을 얻기 곤란한 정보

※ 인사에 관한 조사결과, 통계결과보고 및 교육·연수실시 결과에 대해서는 공개

의사결정과정 및 내부검토과정 정보

- 국민의 오해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행정내부의 심의·협의·조사 등의 자료(내부에서 심의중인 안건 또는 미확인 자료, 공공기관 내부의 회의 및 의견교환의 기록 등)
- 청구인 등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정보(조사 또는 시험연구결과, 각종 개발계획 또는 검토안)
- 행정내부의 자유로운 의견교환 방해를 줄 수 있는 정보(공공기관 내부의 회의, 의견교환 기록)
- 심의회, 위원회 기타 각종 회의관련 자료
  - 법령에서 규정하는 각종 심의회, 위원회 등과 기타 각종 회의의 자료는 그것을 공개하는 경우 회의의 공정하고 중립적인 운영에 지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에 비공개 가능
- 공공기관 내부의 심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업무의 기획, 검토를 위해 수립되는 정보)
- 공개될 경우 장래의 동종의 의사형성에의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대법원 2003. 8. 22. 2001두12946)

제5호 관련 법령, 고시 등에 관한 문서

- 법령, 고시 등에는 법령, 입법예고안, 국회제출 법률안, 그 이유서, 신구조문 대조표 및 고시가 있고 공개하는 것이 원칙임
- 다만, 법령 또는 고시의 입안에 관하여 타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자와의 협의·조정에 관한 문서로서, 공개함으로써 당해 입안사무 및 장래의 동종사무의 적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염려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비공개가 가능함
- 훈령, 지침 및 법령질의 조회서도 원칙적으로 공개해야 하지만 법령 등에 관한 정보의 비공개와 유사한 사유에 의해 일정한 부분의 경우에는 비공개 가능

직원단체 등(예, 공무원노동조합)과의 교섭을 위한 정보

- 공무원단체 또는 노동조합과의 교섭에 관한 문서는 협상 당사자로서 공무원단체 등과 대등한 입장에서 교섭을 행하기 위한 것으로 비공개 가능

보조금, 융자 관련 정보

- 동종의 보조사업이 차년도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행해지는 경우에 현재 행하고 있는 보조금 교부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는 것에 의해 보조금 교부의 우선순위 등의 실체가 판명되고 장래 보조금 심사사무 등에 현저히 지장이 생길 우려가 있고, 보조사업의 계산내역이 판명되어 장래의 계약사무의 적정한 실시에 지장이 생길 우려가 있는 것은 비공개 가능

관 / 련 / 사 / 례

인사위원회 심의에 상정된 공무원과 관련한 회의자료(안건) 공개여부 (법제처 법령해석 06-0128, 06. 8. 22.) ⇒ 공개/비공개

당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및 의사결정과정에 준하는 사항에는 해당하나 이러한 정보가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안마다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함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회의록에 기재된 발언자의 인적사항 부분의 공개여부 (대법원 2003. 8. 22. 2002두12946) ⇒ 비공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회의에서의 자유롭고 활발한 심의가 보장되기 위하여는 심의회의가 종료된 이후에도 심의과정에서 누가 어떤 발언을 하였는지에 관하여는 외부에 공개되지 않도록 이를 철저히 보장하여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회의록 중 발언내용 이외에 해당 발언자의 인적사항 부분은 비공개하는 것이 타당함

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평가항목별 채점결과 공개여부 (대구지법 2006구합820) ⇒ 비공개

평가항목에 대한 채점위원별 채점결과를 공개하면 이해관계를 가진 자들로부터 시시비비에 휘말릴 수 있고 업무수행상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평가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것이 명백하여(개인에 대한 사항을 제외하고라도 배점내역의 주요부분을 통해 개인에 대한 정보를 식별할 가능성이 있음)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되므로 위 정보의 공개를 거부한 것은 적법

의사결정과정에 제공된 회의관련 자료나 의사결정과정이 기록된 회의록 등이 제5호의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에 준하는지 여부
(대법원 2003. 8. 22. 2002두12946) ⇒ 해당됨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정보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살펴보면, 동법 제9조 제1항 제5호는 비공개 대상정보를 예시적으로 열거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의사결정과정에 제공된 회의관련 자료나 의사결정과정이 기록된 회의록 등은 의사가 결정되거나 의사가 집행된 경우에는 더 이상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 그 자체라고는 할 수 없으나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비공개 대상정보에 포함될 수 있음

2002학년도부터 2005학년도까지의 대학수학능력시험 원데이터 공개여부
⇒ 연구 목적인 경우 공개(대법원 2010. 2. 25. 2007두9877)

학교식별정보를 포함하여 수능시험정보가 그대로 공개될 경우, 시험성적으로 학교 간 서열화가 이루어져 사교육에 대한 의존도가 더욱 심화되고 상위권 학교로의 선호가 집중되며, 학생들의 좌절감과 학습의욕 저하 등 부작용이 발생하여 수능시험의 목적 달성하는데 지장이 생길지도 모르나, 한편으로 학교 간 학력격차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고, 이미 과도한 입시경쟁으로 사교육에 대한 의존도가 심화되어 있는 현실에서 학교식별정보를 포함한 수능시험정보를 비공개하는 것보다 이를 연구자 등에게 공개하여 현실의 개선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정보공개법의 목적에 부합하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의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함

치과의사 국가시험문제(문제은행방식) 공개여부
(대법원 2007. 6. 15. 2006두15936) ⇒ 비공개

치과의사 국가시험에서 채택하고 있는 문제은행 출제방식이 출제의 시간·비용을 줄이면서도 양질의 문항을 확보할 수 있는 등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 점, 그 시험문제를 공개할 경우 발생하게 될 결과와 시험업무에 초래될 부작용 등을 감안하면, 위 시험의 문제지와 그 정답지를 공개하는 것은 시험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함

직접출제방식으로 출제하는 공인회계사 제2차시험 기출문제의 공개여부
(서울행정법원 2005. 12. 13. 2005구합22128) ⇒ 공개

공인회계사 제2차시험은 문제은행식 출제가 아니라 매년 새로운 출제위원들이 출제를 하는 방식의 시험이므로, 이 시험의 기출문제지는 공개된다고 하여 시험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라고 인정되지 아니하여 공개하는 것이 마땅함

바. 이름 ·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법 제9조 제1항 제6호)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비공개 이유

헌법상 인정되는 사생활의 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비공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존중 및 개인의 자신에 대한 정보통제권을 보장하는 등 정보공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제3자의 법익침해를 방지하고자 함(대법원 2006. 1. 13. 2004두12629)

해 설

-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의 예시에 해당함. 제6호에서의 개인은 제3호의 “국민”과 달리 사자(死者)가 유족 등 관계자의 권리이익을 침해하거나 감정을 상하게 할 수 있으므로 그 범위에서 원칙적으로 포함이 되는 것으로 이해됨

-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는 헌법 제17조에도 규정하고 있음. 헌법에서 말하는 사생활의 비밀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외부의 자가 자신의 사적인 생활영역을 들여다보거나 공개하는 것에 대한 방어 및 보호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음. 사생활의 자유는 개개인이 자신만의 삶을 구상하고 이를 자유로이 형성해 나감에 있어 누구로부터도 간섭이나 방해를 받지 않을 자유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됨. 헌법재판소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보호하는

것은 개인의 내밀한 내용의 비밀을 유지할 권리, 개인이 자신의 사생활의 불가침을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 개인의 양심 영역이나 성적 영역과 같은 내밀한 영역에 대한 보호, 인격적인 감정세계의 존중의 권리와 정신적인 내면생활이 침해받지 아니할 권리 등이 포함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음(헌재 2003. 10. 30. 2002헌마518)

- 이러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정보인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이외에도 개인의 신체, 사회적 지위, 가족관계, 다른 사람과의 인적 유대관계, 신분, 개인의 목소리, 초상 등에 관한 사실, 가치적 판단에 관한 정보도 제6호에 의한 정보가 될 수 있음

- 개인식별형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는 정보

비공개 유형

비공개 세부대상 정보

- 민감한 정보【개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통장계좌번호, 급여, 학력이나 직업 등 경력, 활동사항, 사상·양심·종교에 관한 정보, 건강 상담표나 검사 기록을 포함한 병원진료기록 등 개인의 건강상태 및 신체에 관한 정보, 재산상황(납세증명서), 개인에 관한 평가기록, 가족관계, 다른 사람과의 인적 유대관계, 신분, 개인의 목소리, 초상 등】
- 진정·탄원·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
  - 이 경우 민원내용 또는 처리결과의 공개만으로도 당해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도 포함되지만, 당해 민원인이 본인의 인적사항이나 민원내용 등의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외
- 특정 공무원의 집 주소·집 전화번호·학력·주민등록번호·사회경력 등 공적 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 다만, 특정 공무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
- 인사교류신청, 채용후보자 명부, 교육훈련 관리, 징계심의·의결·결정통지, 신원조사, 퇴직사실 확인 등 인사관리과정에서 생산·취득한 공무원의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공무원의 명예·신용·경제적 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다만, 특정 공무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
- 재산등록 의무자의 재산신고, 지방세 심사제도 운영, 지적정보센터 운영, 지적측량 적부심사 등 각종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의 인적사항 또는 재산상황 등의 정보

• 시험원서·답안지 등에 포함되어 있는 수험생의 성적·학력·주소 등 개인정보

공개 가능한 개인정보

•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 또는 취득한 정보(심의회 등 위원 명부, 수상자 명단)
• 공개하는 것이 공익상 필요한 정보(신체장애자 상담원 명부)
  ※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의 판단 기준(대법원 2003. 3. 11. 2001두6425)
  –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 보호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공익을 비교·형량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신중히 판단하여야 함
•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해 필요한 정보(확정판결 후 채무자의 확정일자 내역 등)
•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는 공공기관을 대신하여 직무를 수행한 것으로 각종 문서에 기록된 기관장명, 회계관직 공무원명 등을 들 수 있음
• 권한행사의 기본방침 및 결과의 기본사항에 관한 정보는 공개
• 자격증이 반드시 필요한 업종에 대한 자격증 소유 여부 등

개인정보가 기록된 정보의 일부공개 처리

• 특정 개인 여부를 식별하는 것은 통상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으로 하기 때문에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을 삭제함으로써 특정 개인이 식별되지 않고 청구의 취지가 손상되지 않을 정도로 정보의 일부를 공개할 수 있는 때에는 해당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을 삭제한 기타 정보에 대한 공개를 할 수 있음
  ※ 「死者」에 관한 개인정보는 여기에서 말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 그 자체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死者에 관한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유족들의 권리이익을 침해하거나 감정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개인에 관한 정보에 준하여 비공개로 하는 것이 타당함

공무원 개인에 관한 정보에 대해서는 그 성격에 따라 취급이 상이함

• 승인서에 기재된 장관명, 조약·협정의 조인자명, 회계기관으로서의 지출부담행위 담당관의 이름 등에 대해서는 이들 직원이 행정기관으로서 행위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말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 취급되지 않음

- 다만, 공무원에 관한 정보라도 특정 공무원의 집 주소, 집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사회경력, 근무성적, 학력, 소득 등에 관한 정보 등은 개인정보에 해당되어 비공개대상이 됨
- 허위의 개인정보
  -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정보에 대하여 성명 등이 불법적으로 사용된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은 공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비공개하여야 함. 그러나 허위여부가 다투어지고 있는 때에는 공무원 개인의 직무에 관한 정보의 경우는 제3자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당해 공무원에게 확인하여 허위라는 것이 확인되면 비공개되어야 하지만, 확인할 수 없을 경우에는 공개되어야 함

개인정보의 본인에 대한 공개

- 개인정보에 대하여 본인으로부터 공개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처리. 정보공개제도와 개인정보 보호제도는 정부활동의 감시를 목적으로 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모든 사람들이 널리 정보를 공개할 것을 요구하는 정보공개제도와 특정의 개인에게 본인 정보를 공개하는 개인정보 보호제도에는 성질상 차이가 있음. 따라서 개인정보의 본인 공개문제는 개인정보 보호제도에 의하여 처리함이 바람직함
- 개인정보의 본인에 대한 공개는 위의 비공개사항에도 불구하고 공개가 가능하나, 다른 호의 비공개사항과 충돌되는 경우에는 비공개하여야 함(공무원의 근무평정내용 등)

관 / 련 / 사 / 례

업무추진비 집행내용 등에 포함된 개인에 관한 정보
(대법원 2003. 3. 11. 2001두6425) ⇒ 비공개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 세부항목별 집행내역 및 그에 관한 증빙서류에 포함된 개인에 관한 정보는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음

보조금 지급내역 공개 여부
(대판 2009두14224) ⇒ 부분공개

고속철도역의 유치위원회에 지자체로부터 지급받은 보조금의 사용 내용에 관한 서류 일체 등의 공개를 청구한 사안에서 공개청구한 정보 중 개인의 성명은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 등의 이익이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공익보다 더 중요하여 비공개

기관업무추진비 등에 관련된 정보 중 사인인 참석자 내지 금품수령자의 인적사항
(대전고등법원 2003. 6. 26. 201누2162) ⇒ 비공개

이 사건 정보 중 비공개 되어야 할 부분은 피고가 주최한 간담회, 연찬회 등 각종 행사, 시정홍보 협조인사에 대한 선물이나 사례, 불우주민이나 이재민에 대한 격려 및 위로 등에 관한 지출 증빙으로서 사인인 참석자 내지 금품수령자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경우에 한정함

기관업무추진비 등에 관련된 정보 중 개인적 자격으로 참가한 공무원 참석자 내지 공무원 금품수령자의 인적사항의 공개여부
(대법원 2004. 8. 20. 2003두8302) ⇒ 비공개

금품수령자 정보 중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령한 정보는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인정된다 하더라도, 위 공무원의 주민등록번호와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 없이 개인적인 자격 등으로 금품을 수령한 경우의 정보는 …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함

성과급 순위명부 공개여부
(대전지방법원 2005구합1536) ⇒ 비공개

모든 교사들의 이름이 명기된 성과급 순위명부는 각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본문의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는 비공개 대상정보라 할 것임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 등에 나타난 주민번호나 금융기관의 계좌번호
(서울고법 2002. 8. 27. 2001누17274) ⇒ 비공개

주민등록번호나 은행 등 금융기관의 계좌번호는 개인의 이름과 결합되어 전자거래 등에 있어 동일인 판단 등에 관한 기본 자료로 사용되어 아무런 제한 없이 공개될 경우, 이를 부정사용하면 당해 개인의 사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있어서의 재산·신용에 대한 심각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업무추진비에 대한 집행 증빙인 정보 중 개인의 주민등록번호 및 은행 계좌번호에 관한 정보는 동법 제7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함

진정사건 기록 중 OOO에 대한 각 진술조서 공개여부
(서울행정법원 2007구합7734) ⇒ 부분공개

사건 정보 중 주민등록번호, 연령, 생년월일, 주거, 본적,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학력, 가족관계, 근무지, 주민등록증 사본, 운전면허증 사본을 제외한 나머지 정보는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정보공개법 제14조는 공개청구한 정보가 제9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을 때에는 제9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이 부분에 대한 공개를 거부한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임

사. 법인의 경영·영업비밀 정보(법 제9조 제1항 제7호)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비공개 이유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의 비밀 보호를 통한 기득권 보호와 기타 사회적인 지위가 손상되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비공개 유형

비공개 사항

- "영업상 비밀"이란 해당 정보가 영리목적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을 말함
- "정당한 이익"에 해당되어 비공개가 가능한 사항

- 법인·단체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이 보유하는 생산기술 또는 영업상의 정보
- 경영방침, 신용, 경리, 인사 등의 사업활동을 하는데 있어서의 내부관리에 속하는 사항 등
- 계약체결에 이르는 과정 또는 결과에 관한 문서로서 공개할 경우 설계·시공의 노하우 등이 공개되어 설계·시공자에게 불리한 경우
- 기타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최저임금적용 제외 인가 신청서, 차량의 세부제원, 세부도면 또는 부품의 규격 및 하중 분포별 분담하중의 산출방법 등이 포함된 형식승인 신청서 등
• 국가보조금 지원을 받는 민간단체 또는 정부가 허가한 비영리 사단법인 관련사항 중 그 단체의 자금·인사 등 내부 관리에 관한 정보
• 각종 용역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개인·법인·단체 등)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등 특정 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공개 가능한 법인 등 정보

• 사업활동의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 또는 건강보호관련 정보
  - 약해(약을 잘못 쓰거나 과용하여 받는 해), 식중독 등에 의한 위해발생을 미리 방지하거나 위해가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정보 공개
•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정보
  -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의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업자의 각종 행정처분 통지서 등은 공개
  - 관련 법령 : 식품위생법 제84조, 시행령 제58조

관 / 련 / 사 / 례

공공기관이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작성한 '구입과 지출결의서'상 계약상대방에 관한 정보 중 상호, 사업자번호, 성명, 주소
(법제처 법령해석 06-0132, 2006. 8. 22.) ⇒ 공개

상호, 사업자번호, 성명, 주소에 관한 정보는 법인 등의 영업상 유·무형의 비밀이나 노하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없어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라 보기 어렵고, 대법원도 해당 정보가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한 바 있음

자치단체장의 특수활동비 집행내역에 포함되어 있는 식당위치, 명칭과 음식요금, 면담대상자명단 등의 공개여부
(인천지법 1999. 11. 5. 99구1536) ⇒ 공개

자치단체장의 특수활동비 집행내역에 포함되어 있는 식당위치, 명칭과 음식요금, 면담대상자 명단 등에 대한 정보는 특정업소 또는 개인에 관한 정보이기는 하지만 비공개하여야 하는 "영업상의 비밀"에 속하는 정보가 아니므로 공개하여야 함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에 대한 집행증빙인 정보 중 법인 등의 은행 계좌번호에 관한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의 공개여부
(서울고법 2002. 8. 27. 2001누17274) ⇒ 공개

법인 등의 은행 계좌번호에 관한 정보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그 외의 정보는 … 기존의 정당한 이익이 현저히 침해받는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같은 법 제9조 제1항 제7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한국방송공사의 프로그램 외주제작 내역 중 외주처, 제작 내역 및 금액에 관한 정보의 공개여부
(서울행법 2007. 4. 18. 2006구합24183) ⇒ 공개

기존의 제작금액이 공개될 경우 외주제작 업체들 간의 가격담합 등으로 인하여 피고의 정당한 이익이 현저히 침해받는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는 반면, 오히려 피고가 자인하고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의 제1TV의 경우 24% 이상, 제2TV의 경우 40% 이상을 외주제작으로 편성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의적이고 방만한 예산집행의 여지를 미리 차단하고 시민들의 감시를 보장함으로써 그 집행의 합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서라도 그 집행증빙을 공개할 필요성이 크다고 할 것임

아.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 관련 정보(법 제9조 제1항 제8호)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비공개 이유

- 정보의 성격상 공개함으로써 정보를 얻은 자와 얻지 못한 자와의 사이에 불공평이 발생하고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이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

※부동산 투기·매점매석은 건전한 시장기능을 교란시켜 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행위유형의 예시에 해당함

- 제8호는 대상정보가 특정되어 있지 않고 단지 그 정보가 공개되는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이기만 하면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하므로 여기에 해당하는 정보는 별도의 이익형량 없이 비공개할 수 있음

비공개 유형

- 용지매수 계약서, 설계 단가표
- 각종 부동산 개발계획 등
- 온천원 보호지구 또는 온천공 보호구역의 지정고시 전의 관련 정보
- 물품가격 인상에 관한 정보

관 / 련 / 사 / 례

사업장 상호명 및 주소지의 공개여부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200516132) ⇒ 공개

각 사업장의 장애인고용 장려금 지급총액, 신고된 각 사업장 종업원 수, 각 사업장의 상호명과 주소지, 각 사업장의 중증장애인에 대한 고용이 있을 경우 중증장애인 수를 구분해서 표기 등 이 건 정보가 독립된 가치를 가지고 있어 법인 또는 개인사업체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고 있는 경영·영업상 비밀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고, 이 건 정보가 공개된다고 하더라도 대다수의 선량한 장애인고용 사업주에게 불이익이 발생된다거나 장애인들의 취업기회가 더욱 줄어드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여 법인 또는 개인사업체의 정당한 이익에 현저한 침해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개연성이 없으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정보를「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제7호·제8호에 해당하는 비공개 대상정보로 보아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함

도시개발구역 지정 신청서류 일체에 대한 정보의 공개여부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200103898) ⇒ 공개

청구인이 공개 청구한 이 건 도시개발구역 지정 신청서류 일체에 대한 정보는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 공정하고 투명성 있게 입안하여야 되고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공개할 수 있는 정보에 해당됨. 설사 동 정보에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정보가 있다고 하여도 이를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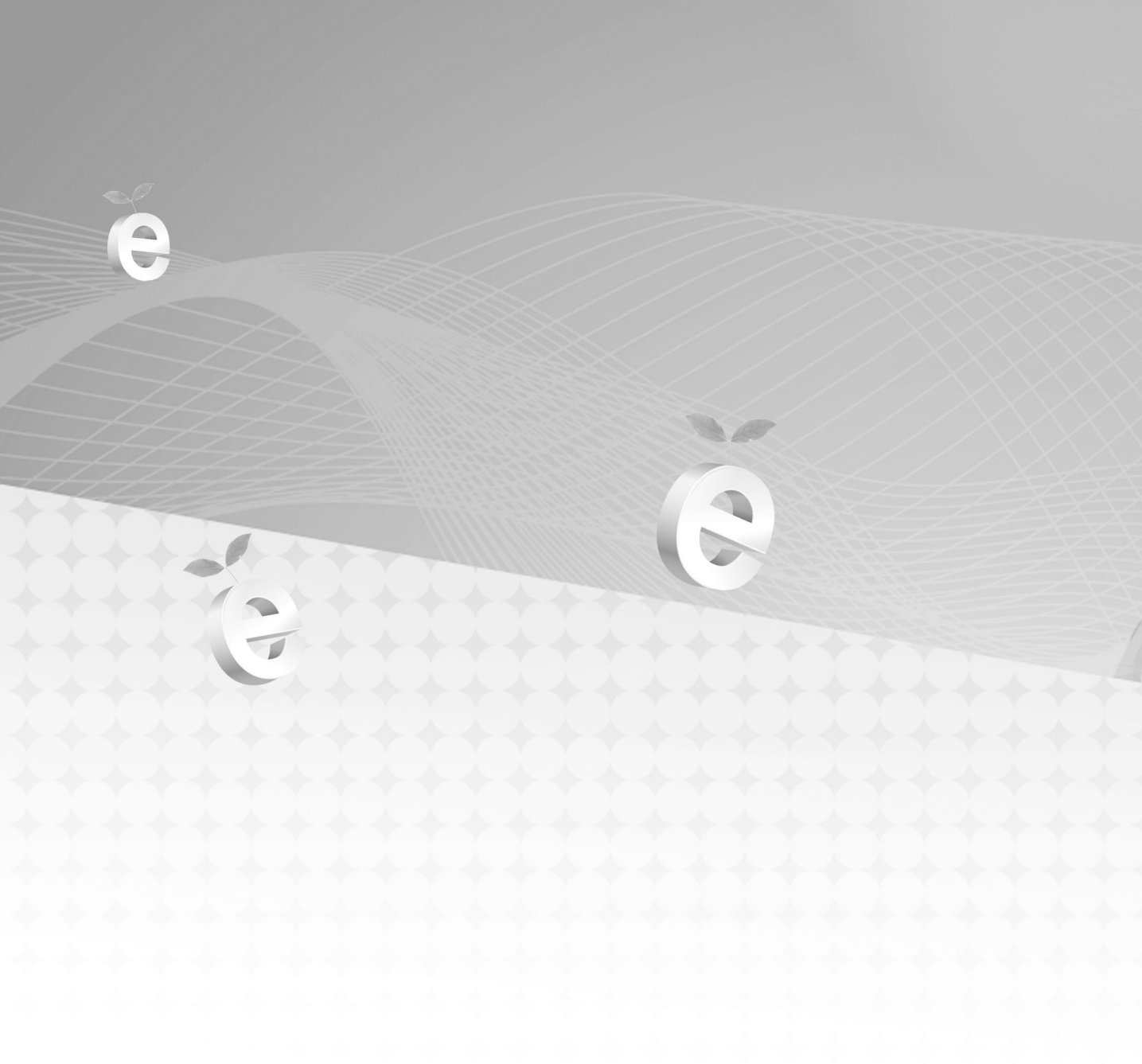

제6장
정보공개시스템 관리

제6장 정보공개시스템 관리

I 정보공개시스템 개요

1 시스템 구성 및 이용 대상기관

공공기관은 정보의 적절한 보존과 신속한 검색이 이루어지도록 정보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함(법 제6조 제2항)

정보공개시스템 목적

- 온라인 정보공개 대국민 서비스 혁신
- 업무처리의 온라인화로 행정 효율성·생산성 향상
- 국민참여 확대기반 마련으로 정책참여 활성화

정보공개시스템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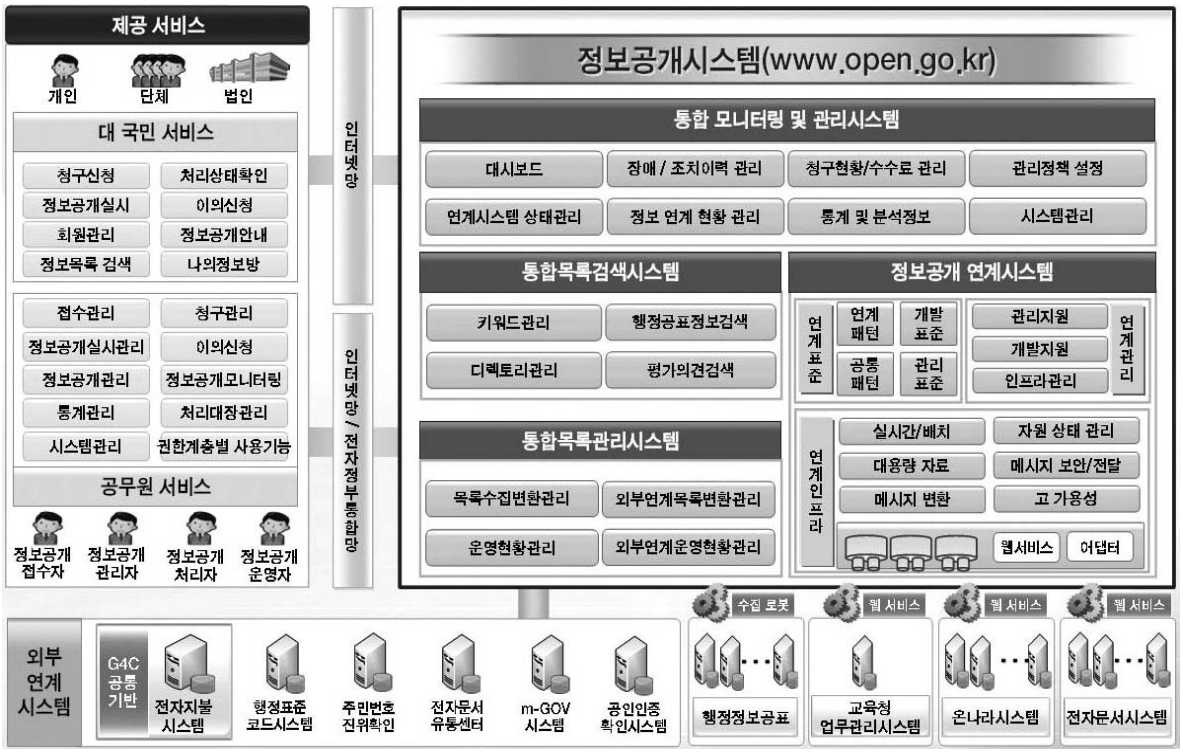

정보공개시스템 설명

- 정보공개청구시스템 : 대국민 창구를 통한 온라인 정보공개 청구서비스 제공
- 정보공개관리시스템 : 정보공개 업무처리 전 과정 전자화 및 공무원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한 다양한 통계 및 기타 부가서비스를 제공
- 통합목록검색시스템 : 기관의 정보목록, 행정정보 공표정보, 정보공개사례 정보를 통합하여 검색할 수 있는 키워드 및 디렉토리 서비스와 각종 검색 편의성을 높일 수 있는 부가서비스 제공
- 통합목록관리시스템 : 기관에서 생산 및 보유하고 있는 정보목록을 내/외부, 직접/경유 연계방식을 통해 수집하여 통합적으로 정보목록을 관리

정보공개시스템이용 대상기관

- 중앙행정기관 및 소속기관, 시도·시군구 지방자치단체 및 소속기관, 시도교육청 및 산하 교육지원청,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공단, 조례로 정한 출자·출연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관리되고 있는 공공기관 등 정보공개대상 기관
- 정보공개시스템 업무처리 문의(헬프데스크) : 02-2100-4162~3

2 업무처리 메뉴구성

정보공개시스템 공무원창구는 청구접수부터 공개결정, 공개실시, 각종 통계제공 등 정보공개 청구처리 업무 정보화를 통해 업무효율성과 생산성을 극대화하여 투명하고 일원화된 정보공개 행정 서비스를 제공
- 청구관리, 이의신청관리, 통계, 사랑방, 정보방, Q&A로 구성

메뉴구성 개요(총괄)

3 정보공개 담당자별 역할

정보공개시스템 사용자는 정보공개접수자 / 관리자 / 담당자 / 처리자 / 시스템관리자로 구성되어 있음

담당자별 세부역할

담 당 자	역 할	주요 업무
정보공개 접수자	– 접수창구에서 청구인의 정보공개 청구 및 이의신청 접수	– 정보공개 청구 등록/관리 – 이의신청 등록/관리 – 청구인 요청에 따른 처리현황 정보조회
정보공개 관리자	– 기관별 정보공개업무 총괄담당자 – 기관별 정보공개업무 처리현황 관리	– 타기관 이송, 이송불가처리, 처리부서지정, 민원이첩 처리업무 – 정보공개/이의신청처리대장, 사용자정보 관리
정보공개 담당자	– 부서별 정보공개업무 담당자 – 부서의 정보공개 업무 처리현황 관리	– 정보공개처리자 지정 – 부서의 정보공개 업무 및 이의신청현황 관리
정보공개 처리자	– 실·과·부서별 정보공개 처리 담당자 – 정보공개 심사, 결정, 통지 업무 수행	– 정보공개결정, 결정내용 결재, 결정통지 – 이의신청결정, 결정내용 결재, 결정통지
시스템운영자/ 시스템관리자	– 온라인 정보공개서비스 총괄 관리자 – 정보공개 전반에 대한 관리업무 수행 (행정안전부)	– 접수처 등록·삭제 관리 업무 – 기관 정보공개관리자 등록 – 전 기관의 정보공개 업무 처리현황 관리 ·지원 등

각 단계별 처리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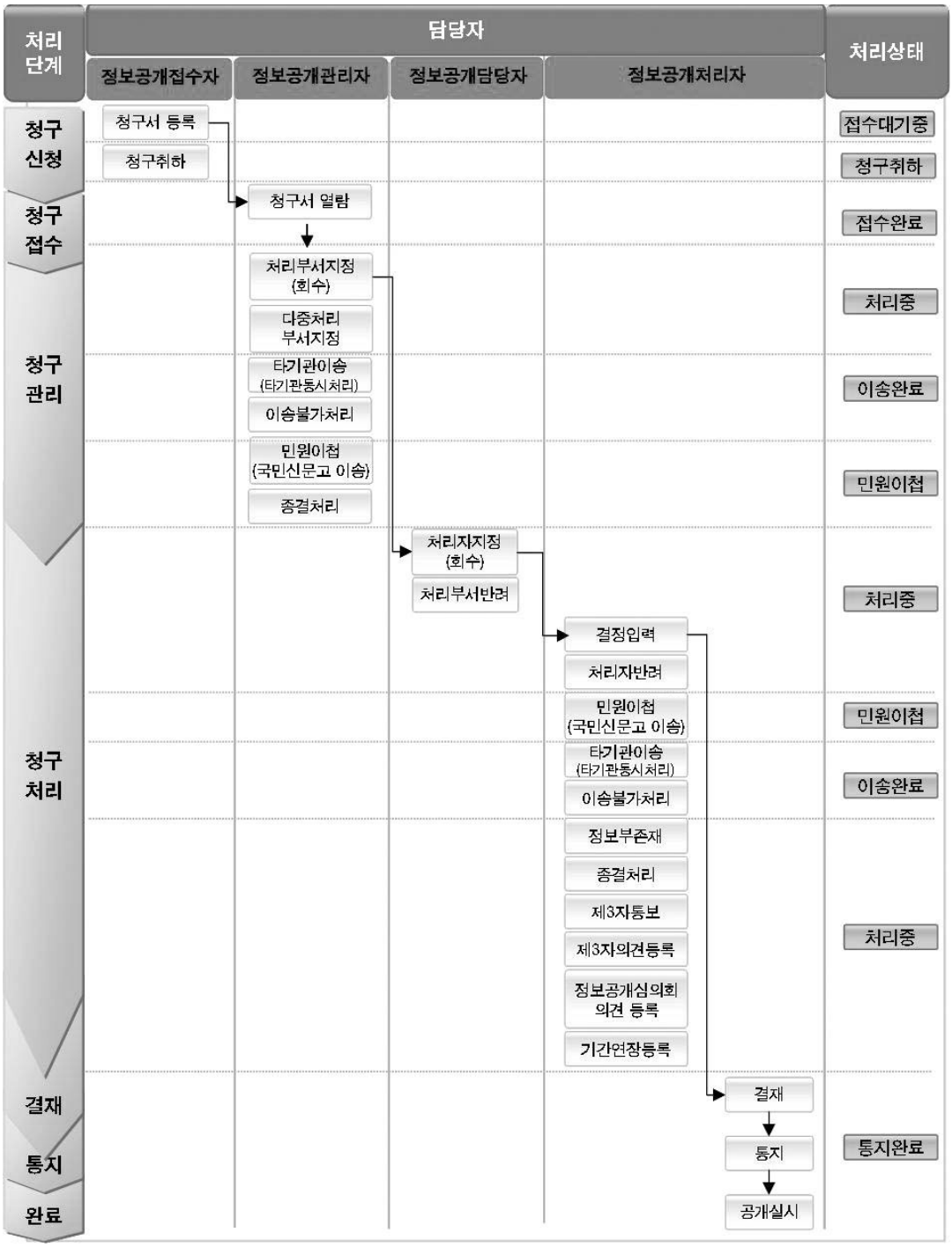
처리 단계
담당자
처리상태
정보공개접수자
정보공개관리자
정보공개담당자
정보공개처리자
청구 신청
청구 접수
청구 관리
청구 처리
결재
통지
완료
청구서 등록
청구취하
청구서 열람
처리부서지정 (회수)
다중처리 부서지정
타기관이송 (타기관동시처리)
이송불가처리
민원이첩 (국민신문고 이송)
종결처리
처리자지정 (회수)
처리부서반려
결정입력
처리자반려
민원이첩 (국민신문고 이송)
타기관이송 (타기관동시처리)
이송불가처리
정보부존재
종결처리
제3자통보
제3자의견등록
정보공개심의회 의견 등록
기간연장등록
결재
통지
공개실시
접수대기중
청구취하
접수완료
처리중
이송완료
민원이첩
처리중
민원이첩
이송완료
처리중
통지완료

4 정보공개시스템 접속

공무원 및 공공기관 담당자가 정보공개시스템에 접속하여 사용자 등록 및 정보공개 업무처리 전 과정을 수행

초기 화면

이용절차

1) 인증서 로그인(인터넷망)
   - 행정전자서명(GPKI), 교과부 인증서(EPKI), 공인인증서(NPKI) 모두 가능함
     ※ 공무원은 ID, PASSWD로 이용 가능
2) 사용자 신청 및 인증서 등록
   - 신규 사용자인 경우에는 사용자 신청후 기관 관리자로부터 승인을 받고, 인증서 등록 후 사용
     ※ 사전에 '접수처 등록'이 되어 있어야 사용자 신청이 가능
     ※ 인증서 로그인 프로그램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을 경우에는 수동설치

5 사용자신청 승인·권한부여

기관의 정보공개 담당자(관리자, 접수자, 담당자, 처리자) 변경시 사용자 신청, 권한 승인·수정 등 처리 업무

사용자신청 및 등록승인·권한 부여 화면

< 화면1 >

< 화면2 >

- 담 당 자 : 정보공개관리자
- 메　　뉴 : 시스템관리 > 사용자정보관리
- 처리절차

1) 사용자 신청(화면1)
   – '정보공개시스템 공무원창구' 초기 화면의 '사용자등록' 메뉴에서 입력·신청
2) 사용자 등록승인 및 권한부여(화면2)
   – 행정안전부 : 시스템운영자/시스템관리자, 정보공개관리자(각 기관)
   – 정보공개 관리자(각 기관) : 정보공개 관리자/접수자/담당자/처리자

사용자 정보 관리 : 업무변경, 인사이동시 정보 현행화

1) 전자문서시스템 연계 ID : 자동결재 사용시 필요(행정기관만 해당)
2) 전화번호(사무실) : 청구인에게 안내되는 '정보공개 결정통지서' 포함
3) 휴대전화, 전자우편 : 담당 공무원에게 이메일, SMS 발송시 필요

- 접수후 2일 이상 처리부서 미지정시(기관 관리자), 담당 공무원(처리자) 지정시, 이의신청 접수시(담당자), 청구/이의신청 미처리 3일전(처리자)

4) 알림메일 수신여부, SMS 수신여부 : '예'로 선택

5) 기관관리자/접수자/담당자/처리자 업무 변경·타기관 전출시 '미사용'으로 변경

※ 일반공무원은 GPKI(행정안전부 행정전자서명센터에서 발급하는 인증서), 교육공무원은 EPKI(교육과학기술부에서 발급하는 인증서) 등록 후 사용, 공사·공단 등 공공기관 담당자는 NPKI(은행, 증권회사 등 민간발급 공인인증서) 등록 후 사용

Ⅱ 정보공개 청구관리

1 정보공개 청구서 등록(오프라인)

직접방문, 우편 등으로 청구된 내용을 정보공개시스템에 등록하여 업무처리

- 청구서등록 업무화면

- 담 당 자 : 정보공개접수자
- 메　　뉴 : 청구관리 > 청구서 등록
- 처리절차

1) 청구내용 입력
   - 청구제목 및 내용 등을 입력하고, 청구서 원본을 스캔하여 파일로 첨부
2) 청구인 정보 입력
   - 개인(내국인), 개인(외국인), 법인 및 단체로 구분
   - 실명확인 과정을 거치어 입력(공공 I-PIN 적용예정, 2011. 11월말)
   -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가 있어야 가능

2 정보공개 청구접수

기관에 청구된 모든 청구(온라인, 오프라인)를 확인하여 접수하는 업무

청구서 조회 화면

- 담 당 자 : 정보공개관리자
- 메　　뉴 : 청구관리 > 청구서전체현황
- 처리절차

1) 청구서 접수
   - 정보공개관리자만이 청구서전체현황 메뉴를 접근할 수 있음
   - 처리상태가 '접수대기중'인 것을 확인한 후 제목을 클릭하면, 청구내용을 상세조회할 수 있으며, 처리상태는 접수완료로 변경됨
     ※ '접수번호' : 처리내용을 확인하고 추적하기 위하여 부여된 번호

2) 청구취하 등록
   - 직접방문·우편·FAX 청구 : 정보공개접수자
   - 정보공개시스템 청구 : 청구인

3 처리부서지정

접수 완료된 청구건을 관리자가 처리할 부서를 지정, 두개 이상의 처리 부서를 지정해야 하는 경우, '다중처리부서지정(영 제10조)'를 이용하여 처리

- (다중처리)부서지정 업무화면

< 화면1 >

< 화면2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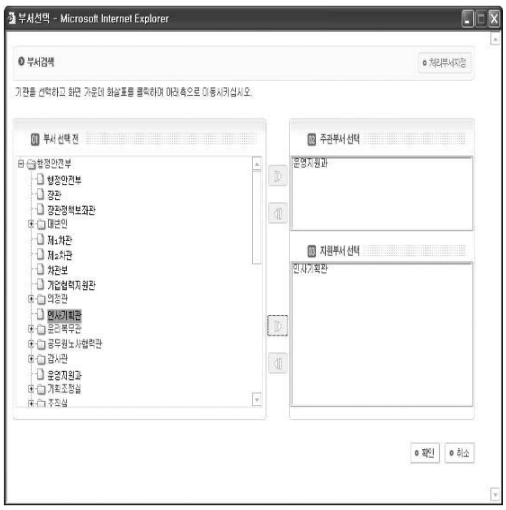

<그림1> 다중부서지정 처리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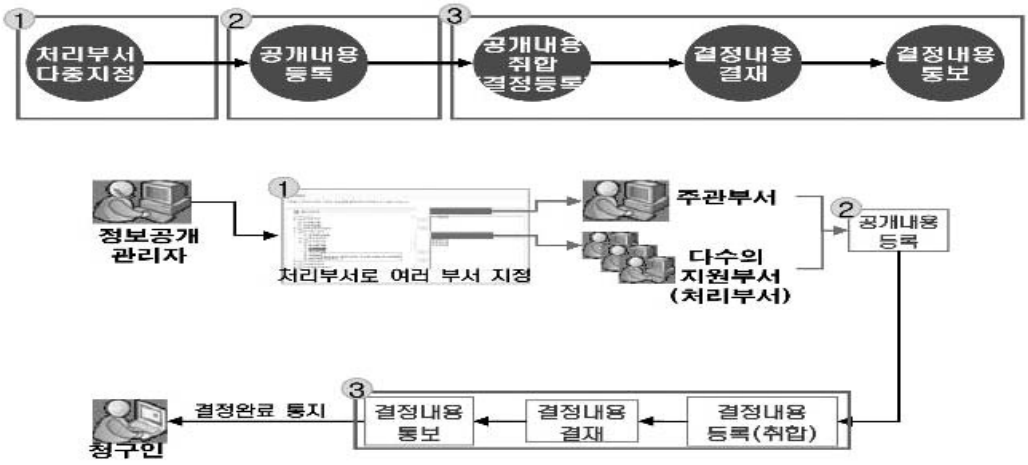

- 담당자 : 정보공개관리자
- 메 뉴 : 청구관리 > 청구서 전체현황 > 청구제목 선택(상세조회) > 부서지정(다중부서 지정)

처리절차

1) 1개 처리부서 지정 : 일반적인 처리부서 지정(화면1)
2) 다중부서지정(화면2, 그림1)
   ① 동일한 내용에 대한 청구 정보를 여러 부서에서 취합 처리해야 하는 경우
      - 하나의 주관부서와 여러개의 지원부서 지정후 처리
      - 공개내용은 지원부서에서 입력, 주관부서는 취합하여 결정통지 처리
   ② 하나의 청구서에 내용이 다른 여러건을 청구한 경우
      - 청구 내용의 비중이 높은 부서를 주관부서로 나머지 부서를 지원부서로 지정
      - 각 청구 내용에 대해 공개여부 결정 및 내용 입력은 지원부서, 주관부서는 취합하여 결정통지 처리
      ※ 청구 정보가 다수기관에 해당되는 경우, 청구인에게 정보소재를 안내하여 개별 기관으로 청구하도록 안내

4 타기관 이송

청구인이 다른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청구하였을 경우, 해당 기관으로 청구건을 이송 처리하는 업무 (법 제11조 제4항, 영 제10조)

타기관 이송처리 업무화면

< 화면1 >

< 화면2 >

담당자 : 정보공개관리자/정보공개처리자

메 뉴 : 청구관리 > 부서청구서현황 > 청구제목 선택(상세조회) > 타기관이송(타기관동시처리, 이송불가처리)

처리절차

1) 타 기관 이송(정보공개시스템 이용 기관간 이송)
   - 이송 대상 기관을 선택하여 청구서를 이송(화면1)
   - 접수기관과 이송 받은 기관에서 동시에 정보공개를 처리해야 하는 경우 '타기관 동시처리' 박스 체크후 해당 기관으로 이송(화면2)
     ※ 정보공개시스템 공공기관 이용확대에 따라 시스템으로 이송 가능한 공공기관은 '타 기관 이송'으로 처리
2) 이송불가처리(정보공개시스템 미 이용 기관으로 이송)
   - 시스템으로 이송이 불가한 경우(공공기관 등)에 '이송불가처리'를 선택
   - 이송불가처리 사유를 시스템에 입력하고, 우편·FAX 등을 통해 문서로서 이송처리(청구인에게는 문서로서 이송사실 통보)
     ※ 이송불가처리사유 작성예시 : "귀하의 청구건은 OOO기관 소관업무로서 해당기관으로 이송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5 민원이첩

청구인이 정보공개법 제2조에 해당하는 정보의 공개청구가 아닌 진정·질의·제안 등에 대해서는 일반 민원으로 전환하여 처리하는 업무 (영 제6조 제3항, 제4항)

민원이첩처리 업무화면

< 화면1 >

< 화면2 >

< 화면3 >

< 화면4 >

- **담당자 : 정보공개관리자, 정보공개처리자**
- **메 뉴 : 청구관리 > 부서청구서현황 > 청구제목 선택(상세조회) > '민원 이첩'**
- **처리절차**

1) 국민신문고 시스템 민원이첩 처리가능 기관
   - 행정기관 : 중앙, 지지체, 교육청 및 소속기관 등 전 기관
   - 공공기관 : 8개 기관(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전력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철도공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금융감독원)
     ※ 국·공립대학교, 기타 공공기관은 국민신문고시스템으로 이송하지 않고 기존 처리 절차에 따라 정보공개시스템에서 '민원이첩'(정보공개 청구는 종결됨)한 후 문서로서 회신

2) 민원이첩 세부절차
   - '민원이첩' 선택(화면1) → '사유입력' → 국민신문고시스템(자동이송, 화면2) → 민원답변 작성 및 내부결재 → 국민신문고시스템 입력 → 처리결과 확인(청구인, 공무원 : 정보공개시스템(화면3) 또는 국민신문고시스템(화면4))
   - 국민신문고시스템의 처리부서 및 처리자 지정(민원접수) : '민원이첩' 처리자가 소속된 부서로 자동 접수됨(국민신문고시스템)

   예시) '행정안전부 운영지원과' 소속의 '홍길동'이 민원이첩하면, 국민신문고시스템의 '행정안전부 운영지원과'로 분류되어 접수됨 → 운영지원과의 민원담당자가 '홍길동' 지정후 민원처리
   - 국민신문고시스템 처리기간 : 7일

> ▶ '민원이첨사유' 입력후 민원이첩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국민신문고시스템으로 이송됨 (5분 단위로 자동 전송)
> ▶ 국민신문고시스템으로 이송되면 '민원이첩 취소'를 할 수 없으므로 신중하게 처리

3) 민원이첩 회신방법
   - 정보공개 청구방법에 따라 민원이첩 처리결과를 회신하되, 반드시 '내부 결재'후 회신
     ① (청구방법) 정보공개시스템 청구(정보통신망) : 회신 내용을 내부 결재후 국민신문고시스템 입력으로 갈음(문서회신 필요 없음). 청구인은 온라인으로 조회(정보공개시스템, 국민신문고시스템)
     ② (청구방법)직접방문 · 우편 · FAX 청구(오프라인) : 회신 내용을 내부 결재후 국민신문고시스템 입력, 문서로 별도 회신

6 종결처리

청구인이 동일한 내용을 정당한 사유없이 2회 이상 반복하여 청구하는 경우 종결처리 하는 업무 (영 제6조 제5항)

종결처리 업무화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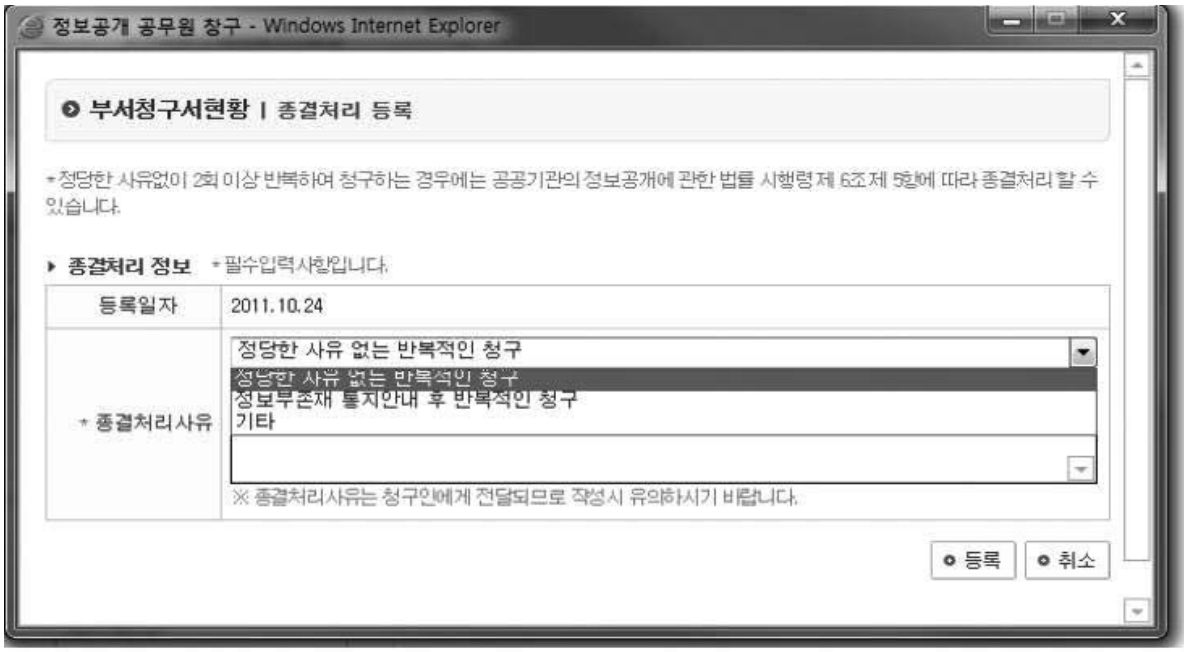

- 담당자 : 정보공개관리자/정보공개처리자
- 메 뉴 : 청구관리 > 부서청구서현황 > 청구제목 선택(상세조회) > 종결처리
- 처리절차

1) 반복 청구한 정보공개 청구는 자체 종결 처리
   - 국민신문고시스템으로 이송되지 않고 기존 처리절차에 따라 종결
2) 종결처리 대상 정보공개 청구
   -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정보공개 결정의 통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정보의 공개청구를 다시 한 경우(영 제6조 제5항 제1호)
   - 정보부존재 통지를 받은 후에 다시 같은 청구를 한 경우(영 제6조 제5항 제2호)
3) 종결처리 사유입력 : 종결처리 사유는 청구인에게 전달되므로, 구체적으로 작성

7 처리자 지정

부서의 정보공개담당자가 청구건을 처리할 처리자를 지정하는 업무

처리자지정 업무화면

- 담당자 : 정보공개담당자
- 메 뉴 : 청구관리 > 부서청구서현황 > 청구제목 선택(상세조회) > 처리자지정
- 처리절차

1) 부서에 등록된 정보공개처리자중 업무 담당자를 지정
2) 부서내의 처리자가 목록에 나타나지 않으면 사용자 등록이 안된 상태이므로 사용자 신청 후 처리자 지정

Ⅲ 정보공개 처리

1 정보공개(부분공개) 결정

청구한 정보의 내용에 따라 공개, 부분공개를 결정하여 입력(법 제11조, 제14조)

정보공개처리 업무화면

- 담당자 : 정보공개처리자
- 메 뉴 : 청구관리 > 부서청구서현황 > 청구제목 선택(상세조회) > '결정'
- 처리절차

1) 정보공개(부분공개) 입력
   - 정보공개결정에서 '공개', '부분공개'를 선택한 후 공개내용을 입력
   - 공개대상 자료가 있으면 파일로 첨부(5개 이내, 10MB 정도)
   - 공개정보는 읽기 전용 파일인 'CSD' 파일로 자동 변환되어 제공됨
     ※ 2012년부터는 PDF 파일로 제공 예정

2) 수수료 입력
   - 정보공개 수수료가 있을 경우 납부하도록 수수료를 명시하고, 오프라인 청구건에 대한 수수료를 은행계좌로 받을 경우에는 계좌번호를 결정통지서에 표기하여 안내
     ※ 은행 계좌번호를 '결정통지서' 입력시 표기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수수료납부 계좌를 확인 요청하는 경우가 많음

2 정보 비공개 결정

청구한 정보가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되는지 판단하여 비공개 결정 입력 (법 제9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

- 정보비공개처리 업무화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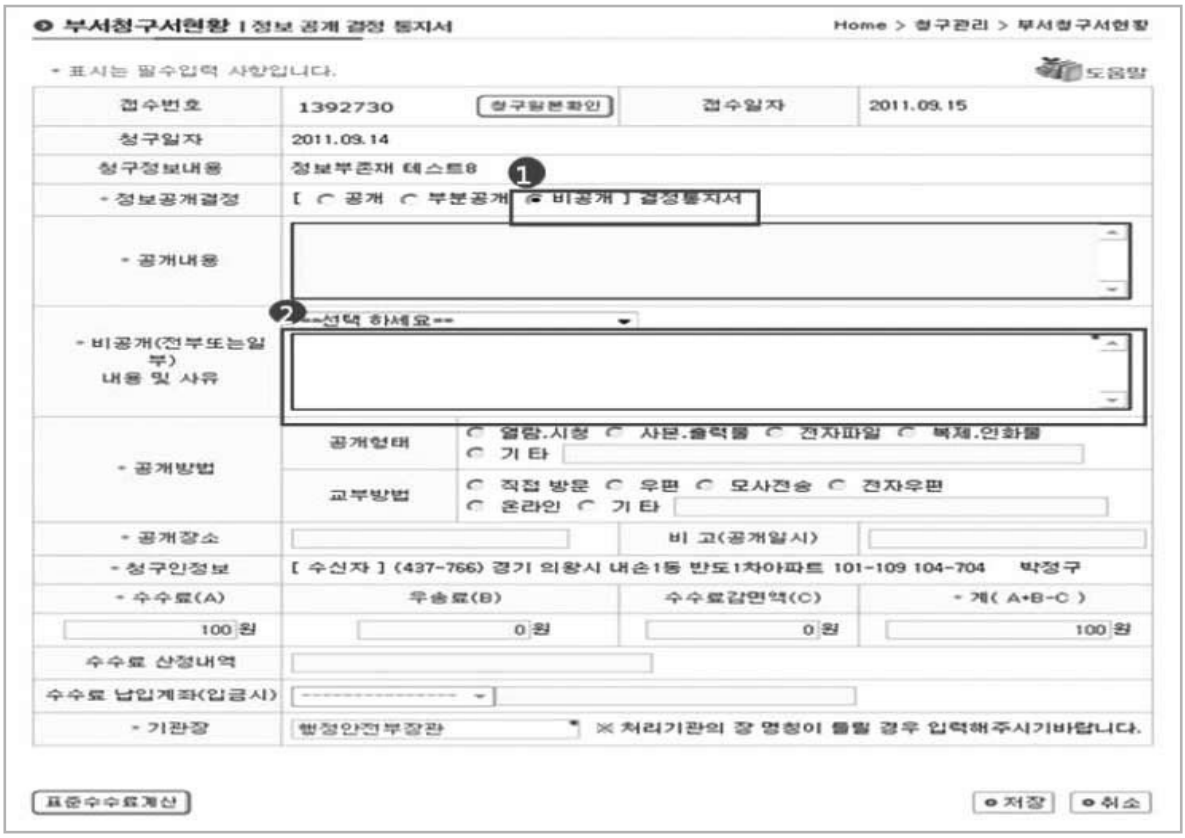

- 담당자 : 정보공개처리자
- 메 뉴 : 청구관리 > 부서청구서현황 > 청구제목 선택(상세조회) > '결정'
- 처리절차

1) 정보공개(비공개) 입력
   - 정보공개결정에서 '비공개'를 선택한 후 법 제9조 제1항 각 호의 비공개 근거를 선택
     ※ 법 제9조 제1항 각 호외에는 비공개근거 사유가 될 수 없음
2) 비공개 사유는 비공개결정 예시문을 참조하여 구체적으로 기재

3 즉시처리 가능한 정보의 공개

공개여부를 별도로 판단할 필요가 없어 청구인에게 즉시 정보를 공개하는 업무 (법 제16조)

● 즉시공개서 처리화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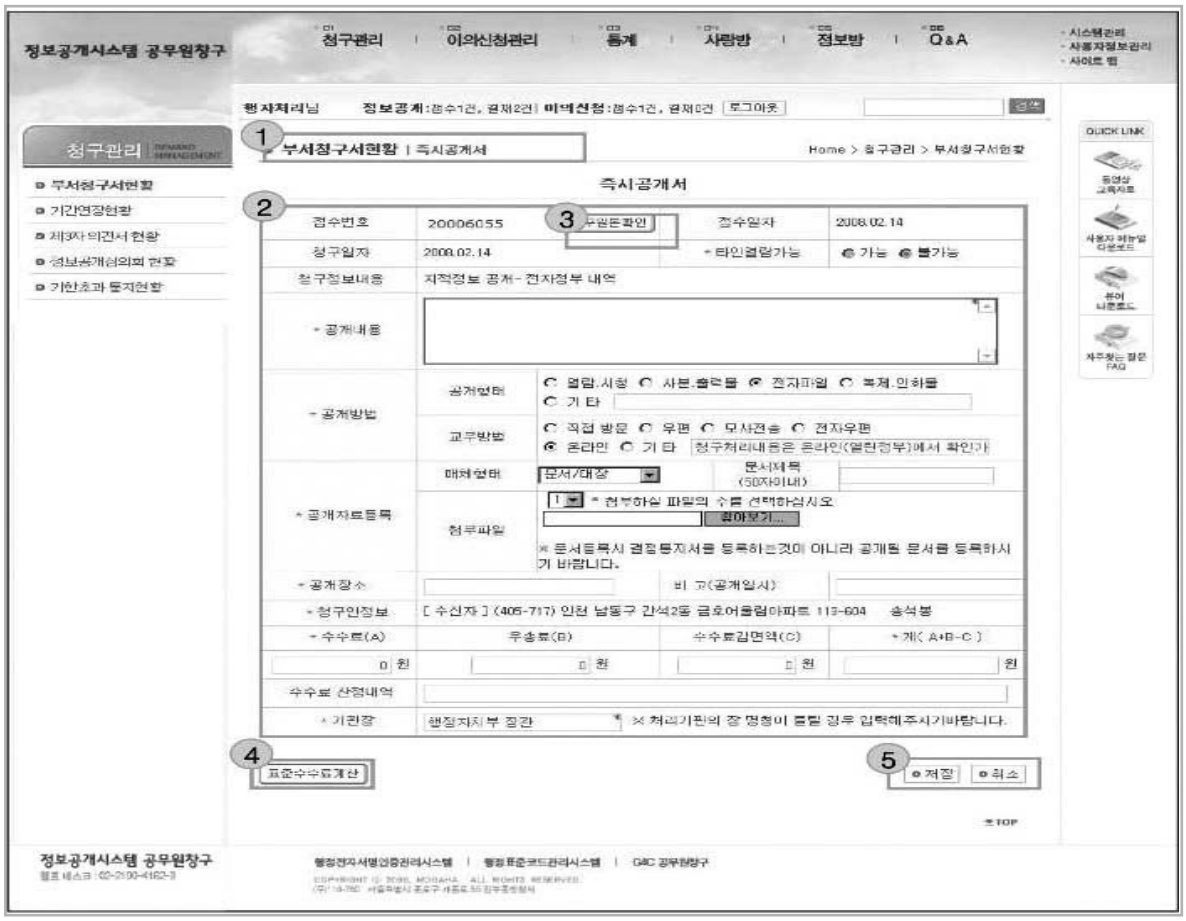

● 담당자 : 정보공개처리자

● 메 뉴 : 청구관리 > 부서청구서현황 > 청구제목 선택(상세조회) > '즉시공개' 선택

● 처리절차

1) 즉시공개서 등록[저장] → [통지] 버튼을 눌러야 결정통지 완료
   – 기 공개되어 있는 정보의 구체적인 위치 및 책자소재 등을 안내
2) 즉시공개 세부기준은 「즉시처리가 가능한 정보(법 제16조)」 참조

4 정보부존재 처리

청구인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은 정보를 청구한 경우 처리하는 업무 (영 제6조 제4항)

정보부존재 처리 업무화면

- 담당자 : 정보공개처리자
- 메　뉴 : 청구관리 > 부서청구서현황 > 청구제목 선택(상세조회) > '정보 부존재' 선택
- 처리절차

1) 정보부존재 통지내용 입력
   - 청구 정보가 해당기관에서 보유·관리하고 있는 않은 정보인 경우 '정보 부존재 사유'를 구체적으로 입력
   - 정보부존재 사유 선택 : 예시) '보존기간 경과 폐기', '작성·취득하지 않은 정보' 등
2) 정보부존재 결재 및 통지
   - 반드시 결재과정을 거친 후 통지, 결재(자동/수동결재) 및 통지방법은 기존과 동일

기　타

1) '정보부존재' 통지는 '정보비공개결정통지'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정보공개 불복절차중 '이의신청'은 제외되며,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은 가능
2) '정보비공개결정통지' 사유에서는 '정보부존재'가 제외됨
3) '정보부존재' 처리건수는 청구처리현황, 비공개결정통지건수에서 제외되며, '기타처리현황(정보부존재)' 통계에 포함됨
   ※ 통지내용에 '정보부존재통지'는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없음을 안내

5 정보공개 결재 및 통지

공개·비공개 결정 입력후 전자문서시스템과 연계하여 결재(자동/수동)를 처리하는 업무

정보공개결재 처리화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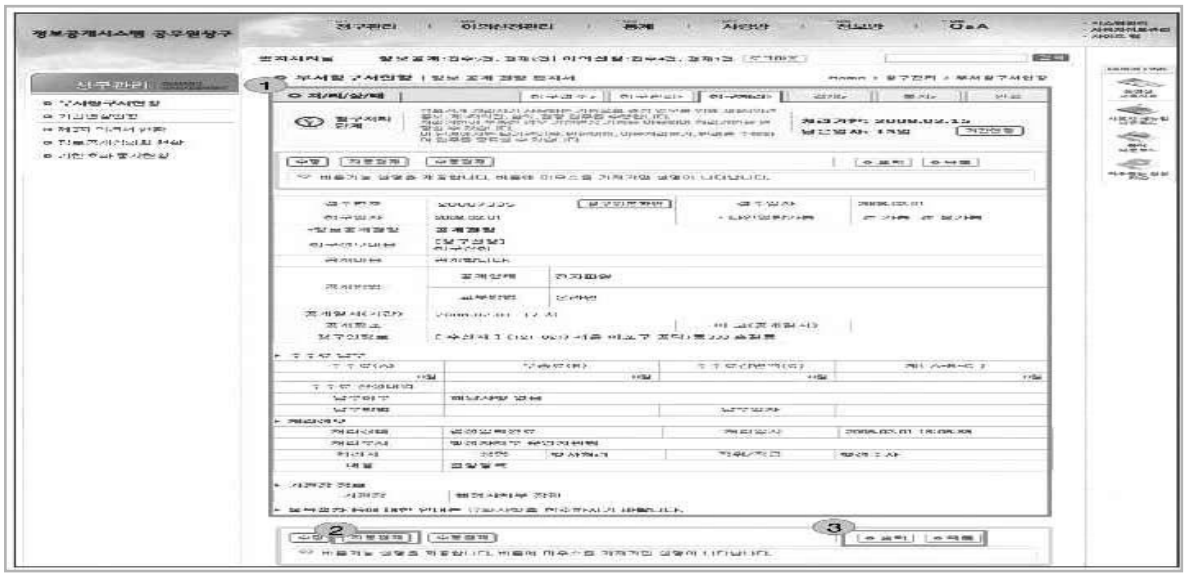

정보공개통지 처리화면

- **담 당 자 : 정보공개처리자**
- **메　　뉴 : 청구관리 > 부서청구서현황 > 청구제목 선택(상세조회)**
- **처리절차**

1) 자동결재
   - 부서청구서현황에서 '공개/비공개결정통지' 입력 완료후 '자동결재' 선택
   - '자동결재' 선택시 처리자가 작성한 문서(결정통지서, 정보공개심의회, 3자 의견서, 공개문서 첨부파일)가 처리자의 소속기관 전자문서시스템으로 전송됨
   - 처리자는 「연계기안함(예시:온-나라시스템)」으로 전송된 붙임문서를 이용하여 기안문을 작성하고 내부 결재
     ※ 직접방문, 우편 등으로 청구된 경우 정보공개시스템의 결정 통지와 병행하여 정보(공개/부분공개/비공개)결정통지서를 문서로서 통지(내부 결재시 시행문서로 기안 후 결재)
   - 자동결재 완료시 전자문서시스템은 결재정보(결재일자, 기안자, 검토자, 결재자, 문서번호)를 정보공개시스템으로 전송하며, 수신된 결재정보를 확인후 '통지' 처리

2) 수동결재
   - 전자문서시스템과 연계가 안된 기관은 수동결재로 처리
   - 전자문서시스템으로 내부결재를 받은 후 결재 정보(기안자, 결재자, 문서번호)를 입력후 '통지' 처리

3) 정보공개 통지
   - 결재 완료 후 [통지] 버튼을 클릭해야 결정통지 처리가 완료
   - 청구인이 청구서 작성시 선택했던 안내메시지 수령방법(핸드폰, E-mail, 전체)에 따라 결정통지 안내메시지가 발송됨
     ※ 정보공개시스템으로 청구한 정보공개는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한 정보공개결정통지로 갈음이 가능(직인 생략,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안내문 참조)하며, 공개방법을 별도로 요청하는 경우 요구방법에 따름
     ※ 정보공개결정통지서를 문서에 첨부하여 통보하는 경우 정보공개결정통지서의 직인은 생략 가능하나, 정보공개결정통지서만 우편으로 회신할 경우에는 직인을 날인후 통보

4) 기　타
   - 결재 이후에는 결정통지서 수정이 불가능하므로 공개정보, 수수료 등 수정사항이 없도록 확인 후 처리
   - 자동결재버튼을 클릭하면 결재중으로 나타나며, 정상적으로 결재가 안될 경우, 별도 조치 없이 수동결재로 처리 할 수 있음
     ※ 결정통지 안내서비스 : 행정기관의 정보공개 결정통지 사실을 청구인에게 SMS, 전자우편으로 알려주는 서비스로 정보공개결정통지서 송부와는 관계 없음(청구인이

결정통지안내 수신방법을 거부로 체크시 SMS, 이메일 통보가 되지 않음)

※ 처리상황 안내서비스 : 정보공개 처리현황을 민원인에게 이메일을 통해 안내해 주는 부가 서비스(대상업무 : 접수알림, 민원이첩, 종결처리, 이송불가처리, 타기관 이송, 청구취하, 정보공개 실시정지·해제)

6 제3자 의견 등록

제3자에게 받은 의견을 등록하여 관리하는 업무 (법 제11조, 영 제8조)

제3자 통보 및 의견등록화면

< 화면1 >

< 화면2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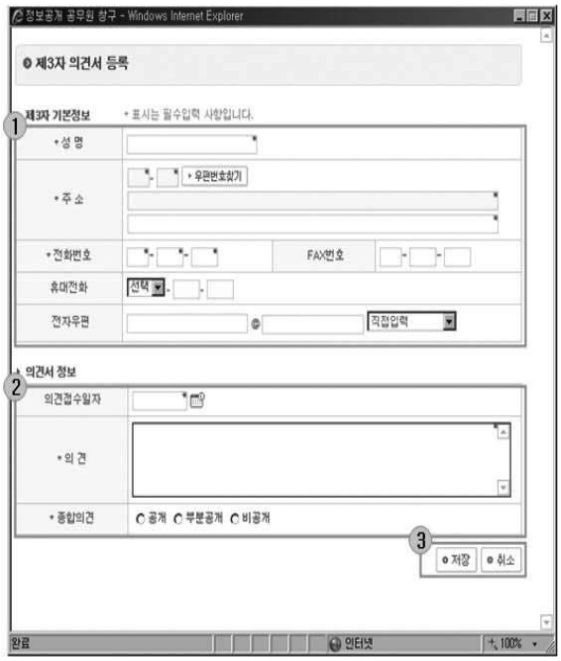

- 담당자 : 정보공개처리자
- 메 뉴 : 청구관리 > 부서청구서현황 > 청구제목 선택(상세조회) > '제3자 의견'
- 처리절차

1) 제3자 의견청취
   - 문서로서 통지하여야 하며, 제3자가 원하는 경우 구술로 할 수 있으나 담당공무원이 기록하고 본인의 확인을 받아야 함(화면1)

2) 제3자 의견 등록
   - 결정통지서 입력 이전에 등록, 3자 의견은 여러건 등록·수정·삭제 가능(화면2)
     ※ 자동결재시 첨부자료에 자동적으로 포함

7 정보공개심의회 의견 등록

이의신청 또는 정보공개 결정이 곤란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한 경우 심의 내용을 등록·관리하는 업무(법 제12조, 영 제11조)

● 정보공개심의회 심의내용 등록 처리화면

● 담당자 : 정보공개처리자

● 메 뉴 : 청구관리 > 부서청구서현황 > 청구제목 선택(상세조회) > '심의' 선택

● 처리절차

1) 결정통지서 입력전에 등록 가능

※ 자동결재시 첨부자료에 자동적으로 포함

2) 정보공개심의회 운영·심의 기준 등 세부내용은 운영매뉴얼 참조

8 정보공개 실시 정지

제3자의 비공개 의견에도 불구하고 기관에서 공개결정시, 제3자로부터 행정심판/소송이 제기되어 일시적으로 공개된 정보를 청구인이 열람 할 수 없도록 정보공개를 정지하는 업무

- 정보공개 실시정지 처리화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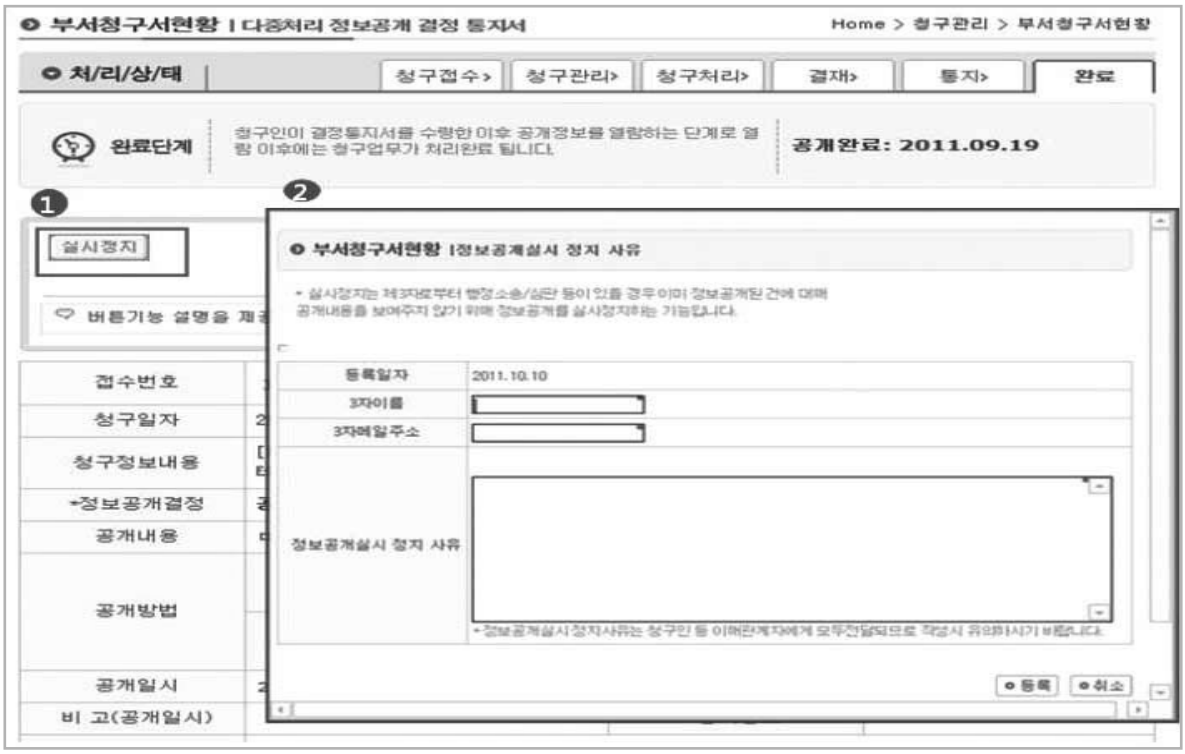

- 담당자 : 정보공개처리자
- 메 뉴 : 청구관리 > 부서청구서현황 > 청구제목 선택(상세조회) > '실시정지'
- 처리절차

1) 실시정지
   - 제3자가 행정심판/소송을 제기하면서 정보공개 정지를 요청하여 받아 들여 졌을 경우에 '실시정지' 버튼을 클릭하면 청구인이 열람할 수 없음
     ※ 제3자의 비공개 의견에도 불구하고 정보공개시 공개일시를 30일이후로 설정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해야 함
2) 행정심판 결과 등에 따라 '공개실시' 버튼을 클릭하면 열람이 가능함

9 기간연장 처리

부득이한 사유로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 공개여부 결정기간을 연장 처리하는 업무 (법 제11조, 제18조)

기간연장 처리화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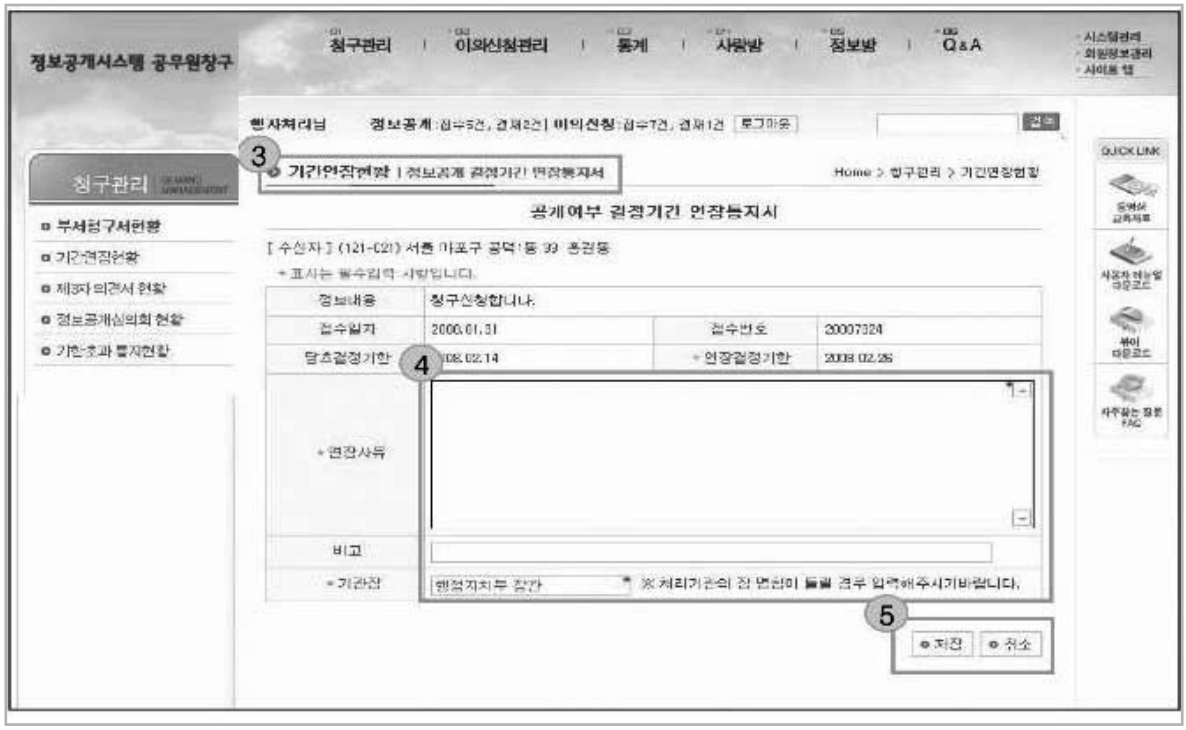

- 담당자 : 정보공개처리자
- 메 뉴 : 청구관리 > 부서청구서현황 > 청구제목 선택(상세조회) > '기간연장' 선택
- 처리절차

1) 기간연장 입력 및 처리
   - '기간연장 등록' > '결재' > '통지' 버튼을 클릭해야 기간연장통지가 처리되며, 청구인이 청구서 작성 시 선택했던 안내 메시지 수령방법에 따라 안내메시지가 발송
2) 결재절차는 정보공개 결정통지서 자동·수동결재 처리절차와 동일
3) 청구결정 기간 연장은 10일이며, 이의신청 결정기간 연장은 7일임. 반드시 '통지' 버튼을 클릭해야만 처리기간이 연장됨(청구인에게는 문서로서 통보)

10 정보공개실시

청구인이 정보공개 수수료를 직접 납부하는 경우, 담당자가 수수료 입금 확인후 '공개실시'를 처리하는 업무

정보공개실시 처리화면

- 담당자 : 정보공개처리자
- 메 뉴 : 청구관리 > 부서청구서현황 > 청구제목 선택(상세조회) > '공개실시'
- 처리절차

1) 정보공개실시
   - 정보공개결정통지후 청구인이 방문, 계좌이체, 수입인지·수입증지 등으로 수수료를 직접 납부한 경우 정보공개처리자가 '공개실시'로 처리
   - '공개실시'를 처리하면 수수료 납부완료로 처리가 되며, 납부방법은 '기타'로 표기되고 처리상태는 '공개완료' 상태로 됨.

     ※ 일반적인 처리 절차(정보공개시스템) : 정보공개 결정통지 → 수수료 납부 → 열람

2) 수수료를 받았으나 '공개실시'로 처리하지 않고 10일이 경과하면 '처리상태'가 '10일 초과처리종결'로 나타남(수수료를 받지 않은 것으로 인식)

   ※ 정보공개결정통지이후 10일이 경과하도록 정당한 사유없이 그 정보의 공개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내부적으로 종결처리 할 수 있음(영 제12조 제3항)

제7장
정보공개 FAQ

Contents

<목 차>

Ⅰ. 업무처리와 관련한 FAQ

1. 정보공개 청구대상 공공기관 132
2.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 판단 기준 133
3. 사립대학교가 공공기관에 해당되는지 여부 134
4. 정보공개 청구인 적격 135
5. 정보공개 청구대상 문서의 의미 136
6. 공공기관 상호간의 자료제출 요구 137
7. 이미 공표한 정보에 대한 공개청구 138
8. 정보공개 FAX 접수시 본인여부 확인 방법 139
9. 정보공개 청구시 청구취지를 확인해야 하는 이유 140
10. 정보공개 청구량 과다시 처리방안 141
11. 다른 법률에 특별한 공개 규정이 있는 경우 142
12. 전산시스템상 조건별 자료추출 정보의 정보공개 대상 여부 143
13. 폐기대상이나 미폐기상태인 대장의 정보공개청구 144
14. 공표대상 목록의 사전공개 게시 시한 145
15. 전자적 형태로 공개를 요청하는 경우 146
16. 즉시공개처리 가능한 정보공개 청구 147
17. 정보공개청구시 이송처리 방법 148
18. 정보공개시스템 미이용기관 이송처리 방법 149
19. 정보공개 위임장의 의미 150
20. 청구인의 정보공개 자료가 원본임을 입증 151
21. 정보공개일시의 통지 후 공개에 응하지 않는 경우 152
22. 정보의 생산·가공·취합 가능 여부 153

23. 기간산정 관련 질의 154
24. 제3자 의견청취시 청구자의 신상 공개 타당성 여부 155
25. 제3자의 비공개요청 156
26. 행정심판 재결에 따라 공개할 경우 공개 실시일 157
27. 정보공개심의회 설치 의무 158
28. 정보공개심의회 개최의 강행성 159
29. 정보공개심의회 외부전문가 위촉 및 서면심의 160
30. 정보공개심의회의 결정과 달리 조치할 수 있는지 161
31. 수용자의 정보공개 수수료 납부방법 162
32. 규격 외의 자료 정보공개 청구시 수수료 산정 163
33. 국회의원의 정보공개청구시 수수료 감면 164
34. 지방의원의 자료제출 요구 처리 165
35. 신문사의 정보공개 청구시 수수료 감면 166

Ⅱ. 정보 공개 · 비공개 결정과 관련한 FAQ

36. 회의 녹음내용 정보공개청구 167
37. 비공개 결정통지서의 재교부 168
38. 한시적 비공개 169
39. CCTV 녹화내용 정보공개청구 170
40. 개인의 감사처분 결과 정보공개청구 171
41.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 개정가능 여부 172
42. 공공기관이 취득한 개인정보 중 권리구제를 위한 정보 173
43. 진정민원 제기사항 및 그 처리결과 정보공개청구 174
44. 공모탈락자로부터 공개모집 관련 정보공개청구 175
45. 기관의 감사결과 정보공개청구 176

46. 금고 관련 자료 정보공개청구 177
47. 법 제9조 제1항 제6호 단서조항상의 열람할 수 있는 정보 178
48. 정보공개심의회 회의록 정보공개청구 179
49. 기관장 개인명의의 기부금 및 재산 환원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180
50. 퇴직공무원 인사기록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181
51. 학교장 및 교감의 개인정보 공개청구 182
52. 공무원의 학력, 자격증, 운전면허증 등 청구 183
53. 공무원의 시간외수당, 출장비 지급현황 정보공개청구 184
54. 각급학교의 예산배정내역 정보공개청구 185
55. 시험답안지 정보공개청구 186
56. 건축인허가 관련 정보공개청구 187
57. 소송제기를 위한 부동산중개인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188
58. 인허가 관련 서류 정보공개청구 189
59. 자치단체장의 연봉 지급현황 정보공개청구 190
60. 재판 중인 사항의 공개여부 191
61. 민원서류 발급내역 정보공개청구 192
62. 위원회 위원명단 정보공개청구 193
63. 본인 관련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194
64. 과태료 납부내역 정보공개청구 195
65. 공무원 개인정보 정보공개 범위 196
66. 정보공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197
67. 이의신청 결정시 기각, 각하, 인용, 부분인용의 의미 198
68. 도면 정보공개청구 199
69. 광고・홍보비 지출내역과 언론사명 공개여부 200
70. 업체의 상호명, 주소지 등이 공개대상인지 여부 201
71. 학교교사 근무상황부 정보공개청구 202
72. 사업공청회 의견서 정보공개청구 203

Ⅲ. 정보공개시스템과 관련한 FAQ

73. 정보공개시스템 사용자 등록 방법 204
74. 정보공개담당자 지정 205
75. 오프라인 청구내용 온라인 확인가능 여부 206
76. 청구한 날부터 20일이 지난 정보공개청구 처리 207
77. 정보공개시스템 수수료 결제 장애 208
78. 청구인 수수료 납부 209
79. 결정통지서 출력시 기관장 표기 210
80. 다중처리부서 지정시 처리 211
81. 정보공개 처리내용 변경 212
82. 정보공개시스템 수수료 계산 213
83. 청구인이 결제한 내역 확인 방법 214

제7장 정보공개 FAQ

Ⅰ. 업무처리와 관련한 FAQ

1. 정보공개 청구대상 공공기관

질 문

• 시민단체와 한국방송공사가 정보공개 청구대상 공공기관에 포함되는지요?

답 변

• 정보공개법 제2조 제3호, 동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서 정보공개 대상기관은 ① 국가기관, ② 지방자치단체, ③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 ④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각급 학교, ⑤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과 자치단체가 조례로 설립되고 출연 또는 지원, 지배하는 기관, ⑥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 ⑦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이중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하여 정보공개법상 공공기관인지 여부는 민법 및 상법에 대한 상대적인 의미로서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도 포함하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개별법의 입법목적, 설립목적, 공공성 정도, 예산의 지원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합니다.

• 한국방송공사는 방송법이라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운영되는 특수법인으로서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2조 제4호에 따른 공공기관에 해당합니다.

• 반면, 시민단체는 정보공개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예시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범위에 해당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정보공개법상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 판단 기준

질 문

- **특정기관이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2조 제4호의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인지요?**

답 변

- 정보공개법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보장한다는 목적에서 제정되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4호에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은 반드시 해당 법인의 설립을 위하여 특별히 제정된 개별적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국한된다기보다는 일정한 공공성이 인정되는 한 「민법」 및 「상법」에 대한 상대적인 의미로서의 "특법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도 포함된다 할 것이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개별법의 입법목적 내지 취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합니다. (법제처 해석사례 06-0318, 07-0188)

- 다만, 개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정보공개법 제2조 제4호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으로서 정보공개 대상기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해당 법인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일반국민에게 공개를 하여야 할 정도의 공공성을 지녔는지 여부를 살펴야 함과 동시에, 해당 법인이 「민법」 또는 「상법」상의 법인 등 정보공개 대상기관이 되지 않는 일반법인과 비교할 때 그 설립목적, 사업 및 활동에 있어서의 일반법인과는 달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보조, 감독 등에 있어서 특별히 취급되어져야 할 정도의 특수성이 인정되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 구체적으로 개별법의 입법취지·목적, 예산의 지원여부, 업무의 공공성(위탁 등), 구성원의 신분 등을 종합적·구체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3. 사립대학교가 공공기관에 해당되는지 여부

질 문

- **사립대학이 정보공개법상 공공기관에 해당되는지와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별법」의 구체적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요?**

답 변

- 먼저 사립대학이 공공기관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정보공개법 제2조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호의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 학교"의 범위에는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 대학원 등이 포함되며, 여기에는 국·공립학교 뿐만 아니라 사립학교도 포함됩니다.
-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은 교육과학기술부 소관입니다.

4. 정보공개 청구인 적격

질 문

- **병무청에서 병역법 제80조를 근거로 OO학교 생활기록부 제공을 요청하였는데 본인이 아닌 공공기관에 생활기록부를 제공해도 되는지요?**

답 변

- 정보공개 청구는 국민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의 원본 자체를 공개요청 하는 것으로서 정보공개법 제5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정보공개 청구권자는 모든 국민 및 대통령령이 정한 외국인으로 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모든 국민'의 범주에는 법인격이 부여된 사법상의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공법상의 법인, 법인격 없는 단체나 기관도 포함되며, 국민에는 미성년자, 재외국민, 수형인 등도 포함된다고 할 수 있으나 공무원은 정보공개 청구권이 없기 때문에 공무원이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私人의 지위에서만 가능합니다.

- 국가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은 없지만 법인으로 의제되어 권리·의무의 주체가 됩니다. 그러나 국가조직단위에 해당되는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및 그 산하기관과 소속기관, 국립연구기관, 국립대학 등은 법인격이 없으므로 독립적 지위에서 정보공개 청구권의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 참고적으로 지방자치법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법인격이 부여된 공법상 법인인 '지방자치단체'도 위에서 설명 드린 법 제5조의 '정보공개 청구권자'의 해석상 청구권이 부여될 수 있으나, 판례는 이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 정보공개법상 정보공개 청구권은 공공기관 사이의 자료 제출 협조 요청 사안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국가기관의 장 및 자치단체장 명의로 정보공개청구를 할 수 없고, 공공기관 상호간의 자료 요구는 「사무관리규정(대통령령)」 등에 의한 협조 사항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해당 정보의 제공여부는 자료요구의 근거법과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검토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5. 정보공개 청구대상 문서의 의미

질 문

- 업무처리시 주고받는 팩스나 그룹웨어의 경우 과장님 자체 결재는 받지만 문서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정보공개청구 대상인지요?

답 변

- 정보공개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 · 도면 · 사진 · 필름 · 테이프 · 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의미합니다. 또한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의 의미는 공공기관이 자체 생산하였거나 외부(타 기관 및 개인 등)로부터 취득한 정보를 모두 포함합니다.

- 정보공개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개대상 정보'의 범위 중 "문서"는 사무관리규정 제3조 제1항 및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에 의한 결재가 이루어진 문서"를 의미합니다. 다만, '문서'가 아닌 '도면 · 사진 · 필름 · 테이프 · 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는 서명에 의한 결재여부와 관계없이 공공기관이 보유 · 관리하고 있는 한 공개대상 정보로 판단해야 합니다.

- '업무연락이나 관리통신문'의 정보가 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개대상 '정보'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그 매체가 팩스(모사전송)라면 부서장의 결재를 득하였기 때문에 청구대상 정보이며, 그 매체가 그룹웨어라면 부서장의 결재여부와 관련 없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에 해당되는 정보로서 청구대상 정보에 해당합니다.

6. 공공기관 상호간의 자료제출 요구

질 문

- **타 공공기관에서 우리기관으로 자료제출을 요청했는데,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의 비공개 사유를 근거로 거부할 수 있는지요?**

답 변

- 정보공개법은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국정에 대한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일반 국민이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것입니다.
- 판례에 의하면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정보공개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공공기관 상호간의 자료제출 요구는 정보공개법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행정절차법」 제8조 또는 「사무관리규정」 제55조 등에 의한 업무협조 사항에 해당합니다.
- 따라서 타 공공기관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한 제공여부는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개별법적 근거, 행정절차법 및 사무관리규정 등을 근거로 검토·결정해야 합니다.

7. 이미 공표한 정보에 대한 공개청구

질 문

- **홈페이지에 사전공표대상 정보로 공개된 사항에 대해 사본 출력 형태로 정보공개 청구했을 경우 처리방법은 어떻게 되는지요?**

답 변

-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홈페이지에 법 제7조에 의한 사전 공개된 내용에 대하여 정보공개 청구가 접수되면 URL(접근경로 : 인터넷 주소명) 안내로 공개결정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 참고로 "정보공개법 제2조 제2호에 규정된 '공개'라 함은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는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원하는 형태 및 교부방식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해,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정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 건 정보가 게재되어 있다는 것과 인터넷을 통하여 열람하는 방법을 안내하였고, 교도소 수감이라는 청구인의 개인적인 사유가 위와 같은 정보 취득을 불가능하게 하는 절대적 사정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청구인은 직·간접적으로 피청구인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근하여 이 건 정보 내용을 알 수 있다고 인정되는 바, 이 건 정보는 일반에게 공개되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없으며, 따라서 이 건 청구는 심판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합한 청구라 할 것이다"라는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재결례(07-01715)가 있습니다.

8. 정보공개 FAX 접수시 본인여부 확인 방법

질 문

- 정보공개청구서 Fax 신청시 본인여부를 확인하는지와 대리인이 Fax로 정보 공개 신청시 본인여부확인은 어떻게 하는지요?

답 변

-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15조(정보공개시 청구인의 확인)의 규정과 관련, 정보공개 청구시점에서부터 본인확인을 할 필요는 없고 정보공개 시점에서 실시하면 됩니다.
- "정보공개 청구시 본인여부 확인방법"은 정보공개 시점에서 청구인에게 본인 확인을 입증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기타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을 팩스로 송부할 것을 통지하거나, 대리인을 지정하여 공개 요청할 경우 위임장(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과 청구인 및 수임인의 주민등록증 기타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여 본인확인을 해야 합니다.
- 다만 청구된 정보가 누구에게나 공개 가능한 경우에는 청구인을 확인할 실익이 없으며, 정보의 내용에 따라 기관에서 청구인을 확인하는 정도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9. 정보공개 청구시 청구취지를 확인해야 하는 이유

질 문

- 정보공개법 제14조(부분공개)는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란 무엇을 의미하는지요?

답 변

- 청구자가 공개 요청한 정보에 대하여 공공기관이 공개여부를 판단할 때 우선 공개가 원칙이기 때문에 공개를 전제조건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해당 정보에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호에 해당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고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공개로 인한 청구자의 이익과 공개로 인해 침해되는 다른 이익에 대한 보호이익을 비교·형량(교량)하여 후자의 이익이 클 경우에는 해당 비공개 정보 부분을 가린 형태로 부분공개 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공개로 인한 청구자 이익이 무엇인지의 판단은 청구취지를 파악하여야 할 것이므로 현행법상 청구자가 청구취지를 밝힐 것을 공공기관이 강요할 수 없다 할지라도 공개여부에 대한 비교·형량에 필요한 '정보의 사용목적(청구취지)'을 밝히지 않는다면 비교·형량시 공개로 인한 청구자의 이익을 당해 공공기관으로서는 알 수가 없으므로 공개로 인해 침해되는 다른 이익에 더 주안점을 둘 수밖에 없음을 공공기관은 청구자에게 주지시켜야 합니다.

- 따라서, 정보공개법 제14조의 규정에서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의 의미는 공공기관이 공개로 인한 청구자의 이익의 정도를 비교·형량하기 위하여 파악한 청구인의 정보 사용목적의 범위에 맞게 공개 가능한 정보를 부분공개 하라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공공기관의 처리부서에서 판단해야 할 사항입니다.

10. 정보공개 청구량 과다시 처리방안

질 문

- 몇 박스가 될 정도로 과도한 정보공개 요구가 들어왔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답 변

- 정보공개법 제13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에 따라 공개대상 정보의 양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사본을 일정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교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것을 당해 공공기관이 청구자에게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 참고로 정보공개 청구권 남용(악용)과 관련하여 판례는 "정보공개법의 제정목적, 규정내용 및 취지에 비추어 보면, 정보공개 청구의 목적에 특별한 제한이 없으므로 오로지 상대방을 괴롭힐 목적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공개 청구가 신의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6. 8. 24. 2004두2783) 라고 하고 있습니다.

- 청구권 남용에 대한 대응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일체"식의 과다 청구는 법 제8조에 의거 사전공표 된 '정보목록'을 검색하여 구체적인 청구항목을 청구서에 기재한 후 청구토록 안내하는 식의 비공개 결정 통지
  ② 법 제13조 제2항 및 영 제12조 제2항을 적용(공개방법 직권변경)하여 우선 열람한 후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사본 교부를 요청토록 하고, 열람방식에 행정행위의 부관인 "조건" 부기
  ③ 열람형식으로 수수료를 철저히 산출하고 사본의 사전 복사 지양(수수료가 많을 경우 비용 부담에 응하지 않는 사례가 많음) 등

11. 다른 법률에 특별한 공개 규정이 있는 경우

질 문

- **민사집행법 제72조 제4항의 채무불이행자 명부나 부본을 정보공개법에 따라 정보공개 청구를 할 수 있는지요?**

답 변

- 정보공개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정보의 공개와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는 바, 이는 다른 법률에서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의 입법취지를 최대한 살리고 정보공개법과의 상호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정보공개법의 적용에 앞서 해당 개별법의 특별한 규정을 우선 적용하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 따라서 「민사집행법」 제72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채무불이행자명부"는 공개형태를 열람뿐만 아니라 '사본·복제물' 교부로도 가능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채무불이행자명부"의 정보를 얻고자 하는 자는 정보공개법에 의한 정보공개 청구가 아닌 민사집행법 제7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 및 복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2. 전산시스템상 조건별 자료추출 정보의 정보공개 대상 여부

질 문

- 전산시스템상 별도로 조건을 지정하여 추출하여야 하는 정보도 공개대상 정보에 포함되는지요?

답 변

- 정보공개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는 정보를 있는 그대로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 등의 형태로 교부하는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정보를 가공하여 제공하는 것은 정보공개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공공기관이 고도의 가공 과정을 거치면서까지 청구인이 원하는 형태로 정보를 만들어서 제공할 의무는 없으며, 청구자의 청구 목적에 부합되는 정보가 있을 경우 이를 있는 그대로 제공하고 이후의 작업은 청구인 자신이 진행하도록 하고, 부합되는 정보가 없을 경우에만 비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다만, “정보를 독자적인 자료형태로 전산기기 내에 작성·보관하고 있지 아니하더라도 개개의 기초 정보자료가 모두 입력되어 있고, 그 정보를 이용한 통계자료나 석차 등의 결과물을 검색·편집·작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이미 가지고 있거나 시간적·경제적으로 큰 부담없이 그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 결국 사실상 공개대상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것” 이라는 판례(서울행법 2006구합47759)가 있습니다.

- 따라서 “특정지역 번지 내 거주하는 주민 중 생년월일이 모일부터 모월 모일까지인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수”와 같이 해당 정보를 전산시스템상 별도로 조건을 지정하여 추출하여야 하는 정보는 정보를 있는 그대로(추출된 원시정보) 공개하는 방법과 일정 조건을 지정하여 가공(추출된 원시정보에 불필요한 항목 삭제 등) 공개하는 방법을 비교하여 공개방법을 결정해야 합니다.

13. 폐기대상이나 미폐기상태인 대장의 정보공개청구

질 문

- 폐기되었어야 할 과세대장에 대한 정보공개청구가 들어온 경우 사본 교부가 가능한 것인지요?

답 변

- 정보공개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개대상 정보'의 범위 중 "문서"는 사무관리규정 제3조 제1항 및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에 의한 결재가 이루어진 문서"를 의미합니다. 다만, '문서'가 아닌 '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는 서명에 의한 결재여부와 관계없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한 공개대상 정보로 판단해야 합니다.

- "본인 소유의 구 재산세(건축물) 과세대장"의 정보가 폐기되었어야 하는 문서임에도 부득이 현재까지 보존하고 있는 정보이고, 청구인이 당해 공공기관이 해당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을 것이라는 상당한 개연성을 알고 청구서상에 그 구체적 사실을 기재하였다면 정보주체인 청구인에게 공개해야 합니다.

14. 공표대상 목록의 사전공개 게시 시한

질 문

- **정보공개법 제7조에 따른 사전정보공표의 경우 인터넷에 공표된 행정정보를 언제까지 게시해야 하는지요?**

답 변

- 정보공개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공표대상 정보의 범위, 공개 주기·시기, 공개방법 등을 사전에 정하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고시 후 고시된 내용에 따라 사전정보공표를 실시해야 합니다. 중요정보와 단순·경미한 정보를 구별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공개할 경우 국민의 입장에서는 정보의 홍수에 매몰되어 관심 있는 정보를 모르고 지나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정보의 중요도에 따라 공표방식을 구분하여 검색의 편의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예를 들어 중요도가 높고 테마별로 일련의 흐름에 따라 진행되는 정보는 별도 메뉴를 구성하여 체계적으로 공개해야 하고, 중요도가 높고 개별적 사안의 성격의 정보는 사전공표대상이며, 중요도가 낮으며 단순·경미·행정 내부 사항은 별도로 공개하지 않고 정보목록에만 포함시켜야 합니다.

- 따라서 사전 공표된 정보를 언제까지 게시하여야 할 것인가의 판단은 해당 정보의 성격과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각 공공기관에서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15. 전자적 형태로 공개를 요청하는 경우

질 문

- **공개형태를 전자파일로 선택하여 관인목록 및 관인대장을 청구했는데, 전자 파일로 공개가 가능한지요?**

답 변

- 정보공개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이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당해 정보의 성질상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구인의 요청에 응해야 합니다.

- 또한 정보공개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이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경우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당해 정보의 성질이 훼손될 우려가 없는 한 전자적 형태로 변환하여 공개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엑셀 파일 형태로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에 대하여 청구인이 엑셀 파일 형태로 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경우 당해 정보의 성질이 위·변조 또는 훼손되어 악용될 가능성 등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엑셀 파일 형태로 공개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정보공개결정통지서에 첨부하여 공개하는 자료는 정보의 신뢰성 유지를 위하여 최소한의 위·변조 방지기능을 적용한 보안문서(CSD 파일)로 변환하여 공개하고 있습니다.

- 관인목록 및 관인대장을 전자파일 형태로 공개할 경우 청구인이 이를 위·변조하여 범죄에 이용하는 등 다른 형태로 그 정보의 성질을 훼손하여 악용할 소지가 있는 경우 공공기관은 공개형태를 열람이나 사본·복제물 교부에 의한 공개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공개결정 통지시에 청구인이 청구한 공개형태 및 수령방법의 변경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불필요한 민원제기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16. 즉시공개처리 가능한 정보공개 청구

질 문

• 정보공개 청구 중 즉시공개처리가 가능한 경우와 처리방법은 어떻게 되는지요?

답 변

• 정보공개법 제16조의 "즉시공개가 가능한 정보"의 예시를 들면, ① 법령 등에 의해 공개를 목적으로 작성된 정보(ex : 통계자료), ② 일반 국민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작성된 각종 홍보자료, ③ 공개하기로 결정된 정보로서 공개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 정보, ④ 공개여부 결정에 어려움이 없거나 정보공개심의회 심의가 필요 없는 정보, ⑤ 법 제9조 제1항 각호에 해당되는 비공개 대상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정보 ⑥ 해당정보에 이해관계인(제3자)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정보, ⑦ 정보생산 공공기관의 의견청취 및 소관기관의 이송에 해당되지 않는 정보, ⑧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입니다.

• 즉시공개처리 방법은 별도로 정보공개 결정통지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지 않고 청구인에게 정보를 즉시 제공하는 방법으로서, 청구인에게 정보 수령증에 서명하도록 한 후 이를 정보공개청구서와 함께 편철하여 보관하며, 정보공개처리대장 기재, 정보공개수수료 징수는 일반적인 정보공개청구의 경우와 동일하게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17. 정보공개청구시 이송처리 방법

질 문

- 청구인이 정보공개청구서를 다른 공공기관으로 이송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 처리방법은?

답 변

- 정보공개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는 당해 정보를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거나 구술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은 "당해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다는 점에 관하여 정보공개를 구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할 것이지만, 그 입증의 정도는 그러한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증명하면 족하다 할 것"이라고 판시(2006두20587)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청구인이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면서 본인의 정보공개청구서를 다른 공공기관에 이송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것은 당해 공공기관이 청구한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다는 상당한 개연성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고, 오히려 본인이 청구한 정보가 다른 공공기관에서 보유·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명백히 인지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정보공개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에게 해당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소관기관으로 직접 청구할 것을 안내하여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18. 정보공개시스템 미이용기관 이송처리 방법

질 문

- OO학교가 정보공개시스템과 연계되어 있지 않아 정보공개 서류가 이송될 수 없음을 이유로 청구인에게 직접 접수하라고 통지한 것이 정당한지요?

답 변

- 다른 기관에서 생산한 정보라도 직무상 취득·관리하고 있는 경우, 정보공개 결정은 공개청구를 받은 기관에서 처리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9조에 의거 정보생산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하여 바로 비공개 결정을 하여서는 안되며, 소관기관을 파악하기 위한 기본적인 노력을 하여 소관기관이 있을 경우 반드시 이송하고 소관기관을 파악할 수 없을 경우에만 비공개 결정을 해야 합니다.
- "정보공개시스템"에서 "이송처리 불가"의 개념은 이송대상 공공기관이 정보공개시스템을 사용하지 않아 우편·FAX 등을 이용하여 이송하는 것입니다.

19. 정보공개 위임장의 의미

질 문

- 정보공개법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에 정보공개위임장이라는 것이 있는데 어떤 경우에 사용하는지요?

답 변

- 정보공개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정보공개청구권을 부여 받은 국민(청구인)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동법 제2조 제1호의 '정보'에 대하여 공개 요청하고자 할 경우 동법 시행규칙 제2조의 '별지 제1호서식'인 정보공개청구서를 작성하여 공개 요청하여야 할 것이나 청구인이 직접 청구서를 접수하기 어려운 여러가지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청구자의 위임에 따라 정보공개위임장을 작성하여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청구를 할 수 있고 또한 공개(부분공개)결정된 정보의 수령시에도 위임이 가능합니다.

- 참고로,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본인확인 방법 중 대리인에게 공개하는 경우 ① 변호사와 같이 법정대리인일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계약서류 등)와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기타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② 임의대리인에게 공개하는 경우 위임장(별지 제8호서식), 청구인 및 수임인의 주민등록증 기타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를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 청구인의 정보공개 자료가 원본임을 입증

질 문

- **청구인이 본인이 요청한 정보가 원본과 동일하다는 것을 증명하여 발송하여 줄 것을 요청할 경우 원본대조필을 해 주어야 하는지요?**

답 변

- 정보공개법 제1조, 제2조, 제3조, 제6조의 규정상 청구자의 공개요청에 대하여 공공기관이 공개하여야 할 정보는 당해 정보의 원본을 의미합니다. 즉 정보공개법에서 규정한 정보의 공개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의 원본를 공개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일 공무원이 원본의 정보가 아닌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허위의 정보를 공개하는 등 공무원이 법령을 위반하여 업무를 처리할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78조(징계사유)와 지방공무원법 제69조(징계사유) 및 형법 등에 의하여 징계 및 처벌이 가능합니다.(현행 정보공개법에는 동법을 위반한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또는 처벌조항을 두고 있지 않음)

- 공무원이 조작된 자료를 공개할 경우 형법 제225조, 제226조, 제227조의2의 규정에 의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허위의 자료를 공개할 경우에는 형법 제227조의 규정에 의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따라서, 공공기관이 정보공개청구자에게 공개하는 정보는 그 자체가 원본의 정보를 의미하고, 원본의 정보가 아닌 정보로서 인위적으로 조작되거나 허위의 자료를 공개할 경우 당해 공무원은 징계벌과 형사벌로 처벌될 수 있으므로 공공기관이 정보를 공개할 때 '원본대조필'을 날인하여 공개하여야 할 의무와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 이와 관련된 행정심판위원회 재결례를 소개하면 대구지방교정청행정심판위원회 (사건번호 2006-26호)에서 "공공기관이 청구인에게 정보공개시 원본의 사본·출력물에 '원본대조필'을 날인할 의무와 법적 근거가 없다"고 재결한 사례가 있습니다.

21. 정보공개일시의 통지 후 공개에 응하지 않는 경우

질 문

- 정보공개 결정 후, 정보공개 일시를 통지했음에도 응하지 않아서 공개기간이 지난 경우 정보공개청구를 다시 신청해야 하는지요?

답 변

-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청구인에게 통지한 공개일 후 10일이 경과할 때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정보의 공개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내부적으로 종결할 수 있는 바, 이는 기속재량행위가 아닌 자유재량행위로서 내부종결 시킬 것인지 아닐지에 대한 판단과 결정권한은 당해 공공기관의 장에 있습니다.
- 따라서 전후사정 및 청구인과 공공기관간의 입장 등을 고려하여 재청구하도록 안내할 것인지 아니면 10일이 경과하였더라도 수수료 등 비용부담에 응한다면 정보공개 결정된 정보에 대해 공개를 할 것인지 여부는 해당기관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참고로, 정보공개시스템에서는 정보공개결정 통지 15일 경과후 종결하고 있으며 처리상태는 "10일초과 종결"로 표기 됩니다.

22. 정보의 생산 · 가공 · 취합 가능 여부

질 문

- **청구인이 정보를 가공, 생산, 취합하여 공개할 것을 청구한 경우 이에 응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요?**

답 변

- 정보공개법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공공기관은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에 대하여 정보공개 청구가 들어온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하나, 이는 정보를 있는 그대로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 등의 형태로 교부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정보를 가공하여 제공하는 것은 정보공개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 행정소송 판례(서울행법 2006. 12. 29. 2006구합20716) 역시 "위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정보공개법은 공공기관에 대하여 국민의 청구에 따라 새롭게 정보를 생산하거나 가공하여 제공할 의무까지 부과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공공기관이 이미 관리하고 있는 문서·도면·사진 등의 매체에 기록된 사항을 열람, 사본 또는 복제물 교부 등의 방법으로 공개할 의무만을 부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 다만, 여러 종류의 정보가 복합되어 있거나 여러 부서로부터 취합하여 공개하는 경우 등 정보를 있는 그대로 공개하는 것이 오히려 큰 업무부담을 유발하는 경우로서, 청구인도 정보의 가공에 동의한다면 부분적으로 정보의 가공공개도 허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23. 기간산정 관련 질의

질 문

- **정보공개법 및 시행령에 포함한 기간산정 중 토 · 일요일 포함여부는 어떻게 되는지요?**

답 변

- 정보공개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과 관련, 결정기간의 기산점으로 ① 청구인 직접 방문 청구시는 청구서를 제출한 날, ② 우편 또는 팩스 청구시는 청구서가 기관에 도착한 날, ③ 인터넷 청구시는 청구서가 시스템에 입력된 날로 하고 있으며, 초일과 공휴일의 산입과 관련,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6조를 준용하여 초일은 산입하고 공휴일은 산입하지 않으나 법정공휴일이 아닌 '토요일'은 기간에 산입됩니다.

- 민원사무의 처리기간을 5일 이하로 정한 경우에는 민원사항의 접수시각부터 '시간' 단위로 계산하되 공휴일과 토요일을 산입하지 아니하나, 민원사무의 처리기간을 6일 이상으로 정한 경우에는 '일' 단위로 계산하고 초일을 산입하되 공휴일은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법정공휴일이 아닌 토요일이 5일 이하의 처리기간에는 산입되지 않고, 6일 이상 처리기간에는 산입되는 행정기관의 주 40시간 근무제에 따른 공무원 부담경감을 위해 처리기간이 5일 이하인 민원은 토요일을 처리기간에서 제외토록 하였기 때문입니다.

24. 제3자 의견청취시 청구자의 신상 공개 타당성 여부

질 문

- **제3자 의견청취시, 청구인의 정보(이름, 주소)를 알리는 것은「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제26조와 상충되지 않는지요?**

답 변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는 담당 공무원이 무단으로 민원인의 정보를 누설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것으로서, 정보공개법상 제3자 의견청취는 법이 정한 절차와 서식에 따라 청구인의 인적사항(이름, 주소)을 제3자에게 알려주도록 하고 있어,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과 상충되지 않습니다.

- 정보공개법은 시행규칙 별지 제5호 또는 제6호의 서식에 의거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할 때, 서면으로 접수받는 제5호서식에는 청구자의 이름과 주소를 작성하게 되어 있고, 구술로 직접 접수받는 제6호서식에도 청구인의 이름과 주소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이해관계인인 제3자가 청구내용과 관련된 청구자의 인적사항을 사전에 인식하여 자신의 정보에 대한 공개여부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 다만, 이 경우에도 주소는 상세지번을 제외하여 제3자에게 알려주되 청구자에게도 제3자에게 이와 같은 사항이 통지된다는 점을 미리 알려 사전에 민원발생을 예방하고, 제3자에 대한 통지는 반드시 법정서식인 문서로 통지해야 합니다.

25. 제3자의 비공개요청

질 문

- 제3자의 비공개요청을 근거로 비공개결정통지 할 수 있는지요?

답 변

- 정보공개법 제11조 제3항, 제21조 제1항에 따른 제3자에 대한 사전통지와 의견청취는 공공기관이 청구인에 대한 정보공개결정 여부에 대한 처분을 하기 전에 제3자에게 의견을 반영할 기회를 주어 공공기관이 이를 참작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공공기관은 그 제출 의견에 기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 따라서 제3자의 비공개요청이 있다는 사유만으로 비공개결정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유와 근거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비공개 결정하여야 합니다.
- 이 규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그 정보공개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공공기관이 제3자와의 관계에서 거쳐야 할 절차를 규정한 것으로 제3자에게 사전통지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한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6. 행정심판 재결에 따라 공개할 경우 공개 실시일

질 문

- **제3자의 비공개 요청에 불구하고 행정심판 재결에 따라 공개결정을 하는 경우 정보공개법 제2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30일 간격을 두어야 하는지요?**

답 변

- 정보공개법상 제3자의 이의제기와 관련된 절차규정의 취지는 공개가 요구된 정보와 관련된 제3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제3자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결정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불복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최소한 30일의 기간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 정보공개법 제11조 제3항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공기관은 공개청구된 공개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하고, 공개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대하여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제3자의 비공개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공개결정을 하는 때에는 제3자는 자신과 관련된 정보의 공개를 저지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에 대해 관련정보의 비공개 요청을 할 수 있고, 관련정보의 공개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으며, 행정심판의 결과 관련정보의 공개가 결정된 경우에는 관련 정보의 공개결정 재결에 대하여 재결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 행정심판의 재결에 따른 공공기관의 공개결정에 대하여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이러한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준비 등을 위해 일정기간을 필요로 합니다.

- 뿐만 아니라, 제3자는 행정심판의 결과 자신과 관련된 정보가 즉시 공개된다면, 자신과 관련된 정보가 공개되지 못하도록 다툴 수 있는 기회를 갖지도 못한 채, 자신에 관한 정보가 공개되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법적 이익이 침해되어 실질적으로 행정소송을 통하여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없게 됩니다.

- 따라서, 비록 행정심판의 재결에 따라 공공기관이 정보공개결정을 하는 경우에도 제3자의 행정소송 제기를 위한 기간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개결정일부터 공개실시일까지 30일의 기간이 보장되어야 합니다.(법제처 06-0058, 2006. 5.10)

27. 정보공개심의회 설치 의무

질 문

- 공공기관인 학교와 교육청이 정보공개심의회를 구성하는 것이 의무사항인지요?

답 변

- 정보공개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심의회 설치 의무기관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과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으로서 각 기관의 업무성격, 업무량 등을 감안하여 본부 또는 소속기관에 복수로 설치 운영할 수 있습니다.

- 참고로,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은 폐지되고 이에 대한 대체입법으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으며, 동 법률에서는 공공기관을 시장형 공기업, 준시장형 공기업, 기타 공공기관으로 세분화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2조에 명시되어 있는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은 심의회 설치가 의무화되지 않은 기관으로 각급 학교, 지방공사·공단, 특별법에 의한 특수법인, 사회복지법인 등이 여기에 해당되며, 심의회 설치가 의무화되지 않은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 여부 및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합니다.

- 따라서, 각급학교는 정보공개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회 설치 의무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심의회를 설치하지 않아도 법상으로는 하자가 없으며, 정보공개여부 결정과 이의신청 결정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는 관할 교육지원청에 구성되어 있는 심의회에 심의를 의뢰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28. 정보공개심의회 개최의 강행성

질 문

• 정보공개법 시행령 상의 정보공개심의회는 반드시 개최하여야 하는지요?

답 변

• 정보공개법 제12조,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심의회'와 관련, 영 제11조 제2항의 "심의한다"는 강행규정으로 해석하여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그 밖의 정보공개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 다만, 영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에 대하여 같은 내용으로 2회 이상 반복하여 제기된 이의신청, 청구인 또는 제3자의 법적 제기 기간이 지난 이의신청, 이미 심의회를 거친 사항에 대한 이의신청)이거나, 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부분공개 결정시 공개한 부분에 대한 이의신청, 이의신청을 통해 원 청구와 다른 내용의 청구를 한 경우, 결정 통지한 기관이 다른 기관에 이의신청하는 경우, 결정통지 전의 이의신청 등 형식적인 요건이 결여되어 각하대상으로 판단되는 사안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한 경우에는 정보공개심의회를 반드시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비공개·부분공개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받고 '인용' 결정하여 청구인이 요청한 정보를 전부공개할 경우 심의회를 개최할 법적실익이 없으므로 반드시 개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이 경우 청구인의 취지가 그대로 반영되었는지를 신중히 판단하여 인용결정하여, 청구인의 권리구제 기회를 박탈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합니다.

• 참고로 "정보공개법은 정보공개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결정할 때에는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 바, 이 경우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결과에 기속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심의 자체는 거쳐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행한 피청구인의 처분은 더 이상 살펴볼 것도 없이 위법·부당하다 할 것이고, 처리기간이 단기간이라는 이유로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것은 아닐 뿐 아니라 정보공개법 자체가 7일 이내에 결정을 할 수 없는 때에는 결정기간을 다시 7일간 연장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피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재결례(08-02534)가 있습니다.

29. 정보공개심의회 외부전문가 위촉 및 서면심의

질 문

- 정보공개심의회 외부전문가의 범위에 지자체 또는 다른 기관의 공무원도 해당이 되는지요? 또한 서면심의가 가능한지요?

답 변

- 정보공개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회는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외부전문가 위촉시 ① 당해 기관 및 소속·산하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전직 직원 포함), ② 다른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③ 직접적인 업무 감독, 관할 등의 관계에 있는 기관(유관기관, 협회 등)의 임직원 등은 배제하여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지자체 공무원”, 또는 “다른 국가기관의 공무원”은 가급적 외부전문가 위촉 대상 범위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11조 제5항에 따라 심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가 설치된 국가기관 등의 장이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정보공개심의회의 서면심의도 가능합니다.
- 서면으로 심의할 경우 참석수당 등에 대한 구체적인 지급시간 및 기준은 내부 방침으로 별도 결재를 득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30. 정보공개심의회의 결정과 달리 조치할 수 있는지

질 문

- **이의신청한 사항에 대해 정보공개심의회를 통해 인용(공개)결정이 내려졌는데, 실제 공공기관이 정보공개심의회의 결정과 달리 조치할 수 있는지요?**

답 변

- 정보공개법에 따르면 정보공개 여부 및 이의신청 인용여부에 대한 처분권자는 정보공개심의회 위원장이 아닌 당해 공공기관의 장입니다. 또한 정보공개법에서 정보공개심의회 결정사항의 기속력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공공기관의 장이 심의회 결정사항과 다른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1추95에 따르면,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법적인 의무와 권한을 가진 주체는 공공기관의 장이고, 심의회는 공공기관의 장이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하다고 보아 의견을 요청한 사항의 자문에 응하여 심의하는 것입니다.

- 그러나, 정보공개심의회는 단순한 자문기구의 성격이 아니라 정보공개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공공기관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한 것이며, 공정한 심의를 위하여 외부전문가를 과반수 위촉하도록 하고,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심의회를 의무적으로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정보공개심의회의 결정사항과 다른 조치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31. 수용자의 정보공개 수수료 납부방법

질 문

- 교정시설 수용자의 정보공개 청구시 수수료를 수입인지가 아닌 우표로 받을 수 있는지요?

답 변

-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에 따라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른 비용부담은 수수료와 우편요금으로 구분합니다. 우편요금은 공개되는 정보의 사본·복제물·인화물 또는 출력물을 우편으로 송부하는 경우로 한정되며, 공개여부 결정통지서와 같은 기본적인 행정절차상의 우편요금 등은 징수하지 않습니다.
- 수수료의 징수방법 및 시기와 관련, 국가기관은 수입인지, 지방자치단체는 수입증지, 기타 공공기관은 현금으로 징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 정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현금납부도 가능합니다.
- 이에 따라 정보공개시에는 우선 수수료를 징수한 후에 해당 정보를 공개하도록 되어 있으며, 우송공개의 경우에는 해당 수수료와 우편요금(우표)을 먼저 징수한 후에 공개하고, 수수료를 징수한 때에는 정보공개결정통지서(즉시공개시에는 정보공개 청구서)에 수입증지를 붙이고 소인토록 되어 있습니다.

32. 규격 외의 자료 정보공개 청구시 수수료 산정

질 문

- 도면에 대한 수수료의 경우 A3를 초과하는 도면에 대하여 복사할 수 있는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1장당 2,000원)에 맡길 경우 수수료가 어떻게 되는지요?

답 변

- 정보공개법시행규칙 '별표(제7조 관련)'의 규정에 의하면 매체비용은 수수료 이외에 별도로 청구하도록 되어 있으며, 여기서 매체비용의 해석은 당해 정보를 공개하기 위한 CD, 디스켓 뿐만이 아니라 당해 정보의 성격 상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고 있는 전산장비로는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없을 경우 이를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의 비용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도면의 규격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킬 경우 그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33. 국회의원의 정보공개청구시 수수료 감면

질 문

- **국회의원이 정보공개청구를 하면서 "국회 의정활동"을 이유로 수수료 감면을 요구할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답 변

- 국회의원이 "국회 의정활동"이라는 청구취지(사용목적)로 정보공개청구를 하면서 수수료 감면을 신청하였다면,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17조 제3항 제3호의 "기타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당해 공공기관의 판단여지 즉 재량권을 발휘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안이며,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4항의 규정에 수수료 감면을 신청하는 때에는 감면 사유에 대한 소명 자료를 첨부하도록 정하고 있는 바, 어떤 자료를 소명자료로 첨부하여야 할지는 개별 사안을 정형화할 수 없어 구체적으로 열거하기 곤란하나 "국회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임을 입증할 수 있는 상임위 위원장 확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할 것 입니다.

- 참고로,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17조 제3항 각호의 규정에 의거 비용을 감면할 수 있는 경우는 ① 비영리의 학술·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 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② 교수, 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 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③ 기타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감면비율은 공공기관의 장이 자율적으로 정하되, 수수료 감면에 대한 소명자료인 학술·연구 등의 계획서, 단체·법인 대표자의 확인서, 대학교 총장·학교장의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34. 지방의원의 자료제출 요구 처리

질 문

- **지방의원이 의회를 통하여 의정활동 참고자료로 통·반장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등의 자료를 요청할 경우 정보공개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는지요?**

답 변

- 지방의회가 의회를 통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한 사항이라면 「정보공개법」이 아닌 「지방자치법」을 근거로 자료제출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 이와 관련하여 법제처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자료제출요구는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의 지위", 즉 주민의 대표기관 겸 감시·통제기관의 지위에서 집행기관인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행사하는 "권한"이라 할 것이지, 일반 국민의 지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행사하는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권리"가 아니라 할 것임. 따라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의 "법령"의 범위에는 정보공개법이 포함된다고 할 수 없고,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한 지방의회의 서류제출요구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집행기관에서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에 근거하여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라고 유권해석하고 있습니다.

35. 신문사의 정보공개 청구시 수수료 감면

질 문

- 지역신문사에서 지역 행정감시를 위해 필요하다는 사유로 수수료 감면을 요청하였는데, 감면이 가능한 것인지요?

답 변

-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17조 제3항 제1호에 규정에 의거 비용을 감면할 수 있는 경우는 ① 비영리의 학술·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 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② 교수, 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 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③ 기타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수수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청구인은 수수료 감면에 대한 소명자료인 학술·연구등의 계획서, 단체·법인 대표자의 확인서, 대학교 총장·학교장의 확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영 제17조 제3항 제3호의 "기타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는 청구자의 청구취지가 공익을 위한 것으로서 그 감면여부의 결정에 당해 공공기관의 판단여지 즉 재량권이 주어진 경우로서 시민단체의 공익적 감시활동이나 언론사 신문기자가 공익적 보도를 위한 기사자료 확보 수단으로 청구하였을 경우 단체·법인 대표자의 확인서 등 소명자료를 제출할 경우 그 감면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Ⅱ. 정보 공개·비공개 결정과 관련한 FAQ

36. 회의 녹음내용 정보공개청구

질 문

- **민원해결을 위해 주민과 시장과의 대화 및 회의 내용을 녹음하였는데, 녹음 내용에 대한 청구가 들어온 경우 공개해야 하는지요?**

답 변

- "주민과 시장과의 대화·회의내용(녹음)"의 정보가 공개될 경우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견교환 등이 저해되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 등을 검토하여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 또한 해당 정보는 제3자와의 관련성을 함께 검토해야 하는 바, 제3자 관련 정보라고 판단되면 정보공개법에서 정한 제3자 의견청취(제11조 제3항)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37. 비공개 결정통지서의 재교부

질 문

- **민원인이 이미 교부받은 정보 비공개결정 통지서를 잃어버렸다는 이유로 재교부를 신청한 경우 정보공개법의 정보공개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하는지요?**

답 변

- 정보공개법 제2조 제1호의 "정보"는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이고, 동법 제13조 제4항에서 공공기관이 비공개 결정을 한 때에는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공공기관이 정보공개 청구에 대하여 정보 비공개결정을 통지할 목적으로 작성하여 전자문서 출력물 또는 시행문을 청구인에게 통지한 후 관리하고 있는 문서는 정보공개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에 해당합니다.

- 그러나, 정보공개법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공기관이 청구인에게 비공개결정 통지서를 교부한 후, 청구인이 비공개결정 통지서를 잃어버렸다는 이유로 재교부를 요청하는 것은 당해 정보의 비공개결정과 관련하여 공공기관이 작성 · 관리하고 있는 정보에 대한 공개를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수령하였다가 분실한 비공개결정 통지서 사본의 단순한 재발급을 요청하는 것이므로 정보공개법에 의한 정보공개절차가 아니며 이를 정보공개로 청구하였다면, 영 제6조 제3항에 따라 민원사무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38. 한시적 비공개

질 문

• 한시적 비공개는 어느 경우에 적용되는 것인지요?

답 변

• 정보공개법 제9조 제2항에서는 “공공기관은 제1항 각호의 1(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당해 정보를 공개대상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공개청구를 하는 시점(또는 그 이전 시점)에서는 비공개 사유에 해당되어 공개가 불가하였으나, 시간의 경과 등에 따라 비공개 사유가 없어지게 되어 공개결정 시점에서 공개할 수 있는 정보는 공개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자면, 사업계획에 대한 정보로서 사업실시 중에는 사업의 원활한 시행이 어렵게 될 사유가 있어 비공개 하였으나, 사업이 완료되어 비공개 사유가 없어졌다면 공개를 하여야 합니다.

• 아울러, 그 종료시점을 미리 알 수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부분공개)결정통지서에 그 기일과 사유를 명확히 기재하여 불필요한 불복제기를 사전 예방하기 바랍니다.

39. CCTV 녹화내용 정보공개청구

질 문

- **피의자의 아버지가 지구대 CCTV와 사건기록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 CCTV 내용을 복사하여 공개해야 되는지요?**

답 변

- 정보공개법 제2조 규정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보관하고 있는 문서·필름·테이프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으로 정의하고 있어 CCTV 내용도 정보공개 대상에 포함됩니다.
- 경찰청 내부지침인 '지역관서 CCTV 운영지침'에서 수사 자료의 제출 이외에는 CCTV의 열람 등 자료 공개를 금지하고 있으나, 동 지침은 행정규칙으로서 국민에게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부 직원에 대한 구속력이 있을 뿐이므로 이를 정보 비공개 근거 및 사유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 지구대 CCTV 녹화 화면 속에는 청구자의 아들 뿐만 아니라 제3자도 포함되어 있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 의거 이를 공개시 타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를 통해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 또한 해당 사건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이므로 당사자가 사건 관련 증거자료로 법원에 신청 할 수 있고, 재판부에서 증거자료의 촉탁을 통해 해당 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면 제출이 가능합니다.

40. 개인의 감사처분 결과 정보공개청구

질 문

- **교직원의 징계관련 자료(성명, 직장명, 사유, 처분내용)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공개가 가능한지요?**

답 변

- 판·검사(판사와 검사는 '법관징계법' 및 '검사징계법' 제23조에 의거 징계처분 내역을 관보에 게시하도록 규정)를 제외한 그 밖의 경력직 및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징계처분 내역은 당해 공무원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하는 정보이기 때문에 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 의거 비공개 가능합니다.

- 교육청 공무원의 징계처분 내역은 비록 그것이 개인 식별정보를 제외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징계 받은 공무원에 대한 인격 및 사회적 평가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고 그로 인하여 그들의 가정생활, 사회생활 및 업무수행 등 전반적인 영역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 해당되는 공무원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입니다.

- 다만, 예외적으로 공개가 가능한 법 제9조 제1항 제6호 단서조항 '다목'의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인지에 대해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공익 등과 비공개로 인하여 얻어지는 개별 공무원의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의 보호이익의 비교·형량이 필요합니다.
  ※ 행정소송 판결례(사건번호 06-27298,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41.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 개정가능 여부

질 문

- 종전에는 공개하던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에 포함시키도록 하는 내용으로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을 개정할 수 있는지요?

답 변

- 정보공개법 제9조 제3항에서 공공기관의 업무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 대상정보의 범위에 관하여 미리 세부기준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해당 공공기관이 특정 정보의 비공개 여부에 대한 1차적 판단 권한이 있으므로 해당 공공기관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호의 범위 안에서 그 공공기관의 업무성격을 고려하여 정보의 비공개 여부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는 사회여건의 변화 등에 따라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달리 판단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원칙적으로 정보의 공개여부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이전에 공개하였던 정보라도 이후 공개가 곤란한 사유가 발생하였다면 이를 비공개 대상정보라고 판단할 수 있고,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호에서 추상적·일반적으로 규정된 사유들을 해당 기관의 업무성격 및 구체적 사안을 고려하여 좀 더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규정하는 세부기준에 이를 반영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42. 공공기관이 취득한 개인정보 중 권리구제를 위한 정보

질 문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의 제외대상 중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의 의미는 무엇인지요?

답 변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의 단서조항인 '다목'의 의미는 신체장애자 상담원 명부처럼 공개하는 것이 공익상 필요한 정보이거나 민사사송을 통한 확정판결 후 또는 가압류, 가등기 등 법원의 허가를 얻은 후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채권확보를 위해 필요한 채무자의 재산 상황에 관한 정보와 같이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는 예외적으로 공개가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관련된 대법원 판례 중 "개인의 사생활에 관련된 정보라도 언제나 비공개되는 것이 아니고,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물론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만이 비공개 대상이다.(대법원 1997. 5. 23. 선고96누2438판결)"라는 판례 내용은 제6호의 단서조항인 '가목~마목'의 입법취지와도 일치되는 내용입니다.

43. 진정민원 제기사항 및 그 처리결과 정보공개청구

질 문

- 진정민원 내용 및 그 처리결과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시 공개가 가능한지요?

답 변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른 비공개 대상정보인지 개별적·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와 관련하여 민원인의 민원내용 또는 처리결과 등 민원사무처리와 관련하여 민원인의 권익이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되는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와 관련하여 진정인의 성명, 특정 진정인의 개인적인 사정 등 개인의 신상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이를 공개하는 경우 특정인의 식별이 가능해지고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지, 설령 진정인의 성명 등 개인에 관한 정보를 삭제하더라도 위 사항들에 포함되어 있는 다른 정보들에 의하여 특정 진정인에 대한 내용임을 쉽게 유추할 수 있는지, 진정대상 상대방에 대한 심리적인 부담으로 인하여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따른 진정이 불가능해지는 등 공익의 침해가 클 것으로 보이는지, 아울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와 관련하여 담당 조사관의 구체적인 조사내용, 조사결과를 담고 있어 위 정보가 공개될 경우에는 자신의 판단내용의 공개에 따른 부담으로 인한 심리적 압박을 받을 수 밖에 없고, 민원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여러 당사자들로부터 부당한 영향을 받을 수 있어 그로 인해 민원처리와 관련한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받을 우려가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09-00031, 09-23701)는 진정민원 내용 및 담당 조사관의 조사내용, 조사결과에 대한 비공개결정이 위법·부당하지 않다고 재결한 사례가 있습니다.

44. 공모탈락자로부터 공개모집 관련 정보공개청구

질 문

- **○○○야영장 공개모집과 관련하여 '심사위원들의 심사 배점표 및 평가 기준표'에 대한 공개가 가능한지요?**

답 변

- 청구자가 공개 요청한 정보에 대하여 공공기관이 공개여부를 판단할 때 우선 공개가 원칙이기 때문에 공개를 전제조건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해당 정보에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호에 해당되는 비공개 대상정보가 있어 그 공개여부를 최종 결정할 때 공개로 인한 청구자의 이익과 공개로 인해 침해되는 다른 이익에 대한 보호이익을 비교·형량(교량)하여 후자의 이익이 클 경우에만 해당 비공개 정보 부분을 가린 형태로 부분공개 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청구자가 공개 청구한 "심사위원 이름을 가린 형태의 점수표, 심사 배점표, 평가 기준표"의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부분공개가 가능할 것입니다. "심사위원 이름을 가린 형태의 점수표(총점)"는 특정위원이 특정기관에 특정항목에 대하여 몇점을 부여했는지를 정보를 취득한 청구인으로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받는다든지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적고, "심사 배점표 및 평가 기준표"의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호에 해당되는 비공개 대상정보가 아닌 오히려 청구자의 알권리와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해소한다는 취지에서 공개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45. 기관의 감사결과 정보공개청구

질 문

- **민원인이 민간위탁사업시설(구립보육시설)에 대한 감사실적, 이유, 결과 및 조치사항을 요청하였는데 공개가 가능한 것인지요?**

답 변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서 나열된 "감사, 감독, 검사, 시험, 규제, 입찰계약, 기술개발, 인사관리" 업무는 행정기관이 행하는 업무의 예시로서 이들 영역에서 비공개로 되는 것은 '행정운영 정보' 중에서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 아울러 "의사형성과정 정보"와 관련하여 행정기관의 최종적인 의사결정전의 사항에 관한 정보 공개는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의사결정전과 달리 의사결정 후에도 장래의 동종 사무의 적정한 수행을 위해서도 비공개가 가능할 것입니다.

- 다만, 정보 공개로 행정기관의 적정한 의사결정에 지장을 미칠 우려의 유무 및 그 정도를 개별·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공개로 인한 청구자의 이익과 비공개로 인한 당해 공공기관의 이익을 비교·형량(교량)하여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 참고로 "공개할 경우 장래의 동종의 의사형성에의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의 공개 여부가 문제시되는 바, 종례의 판례(대판 2003. 8. 22, 2002두12946)는 의사형성과정의 정보로서 비공개한 사례가 있습니다.

46. 금고 관련 자료 정보공개청구

질 문

- **예금의 평잔액, 평균이율, 금고업무취급약정서 내용에 대한 청구에 대해 법인·단체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비공개 가능한지요?**

답 변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의 비공개 사유 중 제7호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인지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 제7호는 법인 등이나 사업을 하는 개인의 경쟁, 사업운영상 또는 기타 사회적인 지위가 손상되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영업비밀"을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 정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는 학교법인, 종교법인 등의 비영리법인도 포함됨을 고려할 때 "영업상 비밀"은 반드시 경제적 가치를 가질 필요는 없고 비공개의 필요성·타당성이 인정되는 한 비경제적 가치도 포함될 것입니다.

- 따라서 "금고 약정서, 금리, 평잔 등"을 공개했을 경우 은행 등의 독립적인 내부사항, 노하우 등이 알려지게 되어 법인의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합니다.

- 또한 해당 정보는 제3자와의 관련성을 함께 검토하여야 하는 바, 제3자 관련정보라고 판단된다면 정보공개법에서 정한 제3자 의견청취(제11조 제3항)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47. 법 제9조 제1항 제6호 단서조항상의 열람할 수 있는 정보

질 문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의 단서조항 '가목'의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는 어떤 법령을 말하는 것인지요?

답 변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의 단서조항 '가목'의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로 개별법에서 열람을 허용하고 있는 입법례를 예시하여 보면, ①「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소환 청구인 서명부'의 열람으로서 서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청구인의 성명, 주소, 서명 또는 날인(주민등록번호 제외)의 정보를 피청구인(소환 대상자)의 정보공개 청구가 있을 경우 공개하여야 할 것이고, ②「민사집행법」제7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 불이행자 명부'의 열람 및 사본 교부로서 신청자 모두에게 채무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의 정보를 공개하여야 할 것이며, ③「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업자 등록부'의 열람으로서 청구인에게 대부업자 성명, 주소, 영업소 명칭, 소재지, 대부업의 구체적인 내용 및 방법 등의 정보를 공개하여야 할 것이며, ④「지적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지적공부의 열람 또는 등본의 교부'의 교부로서 청구자에게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지적도·임야도 및 경계점좌표등록부, 전산 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자기디스크·자기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 저장 및 관리하는 집합물 등의 정보는 '개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라고 할지라도 각 개별법령에 열람이 허용되는 정보라면 예외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는 것이 입법취지입니다.

  ※ 참고로 판례(대법원 1997. 5. 23, 96누2438)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련된 정보라도 언제나 비공개 되는 것이 아니고,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물론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만이 비공개 대상이다"라고 판시하고 있음

48. 정보공개심의회 회의록 정보공개청구

질 문

- 정보공개심의회 회의록은 공개가 가능한지요?

답 변

- "정보공개심의회 회의록"의 정보가 공개될 경우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견교환 등이 저해되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 발언내용만으로도 발언자를 추측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의견청취·토론과정이 공개되어 심의의 공정성과 중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발언자 부분을 가린 부분 공개를 할지, 전부공개를 할지, 전부비공개를 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49. 기관장 개인명의의 기부금 및 재산 환원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질 문

- 기관장 개인명의의 기부금 및 재산환원에 대한 정보공개가 신청되었는데 공개가 가능한 것인지요?

답 변

- 먼저 해당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지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관장 개인명의의 기부금 및 재산환원 내역을 보유·관리하고 있다면 정보공개법상 청구대상이 되나,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다면 법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자료)의 부존재 사유를 구체적으로 안내하고 민원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 만약, 해당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다면, 동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기관장이라 하더라도 개인명의 기부금 및 재산환원 내역이 공적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개인의 명예, 재산 등에 해당되어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비공개가 가능할 것이기 때문에 이를 구체적으로 검토한 후 결정하여야 합니다.

50. 퇴직공무원 인사기록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질 문

- 퇴직공무원의 인사기록사항에 대한 공개청구가 들어왔는데, 공개여부는 어떻게 되는지요?

답 변

- "퇴직공무원의 인사기록사항"의 정보가 개인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예외적 공개대상인 제6호 각목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제6호의 예외적 공개사항 중 '라목'의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과 직위"에 퇴직공무원도 포함되나 청구인이 청구한 정보에 관계된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이 해당되는 점 등을 종합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합니다.
- 또한 해당 정보는 제3자와의 관련성을 함께 검토하여야 하는 바, 제3자 관련정보라고 판단된다면 정보공개법에서 정한 제3자 의견청취(제11조 제3항)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51. 학교장 및 교감의 개인정보 공개청구

질 문

- **교장·교감의 이름, 소속, 성별, 나이, 직위, 현직위임용일, 전공과목 등에 대한 공개청구시 공개가 가능한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요?**

답 변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의 비공개 사유 중 제6호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인지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 이름, 주민등록번호는 제6호에서 정한 예시사항으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정보인 신체, 사회적 지위, 가족관계, 인적 유대관계, 초상 등에 관한 정보도 제6호의 대상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제6호의 예외사유로 공개가능한 개인정보가 제6호 각목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교장·교감의 이름, 소속, 성별, 나이, 직위, 현직위임용일, 전공과목"의 정보는 공무원 개인정보로서 그 성격에 따라 공개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학교 홈페이지에 학교장 인사와 교직원 현황에 성명, 직위, 사진 등이 이미 공개된 학교가 대부분인 점, 전공과목은 개인의 학력정보로 인정될 수도 있는 점 등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바랍니다.

- 동시에 정보공개법 제14조는 부분공개를 규정하고 있는 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가 인정되면 해당 부분만을 가린 부분공개 결정이 가능합니다.

52. 공무원의 학력, 자격증, 운전면허증 등 청구

질 문

- **공무원의 학력 및 자격증 보유현황(운전면허증 포함)을 개인사생활보호를 이유로 비공개 가능한지요?**

답 변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의 비공개 사유 중 제6호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인지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 "공무원의 학력 및 자격증 보유현황" 정보는 공무원 개인정보로서 그 성격에 따라 공개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제6호의 예외적 공개대상에 직무수행 공무원의 성명·직위는 공개대상이라고 한 점, 학력 및 자격증 현황의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성 정도 등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또한 해당 정보는 제3자와의 관련성을 함께 검토하여야 하는 바, 제3자 관련 정보라고 판단된다면 정보공개법에서 정한 제3자 의견청취(제11조 제3항)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53. 공무원의 시간외수당, 출장비 지급현황 정보공개청구

질 문

- 공무원의 시간외수당, 출장비 지급 현황과 지급기준 등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가 들어온 경우 공개가 가능한 것인지요?

답 변

- "시간외수당, 출장비 지급현황"의 정보가 개인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예외적 공개대상인 제6호 각목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제6호 라목의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과 직위"의 예외적 공개사항은 청구인이 공개 청구한 정보 중 문서를 직접 생산한 공무원이라든지 당해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을 의미하는 점, 시간외수당 및 출장비 현황은 개별 공무원의 소득정보로 인정될 수도 있는 점, 시간외수당 및 출장비 부당사용에 대한 공익적 감시활동이라는 공익이 존재하는 점 등을 종합 검토하여 결정하기 바랍니다.

- 동시에 정보공개법 제14조는 부분공개를 규정하고 있는 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가 인정되면 당해 부분만을 가린 부분공개 결정이 가능합니다.

54. 각급학교의 예산배정내역 정보공개청구

질 문

- **사업자가 해당분야의 사업과 관련한 예산의 각급학교 배정내역을 공개 청구했는데 어떤 근거로 비공개 가능한지요?**

답 변

- 당해 사안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의 비공개 사유 중 제8호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공개될 경우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인지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 제8호의 취지는 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결정하는 요인에 관한 정보로서 정보의 성격상 공개함으로써 정보를 얻은 자와 얻지 못한 자와의 사이에 불공평이 발생하고 이로 인하여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이 초래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고, 부동산투기·매점매석은 건전한 시장기능을 교란시켜 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행위유형의 예시에 해당합니다.

- 따라서 "특정 사업분야에 대한 예산 배정내역"의 공개여부는 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결정하는 요인에 관련된 정보인지 여부, 공개됨으로서 당해 사업자에게 특정한 이익을 주고 동종 업종의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지 여부, 개별법(사립학교법,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하여 예산내역이 이미 공표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결정하여야 합니다.

55. 시험답안지 정보공개청구

질 문

- **시험응시 수험생이 본인의 OMR 답안지, 본인의 출제시험지, 출제정답을 정보공개 신청을 했는데 사본 출력형태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지요?**

답 변

- 지방직 시험의 출제방식이 문제은행식 출제방식이라면 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규정의 세부기준을 적용하여 비공개가 가능합니다.
- 이와 반대로 '문제은행식 출제방식'이 아닌 '직접 출제방식'의 시험지는 공개가 가능합니다.
- 참고로 판례(서울행정법원 2005. 12. 13. 2005구합22128)는 "공인회계사 제2차 시험은 문제은행식 출제가 아니라 매년 새로운 출제위원들이 출제를 하는 방식의 시험이므로 이 시험의 기출문제지가 공개된다고 하여 시험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라고 인정되지 아니하여 공개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56. 건축인허가 관련 정보공개청구

질 문

- **건축인허가와 관련된 건축신고 일체서류와 절차에 따른 협의서류 등을 공개 청구했는데, 건축주의 재산권에 관한 것으로 비공개를 해야 하는지요?**

답 변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와 관련, 해당 인허가 신청서에는 해당 민원인의 개인식별형 정보 등이 포함되어 있어 이의 공개시 당해 민원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 그리고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와 관련, 건축허가신청서에 포함된 건축설계 도면(배치도, 평면도, 단면도, 입면도 및 구조도, 설비도 등)이 ① 설계·시공의 창의적인 고안·노하우 등으로서 공개함으로써 당해 설계·시공자에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를 기록한 문서인지 여부, ② 건축물의 설계도·설비의 배치도 등 시설설비의 관리에 관한 것으로서 공개함으로써 차후 준공 후 당해 건축 시설설비 경비에 지장이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합니다.

- 또한, 정보공개 여부 결정과 관련하여 해당 건축허가신청 민원인은 정보공개법상의 '제3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정보공개청구 사실통지 및 의견청취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57. 소송제기를 위한 부동산중개인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질 문

- **민사소송 제기를 위해 해당 중개업자의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정보공개 청구 하였습니다. 공개가 가능한지요?**

답 변

- "부동산중개업자의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의 정보는 제9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개인정보로서 공개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로 비공개할 수 있는 정보이며, 다만, 이를 공개하기 위해서는 정보주체의 공개동의나 단서조항 각목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단서조항 각목 중 '다목'인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의 단서조항에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 보호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공익 및 개인구제(사익)을 비교·형량(교량)하여 그 구체적 사안에 따라 신중히 판단하여야 합니다.

- 예를 들어 민사소송을 통한 확정판결 후 또는 가압류, 가등기 등 법원의 허가를 얻은 후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채권확보를 위해 필요한 채무자의 재산상황에 관한 정보와 같이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는 예외적으로 공개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법 제9조 제1항 제6호의 단서조항인 '다목'의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되어야 할 것이고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정보공개 청구를 접수한 공공기관이 아닌 청구자가 하도록 해야 합니다.

58. 인허가 관련 서류 정보공개청구

질 문

- **인허가 서류(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필증 관련 서류 : 법인번호, 사업자등록증, 주소, 폐기물 종류 등)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어디까지 공개가 가능한지요?**

답 변

- 청구자가 공개청구한 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때에는 정보공개법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제3자에게 정보공개 청구사실을 통지하여,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고, 제3자가 비공개 요청할 경우 그 구체적인 사유를 비교·형량에 참고해야 합니다.

-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서에 기재된 "상호, 대표자 성명,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업체 소재지, 업종"의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의 '개인·단체·법인의 경영·영업상의 비밀사항'에 해당되는지를 검토하여 공개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당해 정보가 공개될 경우 사업자의 노하우, 고유 기술, 내부 업무처리 등이 공개되어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지를 검토 후 결정하여야 합니다.

59. 자치단체장의 연봉 지급현황 정보공개청구

질 문

- 지방자치단체(자치구)장의 1년 연봉 지급현황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시 공개해야 하는지요?

답 변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제6호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 제5호와 관련, 행정기관이 행하는 업무 중 공개에 의하여 그 업무의 적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로서 인사에 관한 문서 중에서 승진, 급여 등과 같이 공개되는 경우 인사관리의 적정한 운영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 제6호와 관련, 공무원 개인에 관한 정보에 대해서는 그 성격에 따라 공개 여부를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 각종 문서 등에 기록된 기관장명, 당해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과 직위, 회계관직 공무원의 성명 등은 개인정보가 아니라 당해 공무원이 공공기관을 대신하여 행위를 한 것에 불과하므로 공공기관에 대한 정보의 일부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공무원에 관한 정보 중 근무성적, 학력, 소득에 관한 정보, 연가·병가 사유 등은 개인에 관한 정보에 해당됩니다.
- 단체장의 연도별 연봉액에 대한 정보공개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와 관련하여 인사관리의 적정한 운영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을지와 제6호와 관련하여 공무원 개인정보 침해우려가 있을지 등을 검토하여 공개·비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60. 재판 중인 사항의 공개여부

질 문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에서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는 비공개 대상정보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데 어떤 경우에 해당하나요?**

답 변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의 규정과 관련, "진행 중인 재판"이라 함은 적법하게 소장이 접수된 이후 판결이 행해지기 전까지를 의미합니다. 일단 하나의 심급에서 판결이 행해졌지만 아직 상급심에 항소·상고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더라도 그 시점까지는 재판이 진행 중인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재판이 진행 중인지 여부는 정보공개 청구시가 아니라 공개여부를 결정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는 당해 정보가 공개될 경우 진행 중인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여 해석하여야 하고, 이를 진행 중인 재판의 내용과 관련된 모든 정보로 확대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므로 이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재판과 심리에 영향을 미친다는 보다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입증이 필요합니다.

-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 재결례를 예로 들면, "소송과정에서 법원으로부터 입수된 문서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청구된 정보의 경우에는 '공개되더라도 공정한 재판의 진행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정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비공개 결정처분은 위법·부당하다"는 재결례가 있습니다.

61. 민원서류 발급내역 정보공개청구

질 문

- 임대인이 발급받은 등초본 인감 등의 민원서류 발급 내역에 대해 임차인이 정보공개를 청구했을 경우 공개해야 하는지요?

답 변

- 청구자(임차인)가 공개청구한 "임대인의 민원서류 발급 내역"의 정보가 임대인의 개인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예외적 공개대상인 제6호 각목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 후 이익형량을 통해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아울러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공개될 경우 민원인의 권익이 침해되는 민원인의 신상정보 및 민원내용에 해당하는지를 신중히 판단하여야 합니다.
- 또한 해당 정보는 제3자와의 관련성을 함께 검토하여야 하는 바, 제3자 관련정보라고 판단된다면 정보공개법에서 정한 제3자 의견청취(제11조 제3항)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62. 위원회 위원명단 정보공개청구

질 문

- 도시계획위원회 명단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가 신청되었는데 공개가 가능한 것인지요?

답 변

- 위원회 명단과 관련해서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비공개 사유 중 제5호와 제6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 먼저 제6호와 관련하여 위원회 위원의 명단이 개인정보이기는 하나, 제6호의 예외조항 라목에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는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책임행정 및 투명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회 위원 역시 처음 위촉될 당시부터 명단공개는 어느 정도 예상한 일이기 때문에 개인의 사생활을 이유로 비공개하기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5호와 관련하여 위원회의 성격에 따라 명단이 공개될 경우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견교환 등이 저해되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공개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 최근의 위원 명단에 관련된 행정소송 판례 사례를 보면, “심의절차의 투명성, 공공성 및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법령 개정 심의에 참여했던 위원 명단의 공개는 필요한 것으로 보이고, 위원명단이 공개된다고 하더라도 심의회의 적정하고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받을 위험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심의회 참석 위원의 명단은 그 공개로 인하여 얻는 이익이 공개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훨씬 크다고 할 것이어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제6호의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63. 본인 관련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질 문

- A씨가 자신에 대한 과태료 부과 공문 및 납부영수증에 대해 정보공개청구 할 수 있는지요?

답 변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관련, 개인정보에 대하여 본인이 공개를 청구할 경우 공개 여부는 개인정보보호제도의 법제도 안에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정보공개제도와 개인정보보호제도는 정부활동의 감시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고 있으나, 모든 사람들이 널리 정보를 공개할 것을 요구하는 정보공개제도와 특정의 개인에게 본인 정보를 공개하는 개인정보 보호제도에는 성질상 차이가 있습니다.

- 공공기관의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개인정보보호법"이라 함)은 "컴퓨터를 사용하여 정보의 입력·저장·편집·검색·삭제된 전산정보 및 이에 출력된 종이문서"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개요청한 "공문 및 납부영수증"이 개인정보보호법에 규정된 정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즉, 컴퓨터에 의해 입력·저장·편집·검색된 정보를 출력한 종이문서인지를 검토한 후 이에 해당되면 본인의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보공개 청구 없이 민원인의 서면 또는 구두 신청에 의하여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 후 사본을 교부하면 됩니다.

- 그러나 해당 정보가 종이문서로 생산된 정보라면 이는 본인의 정보라고 할지라도 정보공개법이 적용되어 정보공개 청구로 처리해야 됩니다.

64. 과태료 납부내역 정보공개청구

질 문

- 기자가 정치인의 범칙금, 과태료 납부 내역을 정보공개 청구했습니다. 개인정보에 해당되어 비공개할 수 있는지요?

답 변

- 특정개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납부내역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의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해당 정보가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회적인 지위, 경력, 명예 등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합니다.

65. 공무원 개인정보 정보공개 범위

질 문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라목의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 직위는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데, 공개범위는 어떻게 되는지요?**

답 변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의 비공개 대상정보와 관련하여 "공무원의 개인에 관한 정보"에 대해서는 그 성격에 따라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각종 문서 등에 기록된 기관장명, 당해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과 직위, 회계관직 공무원의 성명 등은 여기서 말하는 개인정보가 아니라 당해 공무원이 공공기관을 대신하여 행위를 한 것에 불과하므로 공공기관에 대한 정보의 일부로 간주되나 공무원에 관한 정보에 대하여도 근무성적, 학력, 소득에 관한 정보, 연가·병가 사유 등은 개인에 관한 정보에 해당되기 때문에 비공개가 가능할 것입니다.

- 공무원의 정보 중 개인에 관한 비공개의 구체적인 대표 사례로 ① 근무성적·학력·소득에 관한 정보, 근무상황부 중 연가·병가 사유, 특정 공무원의 집 주소·집 전화번호·주민등록번호·사회경력과 같이 공적 업무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 ② 인사교류 신청, 채용후보자 명부, 교육훈련 관리, 징계심의·의결·결정통지, 신원조사, 퇴직사실 확인 등 인사관리 과정에서 생산·취득한 공무원의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무원의 명예·신용·경제적 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③ 공직자 재산등록 의무자의 재산신고 등 각종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공무원 개인의 인적사항 또는 재산상황 등의 정보,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 없이 개인자격으로 행사에 참석한 경우의 행사 참석자 정보, 비위사실 조사보고서 및 면직자 명단, 공무원 범죄수사, 처분에 관한 사항의 정보를 들 수 있습니다.

66. 정보공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질 문

- 정보의 공개결정에 대해 청구인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지요?

답 변

- 정보공개법 제18조 제1항 및 제21조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①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에 대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청구인, ② 비공개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한 경우 해당 제3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비공개나 부분공개가 아닌 전부 공개한 사항에 대하여는 청구인은 이의신청을 할 수 없으며, 행정심판, 행정쟁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67. 이의신청 결정시 기각, 각하, 인용, 부분인용의 의미

질 문

- 이의신청통보시 "이의처리결정"에 각하, 기각, 부분인용, 전체인용 등 4가지가 있는데 각각 어떤 의미인지요?

답 변

- 정보공개법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에 대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바, 이는 동법 제19조, 제20조에 의한 행정심판, 행정소송과 같이 그 인용여부 결정이 각하, 기각, 부분인용, 전부인용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의 인용여부는 결국 행정심판에서의 재결과 행정소송에서의 판결 절차와 동일하다고 보면 됩니다. ① 각하는 이의신청, 행정심판 청구나 행정소송의 제기 요건이 결여되어 부적법한 것인 경우에 본안 심리를 거절하는 결정, 재결 또는 판결을 의미하고, ② 기각은 본안 심리의 결과 이의신청, 행정심판 청구 또는 행정소송 제기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여 원 처분을 시인하는 결정, 재결 또는 판결을 의미하며, ③ 부분인용은 전부인용과 구별되는 개념으로서 본안 심리 결과 심판청구나 소송제기가 이유 있으나, 원처분이나 부작위의 일부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하여 청구인의 청구 취지를 기각과 인용으로 구분하여 부분적으로 받아들이는 결정, 재결 또는 판결을 의미하며, ④ 전체인용은 본안심리 결과 심판청구나 소송제기가 이유 있고, 원처분이나 부작위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하여 청구인의 청구 취지를 받아들이는 결정, 재결 또는 판결을 의미합니다.

68. 도면 정보공개청구

질 문

- **업체선정 및 계약까지 완료되어 곧 착수예정인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의 CAD 도면에 대한 공개청구시 공개여부는 어떻게 되는지요?**

답 변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의 비공개 사유 중 제7호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인지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 제7호는 법인 등이나 사업을 하는 개인의 경쟁, 사업운영상 또는 기타 사회적인 지위가 손상되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영업비밀"을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 정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는 학교법인, 종교법인 등의 비영리법인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영업상 비밀"은 반드시 경제적 가치를 가질 필요는 없고 비공개의 필요성·타당성이 인정되는 한 비경제적 가치도 포함될 것입니다.

- 따라서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의 CAD 도면"에 대한 공개여부는 당해 설계·시공사의 독립적인 노하우 등이 공개되어 설계·시공사에게 불리한 경우가 아닌지 여부 등을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합니다.

- 또한 해당 정보는 제3자와의 관련성을 함께 검토하여야 하는 바, 제3자 관련정보라고 판단된다면 정보공개법에서 정한 제3자 의견청취(제11조 제3항)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69. 광고·홍보비 지출내역과 언론사명 공개여부

질 문

• 자치단체의 시책을 광고·홍보하기 위해 언론사에 지출한 내역과 언론사명이 공개대상인지?

답 변

• 홍보비는 자치단체의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으로 매년 세출예산에 편성되어 당해 자치단체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후에야 집행할 근거가 발생하는 예산항목이라는 점에서 각 홍보건별 홍보비를 지출한 상대방과 그 상대방에게 집행된 사업비는 예산이 사적인 용도에 집행되거나 낭비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하고 행정절차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이를 일반 국민들에게 공개할 필요는 크다 할 것입니다.

• 반면, 홍보비가 집행된 언론사명은 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홍보를 실시한 업체의 명칭에 불과한 것이어서 그 자체로 해당 업체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라거나 독립적인 경제적 가치를 가지면서 비밀로 유지되는 정보라고 보기 어렵고 홍보를 한 업체의 명칭이 공개된다고 해서 영업상 지위가 위협받는다거나 그 법인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는 등 기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침해될 가능성 또는 자유로운 사업활동이 저해되고 영업활동상 불이익을 입을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언론사의 사회적 책임을 고려할 때 그 성격을 순수한 영리기업으로만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공개대상 정보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08-22417 및 08-23015, 법제처 유권해석 06-0037)

70. 업체의 상호명, 주소지 등이 공개대상인지 여부

질 문

- **'구입 및 지출결의서'상 계약상대방에 관한 정보 중 상호, 사업자번호, 주소 등이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되어 비공개대상인지?**

답 변

- 공공기관이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작성한 물품구매 관련 '구입과 지출결의서'상 계약상대방에 관한 정보 중 상호, 사업자번호, 성명, 주소에 관한 정보는 법인 등의 영업상 유·무형의 비밀이나 노하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대법원에서도 법인 등의 상호, 단체명, 영업소명, 사업자등록번호 등에 관한 정보는 법인 등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시(대법원 2004. 8. 20. 2003두8302)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당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의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 참고로, 제7호의 법인·단체·개인의 경영·영업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과 관련, 상호 및 소재지는 경영·영업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이 아니라는 재결례(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사건번호 200516132)가 있습니다.

- 다만, 공공기관이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작성한 물품구매 관련 '구입과 지출결의서'에 포함된 계약상대방에 관한 정보 중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동법 제9조 제1항 제6호의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는 별도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71. 학교교사 근무상황부 정보공개청구

질 문

- OOO 교사의 출장, 조퇴, 무단결근 등 복무상태(근무상황부)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가 가능한지요?

답 변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의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와 관련, 공무원 개인에 관한 정보에 해당되어 비공개할 수 있고, 이와 같은 정보의 예로 근무상황부 중 연가·병가 사유 등 공적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를 들 수 있습니다.

- 기관의 근무상황부에 "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 근무지내출장, 육아시간, 결근, 지참, 병지참, 조퇴, 병조퇴, 외출, 병외출, 당직휴무, 토요대체휴무, 교육공무원법 제41조의 연수, 기타"의 사유로 구분되어 있다면 공적업무 수행과 관련된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사유는 비공개가 가능합니다.

- 따라서 '근무상황부'를 전부 비공개하기 위해서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호의 비공개 근거와 사유를 제시하여야 하는 바, 업무와 관련된 출장 등은 법 제9조 제1항 제6호의 단서 조항 '라목'에서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는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 점과 법 제9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 근거 제시도 상당한 무리가 있는 점을 감안하여 보면, 청구자가 공개 요청한 정보 중 공적업무 수행과의 관련 여부를 기준으로 부분공개가 가능합니다.

72. 사업공청회 의견서 정보공개청구

질 문

- 사업 추진을 위한 공청회를 하였고, 그에 따른 의견 제출서를 받았습니다. 제출된 의견에 대해 정보공개가 가능한지요?

답 변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의 규정과 관련, 개발사업에 대한 기본계획과 실시계획, 부지 선정 및 매입, 입찰과 계약절차를 통한 업체 선정이 완료되어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이 아니더라도 의견서를 공개할 경우 사업추진에 대한 찬·반의견이 노출되고 이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시시비비가 일어날 소지도 있으며, 결국 사업 착공 후에 집단 행동 등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면 비공개가 가능할 것이고 이러한 우려가 없다면 공개가 가능할 것입니다. 공개 시에도 제6호와 관련 이름과 전화번호를 가린 형태의 부분공개가 가능할 것입니다.

Ⅲ. 정보공개시스템과 관련한 FAQ

73. 정보공개시스템 사용자 등록 방법

질 문

- 사용자 로그인시 미승인된 사용자라고 나오는 경우 조치는 어떻게 하는지요?

답 변

- 사용자 로그인시 미승인이라고 나오는 것은 아래와 같은 경우에 해당될 수 있으니 확인하기 바랍니다.
  - 정보공개 처리자나 접수자일 경우
    ⇒해당기관 정보공개 관리자가 승인을 해주지 않았을 경우이므로 정보공개 관리자에게 승인을 요청
  - 정보공개 관리자일 경우
    ⇒기관별 정보공개 관리자는 사용자 등록 후 정보공개시스템 헬프데스크에 신청하면 승인 후 사용이 가능하므로 Fax로 신청
    ※ 정보공개시스템 헬프데스크 fax 번호 : 02-725-6950
- 타 기관으로 전출되었을 경우 이전 기관에서는 사용자 등록정보에서 '미사용'으로 상태를 변경하고, 근무기관에서 새로운 아이디로 등록·신청하여 권한은 승인받아야 합니다.

74. 정보공개담당자 지정

질 문

- **"처리부서에 담당자가 없습니다"라는 내용으로 처리부서 지정이 안되면 어떻게 조치해야 하는지요?**

답 변

- 정보공개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각 부서별로 한 사람이 "정보공개담당자" 권한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처리부서가 지정된 청구서는 정보공개 담당자가 청구내용을 확인 후에 처리자를 지정하면 정보공개결정통지서 입력 등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 각 부서별로 정보공개담당자 권한은 기관의 정보공개관리자가 부여하며, [시스템관리>사용자정보관리]에서 정보공개 담당자여부를 '예'로 권한 정보를 수정하면 정보공개담당자 권한을 부여 받게 됩니다.

75. 오프라인 청구내용 온라인 확인가능 여부

질 문

- 청구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한 오프라인 청구내용을 정보공개시스템에서 청구인이 확인 할 수 있는지요?

답 변

- 청구인이 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청구서를 제출하였을 경우 청구기관의 정보공개 담당자는 정보공개시스템에 청구내용을 등록하여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프라인으로 청구한 청구내용 및 처리결과도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청구인이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서 확인하려면 회원가입 후에 가능함을 안내해 주기 바랍니다. 비회원 로그인 했을 경우에는 청구내용을 확인 할 수 없습니다.
- 그리고, 청구인이 비회원으로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서 청구하였을 경우 청구서 작성시 입력했던 '청구서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처리결과를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하여 확인이 가능합니다.
- 참고로, 직접방문, 우편접수 된 청구에 대해 청구인이 청구 취소를 요청할 경우 기관의 접수자가 사유를 입력하고 청구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76. 청구한 날부터 20일이 지난 정보공개청구 처리

질 문

- 정보공개법 제11조 제5항에 의거 '청구한 날부터 20일이 지난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시스템에서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답 변

- 정보공개법 제11조 제5항 "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공공기관이 공개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비공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는 규정에 의거 정보공개시스템에서는 자동으로 비공개 결정으로 처리상태가 변경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정보공개담당자는 처리기한 내에 정보공개 결정절차에 따라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하여 청구인에게 정보공개 결정통지서를 통지하거나 내부종결처리를 해야 합니다.

77. 정보공개시스템 수수료 결제 장애

질 문

- **정보공개 청구인이 수수료 납부버튼을 클릭시 "현재 결제가 진행 중입니다"라는 알림창이 보이고 결제진행이 되지 않을 경우 조치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답 변

- 결정통지서에서 수수료 납부버튼을 클릭하여 결제가 진행 중일 경우 다른 사이트로 이동을 하거나 창을 닫고 다시 정보공개시스템으로 접속하여 수수료를 납부하려고 하면 결제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 이는 수수료의 중복납부를 방지하기 위하여 적용된 기능이며, 처음 수수료 납부 버튼 클릭 후 결제가 진행 중일 경우 결제가 완료되었다는 내용이 확인될 때까지 계속적으로 대기하여야 함을 안내하여야 합니다.
- 만약, 부득이하게 중간에 결제진행을 취소하였을 경우에는 정보공개시스템 헬프데스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보공개시스템 헬프데스크 : 02-2100-4162~3

78. 청구인 수수료 납부

질 문

- **청구인이 수수료 납입 후에도 미납으로 나올 경우 어떻게 조치하는지요?**

답 변

- 청구인이 온라인으로 정보공개시스템 대국민 창구를 통해 수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자동으로 상태가 "공개완료"로 변경되며, 해당 청구건의 수수료 납부여부에 "납부완료"로 표시됩니다.

- 무통장 입금하거나, 창구를 통해 현금을 받은 경우에는 담당자가 확인 후 공개정보를 제공하고, "정보공개시스템 공무원창구('부서청구서현황'>제목선택(상세화면))"에서 "공개실시" 버튼을 클릭 하여 수수료납부를 확인하면 처리상태가 "공개완료"로, 상세내용이 "납부완료"로 적용됩니다.
  ※ 수수료 납부후 '공개실시'를 처리하지 않고 10일이 결과하면, '부서청구서현황'의 청구리스트 항목중 '처리상태'가 '10일초과종결처리'로 표기됨

79. 결정통지서 출력시 기관장 표기

질 문

- 결정통지서 출력시에 기관장 직급이 잘못되어 있으면 어떻게 조치하는지요?

답 변

- 정부공개시스템의 개선 이전에는 결정통지서의 기관장 직급은 처리기관의 최상위 기관장명으로 되어 있으나, 개선 이후에는 각 결정통지서 작성시 기관장명을 수정하여 입력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결정통지서 작성시 반드시 "기관장 명"을 확인하여 처리기관의 기관장 명이 잘못되었을 경우 수정하고 통지해야 합니다.

80. 다중처리부서 지정시 처리

질 문

• 다중처리부서 지정시 지원부서에서 결정통지서를 입력한 후 결재하여 통지할 수 없는지요?

답 변

• 다중처리부서 지정되어 업무처리시 지원부서에서는 해당 청구 내용에 대해서 결정입력까지만 처리를 하면 됩니다. 주관부서에서 지원부서가 입력한 결정통지내용을 일괄적으로 결재 및 통지까지 처리합니다.

• 지원부서에서 입력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관부서에서 결정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지원부서에서 입력이 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처리단계를 다중부서 지정단계로 돌려서 업무를 처리해야 합니다.
※ 지원부서 입력단계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사랑방'→'도와주세요' 게시판에서 처리변경 신청서를 작성 후 신청

81. 정보공개 처리내용 변경

질 문

- 담당자가 정보공개 처리시 수정사항 등이 발생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 변

- 공무원 창구에서 업무처리중 처리내용에 수정사항이 있을 경우 '사랑방 > 도와주세요' 게시판에 "처리변경요청"을 하면 됩니다. 다만, 단순한 처리오류 및 변경은 가능하나 결정통지된 내용의 수정·변경을 위한 요청은 처리가 불가합니다.
- 청구인에게 결정통지가 된 이후, 통지일자 및 처리일자를 변경할 경우에는 행정안전부 시스템운영자에게 처리변경요청서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요청하고, 청구인에게 통지가 되지 않은 처리내용을 수정할 경우 '사랑방' → '처리변경요청' 게시판으로 요청하면 됩니다.
  ※ 정보공개시스템 헬프데스크 Tel : 02-2100-4162~3, fax 번호 : 02-725-6950

82. 정보공개시스템 수수료 계산

질 문

• 수작업으로 계산한 수수료와 결제된 수수료에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인지요?

답 변

• 정보공개시스템의 수수료는 민원24의 전자결제시스템을 이용하고 있으며, 수수료 산정방법이 차이가 있습니다.
  – 민원24 : 원 결제금액에 PG사 수수료를 더하여 고객이 부담하도록 계산
  – 정보공개 : 원 결제금액을 기준으로 PG사 수수료를 기관에서 부담하도록 계산
    ※ 산정방법 차이에 따라 차이 나는 부분을 민원24에 맞춰 다음과 같이 조정하여 계산됩니다.
      * 550, 560, 570, 580원을 540원으로 조정
      * 3,090, 3,100, 3,110원을 3,080원으로 조정

• 이에 따라, 정보공개 수수료는 원 결제금액에서 PG사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이 해당 기관별로 정산되어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참고로, 교육지원청 및 교육청 소속기관의 정보공개 수수료는 시도 교육청으로 정산되고 있습니다.('08. 8월부터)
    ※ PG사 : Payment Gateway의 약자로서 인터넷 전자상거래의 핵심인 전자지불 서비스를 대행하는 회사를 말하며, 전자지불(인터넷 결제)의 종류에는 신용카드, 핸드폰 소액결제, ARS, 계좌이체, 신용카드 포인트 결제가 있음.

83. 청구인이 결제한 내역 확인 방법

질 문

• 청구인이 수수료 결제 내역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답 변

• 결제 내역은 아래의 결제방법별 안내에 따라 그 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니 안내 해주면 됩니다.

– 카드결제 내역은
① http : //ucesspay.lgcns.com 에 접속
② “승인내역조회” → “공공기관(대법원, 전자정부)” 에서 확인

– 계좌이체결제 내역은
① http : //www.bankpay.or.kr 에 접속
② “고객지원” → “거래내역조회” 에서 확인

– 전자화폐결제 내역은
① http : //www.cyberpass.com 에 접속
② “회원로그인” → “내번호관리” → “사용내역 조회” 에서 확인

– ARS결제 내역은
① http : //www.billgate.net 에 접속
② “개인 결제내역조회” 에서 확인

– 휴대폰결제 내역은
① http : //www.wowcoin.com 에 접속
② “이번 달 거래내역 조회” 에서 확인

– 신용카드 포인트 결제 내역은
① 해당 신용카드회사 홈페이지에서 신용카드 포인트 사용내역 확인

제8장
정보공개법령

제8장 정보공개법령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0. 5. 5] [법률 제10012호, 2010. 2. 4, 타법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1. 3, 2010. 2. 4>

1.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2. "공개"라 함은 공공기관이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법」 제2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①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령의 범위안에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를 정할 수 있다.

③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 및 보안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에서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분석을 목적으로 수집되거나 작성된 정보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목록의 작성 · 비치 및 공개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2 장 정보공개청구권자와 공공기관의 의무

제5조(정보공개청구권자) ①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② 외국인의 정보공개청구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공공기관의 의무) ① 공공기관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국민의 권리가 존중될 수 있도록 이 법을 운영하고 소관 관련법령을 정비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정보의 적절한 보존과 신속한 검색이 이루어지도록 정보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정보공개업무를 주관하는 부서 및 담당하는 인력을 적정하게 두어야 하며,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행정정보의 공표 등) ① 공공기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 공개의 주기·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2. 국가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工事) 등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3.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4.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

② 공공기관은 제1항에 규정된 사항외에도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정보목록의 작성·비치 등) ① 공공기관은 당해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목록을 작성·비치하고, 그 목록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목록중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부분을 비치 및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공공기관은 정보의 공개에 관한 사무를 신속하고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장소를 확보하고 공개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 3 장 정보공개의 절차

제9조(비공개대상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6.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② 공공기관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당해 정보를 공개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범위 안에서 당해 공공기관의 업무의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 대상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06.10.4>

제10조(정보공개의 청구방법) ①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는 당해 정보를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하거나 구술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1. 청구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연락처(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을 말한다)
2.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술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때에는 담당공무원 또는 담당임·직원(이하 "담당공무원등"이라 한다)의 면전에서 진술하여야 하고, 담당공무원등은 정보공개 청구 조서를 작성하고 이에 청구인과 함께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정보공개의 청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정보공개여부의 결정) ① 공공기관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공개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규정된 기간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공개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연장된 사실과 연장사유를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공개청구된 공개대상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 공공기관은 다른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소관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하며, 이송을 한 공공기관은 지체없이 소관기관 및 이송사유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공공기관이 공개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12조(정보공개심의회)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내지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심의회의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소속공무원, 임·직원 또는 외부전문가로 지명 또는 위촉하되, 그 중 2분의 1은 당해 국가기관등의 업무 또는 정보공개의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전문가로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주로 하는 국가기관은 당해 국가기관의 장이 외부전문가의 위촉비율을 별도로 정하되, 최소한 1인 이상은 위촉하여야 한다.

④ 심의회의 위원장은 제3항에 규정된 위원과 같은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국가기관등의 장이 지명 또는 위촉한다.

⑤ 제23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은 심의회의 위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⑥ 심의회의 운영 및 기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정보공개여부결정의 통지) ① 공공기관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때에는 공개일시·공개장소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공개대상정보의 양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정보의 사본·복제물을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교부할 수 있다.

③ 공공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 당해 정보의 원본이 오손 또는 파손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정보의 사본·복제물을 공개할 수 있다.

④ 공공기관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의 비공개결정을 한 때에는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공개이유·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제14조(부분공개) 공개청구한 정보가 제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제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제15조(정보의 전자적 공개) ① 공공기관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당해 정보의 성질상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구인의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당해 정보의 성질이 훼손될 우려가 없는 한 그 정보를 전자적 형태로 변환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③ 정보의 전자적 형태의 공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즉시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공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로서 즉시 또는 구술처리가 가능한 정보에 대하여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1. 법령 등에 의하여 공개를 목적으로 작성된 정보
2. 일반국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작성된 각종 홍보자료
3. 공개하기로 결정된 정보로서 공개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아니하는 정보
4.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

제17조(비용부담) ①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안에서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②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사용목적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 및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4 장 불복구제절차

제18조(이의신청) ①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제1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7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사유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과통지와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행정심판) ①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외의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한 감독행정기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한다. <개정 2008.2.29>

② 청구인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③ 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중 정보공개여부결정에 관한 행정심판에 관여하는 위원은 재직중은 물론 퇴직후에도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제3항의 위원은 형법 그 밖의 법률의 벌칙적용에 있어서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20조(행정소송) ①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②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사자를 참여시키지 아니하고 제출된 공개청구 정보를 비공개로 열람·심사할 수 있다.

③ 재판장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제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중 국가안전보장·국방 또는 외교에 관한 정보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처분인 경우에 공공기관이 그 정보에 대한 비밀지정의 절차, 비밀의 등급·종류 및 성질과 이를 비밀로 취급하게 된 실질적인 이유 및 공개를 하지 아니하는 사유 등을 입증하는 때에는 당해 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제3자의 비공개요청 등) ①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대하여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공개결정을 하는 때에는 공개결정이유와 공개실시일을 명시하여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제3자는 당해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결정일과 공개실시일의 사이에 최소한 30일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제 5 장 정보공개위원회 등

제22조(정보공개위원회의 설치)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하에 정보공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2.29>

1. 정보공개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2. 정보공개에 관한 기준수립에 관한 사항
3. 제24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운영실태 평가 및 그 결과처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정보공개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23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이 경우 위원장을 포함한 5인은 공무원이 아닌 자로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9, 2008.2.29>

1.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부처의 차관급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2. 정보공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③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은 정보공개업무와 관련하여 알게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그 정보를 이용하여 본인 또는 타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자는 형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벌칙적용에 있어서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⑥ 위원회의 구성 및 의결절차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제도총괄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정보공개제도의 정책수립 및 제도개선 사항 등에 관한 기획·총괄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08.2.29>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위원회가 정보공개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국회·법원·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실태를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를 거쳐 국무회의에 보고한 후 이를 공개하여야 하며, 위원회가 개선이 필요하다고 권고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공공기관에 시정요구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25조(자료의 제출요구) 국회사무총장·법원행정처장·헌법재판소사무처장·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및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공기관에 대하여 정보공개에 관한 자료의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26조(국회에의 보고)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전년도의 정보공개 운영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정기국회 개회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위임규정) 이 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법률 제7127호, 2004.1.2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1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위원회 설치준비) 행정자치부장관은 이 법 시행전에 제22조 및 제23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위원선임 등 위원회 설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③(정보공개여부 결정기간 등의 단축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정보공개청구가 있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 칙 **(국가공무원법) <법률 제7796호, 2005.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제1호중 "1급공무원"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⑤ 내지 <68>생략

부 칙 **<법률 제8026호, 2006.10.4>**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법률 제8171호, 2007.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중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을 "「전자정부법」"으로 한다.
④생략

부 칙 **<법률 제8854호, 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정보공개위원회의 위원은 이 법에 의해 행정

안전부장관이 위촉한 것으로 보며,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위촉일부터 기산한다.

부 칙 (행정심판법)<법률 제8871호, 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 후단 중 "재결청"을 "감독행정기관"으로 한다.
③부터 ⑤까지 생략

부 칙 (전자정부법)<법률 제10012호, 2010.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를 "「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로 한다.
③부터 ⑮까지 생략
제6조 생략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1.10.17] [대통령령 제23226호, 2011.10.17, 일부개정]

제 1 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0.17>

제2조(공공기관의 범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1.10.17>

1. 초 · 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학교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
   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설립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기관
   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액(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직접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독점적 사업권을 부여받은 기관의 경우에는 그 위탁업무나 독점적 사업으로 인한 수입액을 포함한다)이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기관
   다. 지방자치단체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라. 지방자치단체와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단독으로 또는 두개 이상의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설립기관이 출연한 기관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4.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
5.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시행일 : 2011.11.18] 제2조

제 2 장 정보공개청구권자와 공공기관의 의무

제3조(외국인의 정보공개청구)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외국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1.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 · 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2.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제4조(행정정보의 공표 등) ① 공공기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포함하여 국민에게 알려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1.10.17>

1. 식품·위생, 환경, 복지, 개발사업 등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 보호와 관련된 정보
2. 교육·의료·교통·조세·건축·상하수도·전기·통신 등 국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정보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정보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2에 따른 계약관련 정보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수의계약 내역 정보
   다. 「국가재정법」 제9조에 따른 재정정보
   라. 「지방재정법」 제60조에 따른 재정운용상황에 관한 정보
   마. 그 밖에 법령에서 공개, 공표 또는 공시하도록 정한 정보
4. 국회 및 지방의회의 질의 및 그에 대한 답변과 국정감사 및 행정사무 감사 결과에 관한 정보
5. 기관장의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
6. 그 밖에 공공기관의 사무와 관련된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정보

②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정보를 포함하여 법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거나, 정부간행물의 발간·판매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11.10.17>

③행정안전부장관은 공공기관이 공표한 정보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종합목록의 발간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08.2.29, 2011.10.17>

제5조(정보목록의 작성·비치 등) ①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목록에는 문서제목·생산연도·업무담당자·보존기간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및 제23조에 따른 등록정보를 목록으로 제공하는 경우 이를 목록으로 정보목록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7.4.4>

②공공기관은 정보공개절차를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공개청구 및 처리절차, 정보공개청구서식, 수수료 그 밖의 주요사항이 포함된 정보공개편람을 작성·비치하여 일반국민의 열람에 제공하여야 한다.

③공공기관은 청구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청구서식·컴퓨터단말기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 3 장 정보공개의 절차

제6조(정보공개의 청구방법 등) ①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청구서는 공공기관에 직접 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우편·모사전송 또는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제출한다.

②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청구인이 요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접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즉시 또는 구술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
2. 우편·모사전송 또는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개청구된 정보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이거나 진정·질의 등 공개청구의 내용이 법 및 이 영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로 볼 수 없는 경우로서 해당 공공기관이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사무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같은 법에 따른 민원사무로 보아 처리할 수 있다.<신설 2011.10.17>

④ 공공기관은 제3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경우에 해당 정보를 보유·관리하지 아니한다는 사실 등 청구에 따를 수 없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어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2011.10.17>

⑤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구에 대해서는 종결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1.10.17>

1. 제1항에 따라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정보공개 결정의 통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정보의 공개청구를 다시 한 경우
2. 제3항에 따른 청구를 한 자가 제4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후에 다시 같은 청구를 한 경우

제7조(공개여부 결정기간의 연장) 법 제11조제2항 전단에서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일시에 많은 정보공개가 청구되거나 공개청구된 내용이 복잡하여 정하여진 기간내에 공개여부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

2.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 또는 공개청구된 정보와 관련있는 제3자의 의견청취,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등의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내에 공개여부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
3.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된 정보가 공개부분과 비공개부분을 포함하고 있고, 정하여진 기간내에 부분공개가능여부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
4. 천재지변, 일시적인 업무량의 폭주 등으로 정하여진 기간내에 공개여부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

제8조(제3자의 의견청취) ①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3자의 의견청취는 문서에 의한다. 다만, 공공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제3자가 원하는 때에는 구술로 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구술로 의견을 청취하는 담당공무원 등은 구술내용을 기록하고 본인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정보생산 공공기관의 의견청취) 공공기관은 공개청구된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인 때에는 그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0조(관계기관 및 부서간의 협조) ①정보공개청구업무를 처리하는 부서는 관계기관 또는 다른 부서의 협조가 필요한 때에는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후 지체없이 처리기간의 범위내에서 회신기간을 명시하여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조를 요청받은 기관 또는 부서는 그 회신기간내에 회신하여야 한다.

제11조(정보공개심의회) ①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및「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공기업(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은 업무성격이나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그 기관 또는 소속기관에 1개 이상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17>

②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1.10.17>

1.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2. 법 제18조 및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에 대하여 같은 내용으로 2회 이상 반복하여 제기된 이의신청
   나. 청구인이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
   다. 제3자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
   라. 이미 심의회를 거친 사항에 대한 이의신청
3. 그 밖에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③심의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심의회의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가 설치된 국가기관 등의 장이 정한다.

[시행일 : 2011.11.18] 제11조제1항

제11조의2(정보공개책임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및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정보공개책임관을 지정하여 정보공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2. 소속 기관에 대한 정보공개 사무의 지도·지원
3. 정보공개 담당 공무원의 정보공개 사무처리능력 발전을 위한 교육·훈련
4. 정보공개 청구인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지원

[본조신설 2011.10.17]

제12조(정보공개일시의 통지 등) ①공공기관은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때(제3자의 비공개요청에 불구하고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결정을 하는 때를 제외한다)에는 지체없이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의 범위내에서 공개일시를 정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인이 요청하는 때에는 공개일시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②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의 사본·복제물을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교부하는 때에는 청구인으로 하여금 먼저 열람하게 한 후 사본·복제물을 교부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월 이내에 교부를 완료하여야 한다.

③청구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한 공개일 후 10일이 경과할 때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정보의 공개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내부적으로 종결처리할 수 있다.

제13조(부분공개) 공공기관은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분공개결정을 하는 때에는 비공개하는 부분에 대하여 비공개이유·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제14조(정보공개방법) ①정보의 공개는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1.10.17>

1. 문서·도면·사진 등은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2. 필름·테이프 등은 시청 또는 인화물·복제물의 교부
3. 마이크로필름·슬라이드 등은 시청·열람 또는 사본·복제물의 교부
4.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 등은 파일을 복제하여 전자우편으로 송부, 매체에 저장하여 제공, 열람·시청 또는 사본·출력물의 교부
5.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이미 공개된 정보의 경우 그 정보 소재(所在)의 안내

②공공기관은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서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할 필요가 없는 때에는 청구인의 요청에 의하여 제1항 각호의 사본·출력물·복제물·인화물 또는 복제된 파일을 우편·모사전송 또는 전자통신망을 이용하여 송부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공개하는 때에는 타인의 지적소유권, 사생활의 비밀 그 밖에 타인의 권리 또는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제15조(정보공개시 청구인의 확인) ①청구된 정보의 공개는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하여야 한다.

②공공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공개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신분증명서 등에 의하여 청구인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서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할 필요가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8.2.29>

1. 청구인 본인에게 공개하는 때에는 청구인의 주민등록증 그 밖에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청구인이 외국인인 때에는 여권·외국인등록증 그 밖에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청구인이 외국의 법인 또는 단체인 때에는 사업자등록증·외국단체등록증 그 밖에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 또는 단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2. 청구인의 법정대리인에게 공개하는 때에는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그 밖에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3. 청구인의 임의대리인에게 공개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위임장과 청구인 및 수임인의 주민등록증 그 밖에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③공공기관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자서명 등을 통하여 그 신원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16조(정보공개처리상황의 기록)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처리상황을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17조(비용부담) ①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수료와 우편요금(공개되는 정보의 사본·출력물·복제물 또는 인화물을 우편으로 송부하는 경우에 한한다)으로 구분하되, 수수료의 금액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수수료의 금액은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8.2.29>

②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는 때에는 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을 제외한다)의 장은 업무부담을 고려하여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수수료의 금액을 달리

정할 수 있다.<개정 2008.2.29>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비영리의 학술·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2. 교수·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3.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④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감면을 신청하는 때에는 감면사유에 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공공기관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감면비율을 정하고,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납부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개정 2011.10.17>

1.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전자지급수단
2. 수입인지(국가기관에 내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수입증지(지방자치단체에 내는 경우로 한정한다)

⑦ 삭제<2011.10.17>

제 4 장 이의신청

제18조(이의신청) ①법 제18조제1항 및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와 연락처
2.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정보공개여부 결정의 내용
3.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4. 정보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

②공공기관은 법 제18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결정기간의 연장을 통지하는 때에는 통지서에 연장사유·연장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③공공기관은 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하는 때에는 결정이유·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④공공기관은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상황을 이의신청처리대장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 5 장 정보공개위원회 등

제19조(심의·조정사항) 법 제22조제4호에서 "그 밖에 정보공개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7조제1항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표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항

제2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23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부위원장은 법 제2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각각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개정 2011.10.17>

②법 제23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은 법무부·행정안전부 및 기획재정부의 차관과 국무총리실 국무차장을 말한다.<개정 2008.2.29>

제21조(회의 및 의결정족수) ①위원회의 회의는 반기별로 개최한다. 다만,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2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3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관련 공공기관에 대하여 정보공개와 관련된 자료·서류 등의 제출요청
2. 관계공무원·이해관계인·참고인 등의 출석요청 및 의견청취

제24조(사무기구) 위원회의 업무를 보좌하고 그 밖에 행정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위원회의 사무처리는 행정안전부 제도정책관이 수행한다. <개정 2008.2.29, 2011.10.17>

제25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장 및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제2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참석하는 관계공무원·이해관계인·참고인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참석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조(정보공개위원회의 운영규정) 이 영에 규정된 것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7조(운영실태평가)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공개제도의 운영

실태를 평가하는 때에는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평가의 취지 및 내용과 담당공무원의 인적사항 및 방문일시를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28조(자료제출) ①제2조 각 호의 기관은 전년도의 정보공개운영실태를 매년 1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17>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정보공개운영실태를 포함한 전년도의 정보공개운영실태를 매년 2월 10일까지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정보공개운영실태를 포함한 전년도의 정보공개운영실태를 매년 2월 말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④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정보공개운영실태를 종합하여 공표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시행일 : 2011.11.18] 제28조

제29조(정보공개운영에 관한 보고서)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운영에 관한 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운영실태에 관한 사항
2.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제도 운영실태 평가에 관한 사항
3. 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요구 등의 조치에 관한 사항

부칙 <제23226호,2011.10.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제11조제1항 및 제28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각종서식)

[시행 2011.11. 1] [행정안전부령 제254호, 2011.11. 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1.1>

제2조(정보공개청구서의 서식) ①「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청구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1.11.1>

②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술로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제3조(정보공개처리관련 서식) ①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여부 결정기간연장의 통지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6조제2항 및 영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처리대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③영 제6조제4항에 따른 통지는 별지 제4호의2서식에 따른다.<신설 2011.11.1>

제4조(제3자의 의견청취관련 서식)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제3자에게 통지하는 정보공개청구사실 통지는 별지 제4호의3서식에 따르고, 정보공개가 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의 의견제출 또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요청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1.11.1>

②법 제11조제3항 및 영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술로 제3자의 의견청취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제5조(정보공개여부 결정통지의 서식) 법 제13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여부 결정에 대한 통지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제6조(정보공개 위임장 서식) 영 제15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위임장은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다.

제7조(수수료의 금액) 영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금액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표와 같다.

제8조(이의신청처리관련 서식) ①법 제18조제1항 및 법 제21조제2항과 영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은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

②법 제18조제2항 및 3항에 따른 이의신청 결정 통지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는 별지 제9호의2서식에 따른다.<신설 2011.11.1>

③법 제18조제2항과 영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결정기간 연장의 통지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다.<개정 2011.11.1>

④영 제18조제4항에 의한 이의신청처리대장은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다.<개정 2011.11.1>

제8조의2(제3자에 대한 정보공개결정통지의 서식)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제3자에게 하는 정보공개결정 통지는 별지 제11호의2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1.11.1]

제9조(자료제출) 영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운영실태의 제출은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다.

부칙 <제254호,2011.11.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수수료[제7조관련]
[서식 1] 정보공개 청구서
[서식 2] 정보공개 구술 청구서
[서식 3] 공개여부 결정기간연장 통지서
[서식 4] 정보공개처리대장
[서식 4의2] 정보부존재 등 통지서
[서식 4의3] 정보공개 청구사실 통지서
[서식 5] 제3자 의견서[비공개요청서]
[서식 6] 제3자의견 청취서
[서식 7] 정보[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결정통지서
[서식 8] 정보공개 위임장
[서식 9] 정보공개[비공개] 결정 이의신청서
[서식 9의2] 이의신청[인용, 부분인용, 기각, 각하] 결정통지서
[서식 10] 이의신청결정기간 연장 통지서
[서식 11] 이의신청 처리대장
[서식 11의2] 제3자에 대한 정보공개 결정 통지서
[서식 12] 정보공개 운영실태

【별표】

수 수 료(제7조 관련)

<table>
<tr><th rowspan="2">공개
대상</th><th colspan="4">공 개 방 법 및 수 수 료</th></tr>
<tr><th>원본의 열람·시청</th><th>원본의 사본(출력물)·
복제물·인화물</th><th>전자파일의
열람·시청</th><th>전자파일의 사본
(출력물)·복제물</th></tr>
<tr><td>문서·
대장 등</td><td>○열람
– 1건(10매 기준)1회 : 200원
• 10매초과시 5매마다 100원</td><td>○사본(1매 기준)
– A3이상 300원
• 1매 초과마다 100원
– B4이하 250원
• 1매 초과마다 50원</td><td>○열람
–1건(10매 기준) 1회 : 200원
• 10매 초과시 5매 마다 100원</td><td>○사본(종이출력물)
– A3이상 300원
• 1매 초과마다 100원
– B4이하 250원
• 1매 초과마다 50원
○복제
– 1건(10매 기준)1회: 200원
– 10매초과시 5매마다 100원
※매체비용은 별도</td></tr>
<tr><td>도면·
카드 등</td><td>○열람
– 1매 : 200원
• 1매 초과마다 100원</td><td>○사본(1매기준)
– A3이상 300원
• 1매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매 초과마다 50원</td><td>○열람
– 1매 : 200원
• 1매 초과마다 100원</td><td>○사본(종이출력물)
– A3이상 300원
• 1매 초과마다 100원
– B4이하 250원
• 1매 초과마다 50원
○복제
– 1건(10매기준)1회 : 200원
– 10매초과시 5매마다 100원
※매체비용은 별도</td></tr>
<tr><td>녹 음
테이프
(오디오
자료)</td><td>○청취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td><td>○복제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마다 5,0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마다 3,000원
※매체비용은 별도</td><td rowspan="3">○시청·청취
– 1편 : 1,500원
• 30분 초과시 10분마다 500원</td><td rowspan="3">○복제
– 1건(700MB 기준)마다 5,000원
– 700MB 초과시 350MB마다 2,500원
※매체비용은 별도</td></tr>
<tr><td>녹 화
테이프
(비디오
자료)</td><td>○시청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td><td>○복제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마다 5,0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마다 3,000원
※매체비용은 별도</td></tr>
<tr><td>영화필름</td><td>○시청
–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td><td>–</td></tr>
<tr><td>슬라이드</td><td>○시청
– 1컷마다 200원</td><td>○복제
– 1컷마다 3,000원
※매체비용은 별도</td><td>○시청
– 1컷마다 200원</td><td></td></tr>
</table>

공개 대상	공 개 방 법 및 수 수 료			
	원본의 열람·시청	원본의 사본(출력물)·복제물·인화물	전자파일의 열람·시청	전자파일의 사본(출력물)·복제물
마이크로필름	○열람 - 1건(10컷 기준) 1회: 500원 • 10컷 초과시 1컷마다 100원	○사본(출력물 : 1매 기준) - A3 이상 300원 • 1매 초과마다 200원 - B4이하 250원 • 1매초과마다 150원 ○복제 - 1롤마다 1,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	-
사진·사진필름	○열람 - 1매 : 200원 • 1매 초과마다 50원	○인화(필름) - 1컷마다 500원 • 1매 초과마다 3"×5" 200원 5"×7" 300원 8"×10" 400원 ○복제(필름) - 1컷마다 6,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열람 - 1매 : 200원 • 1매 초과마다 50원	○사본(종이출력물) - 1컷 250원 • 1매 초과마다 3"×5" 50원 5"×7" 100원 8"×10" 150원 ○복제 - 1건(1MB 기준)1회: 200원 - 1MB초과시 0.5MB마다 1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우편을 통해 공개하는 경우 전자파일의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 산정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정보공개시스템(www.open.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 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청구인	성명(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여권·외국인등록)번호
	주소(소재지)		사업자(법인·단체)등록번호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
청구 내용			
공개 방법	[ ]열람 · 시청 [ ]사본·출력물 [ ]전자파일 [ ]복제·인화물 [ ]기타( )		
수령 방법	[ ]직접방문 [ ]우편 [ ]팩스전송 [ ]정보통신망 [ ]기타( )		
수수료	[ ]감면 대상임 [ ]감면 대상 아님		
	감면 사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접수 기관의 장) 귀하

유 의 사 항
수수료 감면 사유란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에 따라 수수료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으며,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접 수 증

접수번호	청구인 성명
접수부서	접수자 성명 (서명 또는 인)

귀하의 청구서는 위와 같이 접수되었습니다.

년 월 일

접 수 기 관 장 직인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정보공개시스템(www.open.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 구술 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청구인	성명(법인명 등 및 대표자)	주민등록(여권·외국인등록)번호
		사업자(법인·단체)등록번호
	주소(소재지)	전화번호(모사전송번호)
		전자우편주소
정보 내용		
공개 방법	[ ]열람 · 시청 [ ]사본·출력물 [ ]전자파일 [ ]복제·인화물 [ ]기타( )	
수령 방법	[ ]직접방문 [ ]우편 [ ]팩스전송 [ ]정보통신망 [ ]기타( )	
수수료 감면	해당여부	[ ]해당 [ ]해당없음
	감면사유	

구술청취자 (담당공무원등)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구술자 (청구인)	기관명(기관인 경우)	직급	서명 또는 인
		성명	
	성명(일반인인 경우)		서명 또는 인

접 수 증

접 수 번 호		청구인 성명	
접수자직급		성 명	(서명 또는 인)

귀하의 청구서는 위와 같이 접수되었습니다.

접 수 기 관 장 직인

년 월 일

※ 정보공개의 처리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면 (담당부서 및 전화번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정보공개시스템(www.open.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개여부 결정기간연장 통지서

수신자

정보내용		
접수일 및 접수번호		당초 결정기한
연장사유		
연장 결정기한		
기타 안내사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1조제2항에 따라 귀하의 정보공개청구사항에 대한 공개여부를 결정하는 기간이 위와 같은 사유로 연장되었음을 알려드리며, 궁금하신 사항은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자세히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년 월 일

기 관 의 장 직인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자)

우 /주소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담당자 공식 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정보공개처리대장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청구인	청구사항		결정내용					처리사항		비고
			정보 내용	공개 방법	담당 부서	결정 구분	공개 내용	비공개(부분공개) 내용 및 사유	결정 통지일	공개일	수령 방법	

297mm×210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작 성 방 법

1. “정보내용” 항목에는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정보를 적습니다.
2. “공개방법” 항목에는 열람·시청, 사본·출력물, 전자파일, 복제·인화물 등 청구인이 공개를 요청한 방법을 적습니다.
3. “결정구분” 항목에는 공개·부분공개·비공개 등 공공기관에서 결정한 사항을 적습니다.
4. “공개내용” 항목에는 공개로 결정한 정보를 적습니다.
5. “비공개(부분공개) 내용 및 사유” 항목에는 공공기관에서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로 결정한 정보내용을 적고 정보별 비공개(부분공개) 사유를 적습니다.
6. “수령방법” 항목에는 공개장소 방문·우편·모사전송·정보통신망 등 청구인에게 정보를 공개한 방법을 적습니다.
7. “비고” 항목에는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한 경우나 기타 특이사항이 있을 경우 적습니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2서식]

정보 부존재 등 통지서

수신자 ○○○ (우 , 주소)

접수번호	접수일
정보공개 청구내용	
정보 부존재 등 정보공개 청구에 따를 수 없는 사유	

귀하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위와 같은 사유로 우리 기관은 귀하의 정보공개요구에 따를 수 없음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4항에 따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발 신 명 의 직인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자)

우 /주소 /홈페이지 주소

전화( ) /팩스( ) /담당 공무원의 전자우편 주소 /공개구분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3서식]

정보공개 청구사실 통지서

접수번호	접수일

정보공개 청구인	성명
	주소
정보공개청구 내용	
의견 제출기간	통지받은 날부터 3일간
그 밖의 참고사항	

우리기관에 귀하와 관련된 정보공개 청구서가 접수되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 따라 통지하오니 위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은 구술 또는 서면으로 제출 가능)

년 월 일

발 신 명 의 직인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제3자 의견서(비공개요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제3자	성명		연락처	전화번호
				모사전송번호
				전자우편주소
	주소			
청구인	성명			
	주소			
정보내용				

공개 청구된 정보에 대한 의견(내용이 많을 경우에는 별지사용 가능)

종합의견	[ ]정보공개 허용 [ ]비공개요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귀 기관에 공개 청구된 정보에 대한 의견서(비공개요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비공개요청)인 (서명 또는 인)

기관의 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제3자의견 청취서

접수번호	접수일

청구인	성명			
	주소			
정보내용				
의견청취일시				
의견청취내용				
그 밖의 참고사항				
의견청취자 (담당공무원등)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구술자(제3자)	기관인 경우	기관명		서명 또는 인
		직급		
		담당자 성명		
		연락처		
	일반인인 경우	성명		서명 또는 인
		주소		
		연락처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정보 ([ ]공개 [ ]부분공개 [ ]비공개) 결정 통지서

(앞 쪽)

수신자 ○○○ (우 , 주소)

접수번호	접수일

청구 내용					
공개 내용					
공개 일시	공개 장소				
공개 방법	[ ]열람 · 시청	[ ]사본·출력물	[ ]전자파일	[ ]복제·인화물	[ ]기타
수령 방법	[ ]직접방문	[ ]우편	[ ]팩스전송	[ ]정보통신망	[ ]기타
납부 금액	①수수료 원	②우송료 원	③수수료 감면액 원	계(①+②−③) 원	
	수수료 산정 내역		수수료 납입계좌(입금시)		
비공개(전부 또는 일부) 내용 및 사유					

귀하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결정 내용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발 신 명 의 직인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자)

우 /주소 /홈페이지 주소

전화( ) /팩스( ) /담당 공무원의 전자우편 주소 /공개구분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뒤 쪽)

유 의 사 항

1. 정보공개 장소에 오실 때에는 이 통지서를 지참하셔야 하며, 청구인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증명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가. 청구인 본인에게 공개하는 때에는 청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등)
   나. 청구인의 법정대리인에게 공개하는 때에는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다. 청구인의 임의대리인에게 공개하는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정보공개 위임장과 청구인 및 수임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2. 수수료는 해당 정보를 공개할 때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수입인지(정부기관), 수입증지(지방자치단체)로도 내실 수 있으며, 부득이한 때에는 현금으로 내실 수 있습니다.
3. 우송공개가 가능하다고 통지된 정보를 우편 등으로 받으시려는 때에는 앞면에 적힌 공개일까지 우송료를 현금 또는 우표 등으로 공공기관에 보내셔야 합니다.
4.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공공기관으로부터 공개 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같은 법 제11조 제5항에 따른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기관에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5.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려는 때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 또는 재결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6. 청구인이 통지된 정보의 공개일 후 10일이 경과할 때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정보의 공개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내부적으로 종결처리 할 수 있습니다.
7. 이 통지서를 정보공개시스템을 이용하여 통지하는 경우에는 직인을 생략할 수 있으며, 청구인은 필요한 경우 직인날인에 관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정보공개 위임장

청 구 인 (위 임 인)	성명(법인명 등 및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등)
	주소(소재지)	
수 임 인	성명	주민등록번호등
	주소	
	위임인과의 관계	
정 보 내 용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2항제3호에 따라 위와 같이 정보공개를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 임 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정보공개시스템(www.open.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비공개) 결정 이의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이의 신청인	성명(법인 등 명칭 및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등)
	주소(소재지)	전화번호(모사전송번호)
		전자우편주소
공개 또는 비공개내용		
통지서수령 유무	[ ]정보(공개 · 부분공개 · 비공개)결정통지서를 년 월 일에 받았음 [ ]정보(공개 · 부분공개 · 비공개)결정통지서를 받지 못했음(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은 년 월 일임)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또는 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라 귀기관의 정보공개(비공개)결정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이 의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접수기관)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의2서식]

이의신청 ([ ]인용 [ ]부분인용 [ ]기각 [ ]각하) 결정 통지서

(앞 쪽)

수신자 ○○○ (우 , 주소)

접수번호	접수일

이의신청 내용					
결정 내용					
공개 일시		공개 장소			
공개 방법	[ ]열람 · 시청	[ ]사본·출력물	[ ]전자파일	[ ]복제·인화물	[ ]기타
교부 방법	[ ]직접방문	[ ]우편	[ ]팩스전송	[ ]정보통신망	[ ]기타
납부 금액	①수수료 원	②우송료 원	③수수료 감면액 원	계(①+②−③) 원	
	수수료 산정 내역		수수료 납입계좌(입금시)		

귀하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내용을「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8조제2항 및 제3항,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발 신 명 의 직인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자)

우 /주소 /홈페이지 주소

전화( ) /팩스( ) /담당 공무원의 전자우편 주소 /공개구분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뒤 쪽)

유 의 사 항

1. 정보공개 장소에 오실 때에는 이 통지서를 지참하셔야 하며, 청구인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증명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가. 청구인 본인에게 공개하는 때에는 청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등)
   나. 청구인의 법정대리인에게 공개하는 때에는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다. 청구인의 임의대리인에게 공개하는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정보공개 위임장과 청구인 및 수임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2. 수수료는 해당 정보를 공개할 때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수입인지(정부기관), 수입증지(지방자치단체)로도 내실 수 있으며, 부득이한 때에는 현금으로 내실 수 있습니다.
3. 우송공개가 가능하다고 통지된 정보를 우편 등으로 받으시려는 때에는 앞면에 적힌 공개일까지 우송료를 현금 또는 우표 등으로 공공기관에 보내셔야 합니다.
4. 청구인이 통지된 정보의 공개일 후 10일이 경과할 때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정보의 공개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내부적으로 종결처리 할 수 있습니다.
5. 이 통지서를 정보공개시스템을 이용하여 통지하는 경우에는 직인을 생략할 수 있으며, 청구인은 필요한 경우 직인날인에 관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6.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려는 때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 또는 재결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비고 : 위 유의사항 중 제1호부터 제5호까지는 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으로 공개 청구된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는 경우에 적용되며,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제3자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인 경우 그 제3자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이의신청결정기간 연장 통지서

수신자 ○○○ (우 , 주소)

이의신청내용		
접수일자 및 접수번호		당초 결정기간
연장사유		
연장 결정기간		
그 밖의 안내사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8조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에 따라 귀하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기간이 위와 같은 사유로 연장되었음을 알려드리며, 궁금하신 사항은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자세히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년 월 일

발 신 명 의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 주소 /공개구분

210㎜×297㎜[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이의신청 처리대장

※ 접수번호	이의신청일자	사 건 명	청구인	주문내용	신청취지	이유(처리결과요지)	결정통지일자

※ 접수번호는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재된 접수번호를 적습니다.

297mm×210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의2서식]

제3자에 대한 정보공개 결정 통지서

(앞 쪽)

수신자 ○○○ (우 , 주소)

정보공개 청구자	성명(법인 등 명칭):	
	주소 :	
정보공개청구 접수일자		
공개청구 내용		
공개결정 내용		
공개결정 이유		
공개 실시일		공개 장소

귀하와 관련된 정보의 공개결정내용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이 정보공개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으로부터 공개 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해당 기관에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때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 또는 재결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발 신 명 의 직인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자)

우 /주소 /홈페이지 주소

전화( ) /팩스( ) /담당 공무원의 전자우편 주소 /공개구분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정보공개 운영실태

(제1쪽)

1. 정보공개창구 설치현황

구 분	설치개소	문 서 과	민 원 실	자 료 실	기 타
계					
본 청					
소속기관별					

2. 공개청구 및 처리현황

가. 총괄

구 분	처 리 현 황			
	계	전부공개	부분공개	비 공 개
계				
본 청				
소속기관별				

나. 청구방법별 현황

구 분	청구건수	직접출석	우편	팩스	정보통신망
계					
본 청					
소속기관별					

다. 공개방법별 현황

구 분	청구건수	공 개 방 법						수 령 방 법					
		소계	열람·시청	사본·출력물	전자파일	복제·인화물	기타	소계	직접방문	우편	팩스	정보통신망	기타
계													
본 청													
소속기관별													

210㎜×297㎜[일반용지 70g/㎡(재활용품)]

(제2쪽)

라. 공개여부 결정기간별 현황

구 분	계	즉시	10일 이내	20일 이내	20일 초과
계					
본 청					
소속기관별					

3. 처리현황 목록

일련번호	청구사항		결정내용					처리사항		비고
	정보내용	공개방법	담당부서	결정구분	공개내용	비공개(부분공개) 내용 및 사유	결정통지일자	공개일자	공개방법	

※ 정보공개처리대장 사본으로 처리현황목록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4. 비공개 사유별 현황

구 분	비공개 건수	법령상 비밀·비공개 (법 제9조제1항제1호)	국방 등 국익침해 (제2호)	국민의 생명 등 공익침해 (제3호)	재판 관련 정보 등 (제4호)	공정한 업무수행 지장 등 (제5호)	개인 사생활 침해 (제6호)	법인 등 영업상 비밀침해 (제7호)	특정인의 이익·불이익 (제8호)
계									
본청									
소속 기관별									

4. 대구광역시교육청 정보공개 운영 규정

[시행 2010. 12. 31] [교육훈령 제173호]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의하여 정보공개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적용범위) 대구광역시교육청의 정보공개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3 조(정보공개책임관의 지정 등) ①정보공개 관련 업무를 총괄/조정하기 위하여 행정국장을 정보공개책임관으로, 각과(담당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별 정보공개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각 과장을 정보공개담당관으로 지정한다. <개정 2010·12·31 훈173부칙>

② 정보공개청구서의 접수, 청구인 안내 등의 정보공개업무를 주관하는 전담부서는 총무과로 한다.

제 4 조(행정정보의 공표) 대구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정보공개청구가 없더라도 공개의 구체적인 범위·주기·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수정 · 보완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1. 교육시책·중점과제 및 주요업무추진관련 자료
2. 학교신설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3. 각종 지침 및 통계
4. 업무추진비 집행내역(다만,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제외한다)
5. 기타 교육감이 공개하기로 결정한 정보

[전문개정 2007 · 12 · 28 훈160]

제 5 조(정보공개확대를 위한 조치) ①교육감은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정보공개 교육을 연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자체 행정정보공개운영실태를 연1회 이상 확인/점검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4조제1항 각호의 정보를 체계적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 관련시스템을 정비하여야 한다.

③ 각과에서 생산하여 시행한 문서를 홈페이지에 게재할 때에는 원문형태로 게재하여야 한다.

제 6 조(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 ①교육감은 법 제9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비공개대상정보의 범위에 대하여 세부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7·12·28 훈160>

③ 법의 취지가 충분히 반영되고, 국민과 소속공무원이 보다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정보의 공개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별표**에서 정한 기준을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8 훈160>

※ 별표(대구광역시교육청 비공개대상 정보 세부기준)는 65~72페이지 참조

제 7 조(정보공개시 유의사항) 정보공개담당관은 공개청구된 정보를 공개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따라야 한다.

1. 청구된 정보에 특정개인의 신상(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등)에 관한 정보 등 비공개대상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을 삭제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2. 청구된 정보의 공개를 실시함에 있어서 당해 정보의 오·파손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외에는 원본으로 공개하되, 가급적 청구인이 정보공개청구서에 기재한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3. 청구인이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원하는 경우에 있어서 청구량이 과다하여 한번에 사본 또는 복제물을 교부하는 것이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때에는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교부하도록 한다.
4. 청구된 정보의 공개를 실시함에 있어 현재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대상으로 하여야 하며, 그 정보의 일부를 발췌·요약하는 등 별도의 가공된 형태로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8 조(정보공개심의회의 설치 등) ①영 제1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감 소속하에 대구광역시교육청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교육감으로 하고, 위원은 교육국장, 행정국장, 총무과장과 정보공개의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전문가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개정 2006.6.14 훈157 부칙, 2010·12·31 훈173부칙>

제 9 조(회의) ①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교육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정보공개담당관은 시행령 제11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에 해당되는 정보공개 청구가 있는 날부터 2일 이내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안을 제출한 해당과의 담당사무관 장학관 또는 과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회의에 참석하여 의안을 설명하고, 위원의 질의에 답변하게 할 수 있다.

⑤ 간사는 회의록 및 의결서를 작성하며, 회의록에는 위원장이, 의결서에는 위원장 및 출석위원이 각각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 10 조(심의결과 통지) ①위원장은 심의회의 심의결과를 지체없이 교육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심의회에서 정보를 공개하도록 의결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 11 조(간사 등) ①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총무과 담당사무관이 되고, 서기는 정보공개업무담당자가 된다.<개정 2006·6·14 훈157부칙, 2009·7·10 훈165부칙>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 · 6 · 14 훈157, 대구광역시교육청 전결 규정 일부개정규정>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2007·12·28 훈160>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7·10 훈165, 대구광역시교육청 전결 규정 일부개정규정>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2010·12·31 훈173, 대구광역시교육청 전결 규정 일부개정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정보공개제도 운영 매뉴얼

◈ 발 행 대구광역시교육청
◈ 제 작 대구광역시교육청 총 무 과 장 박 해 주
대구광역시교육청 기록관리담당사무관 박 정 희
대구광역시교육청 지방교육행정주사 조 진 희

◈ 발행일 2011. 12.